

kiri Weekly

이슈 모음집 I 2012



1

보험경영

국내 보험회사의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한 자산운용수익 제고방안	임준환 전용식	3
생명보험 자살면책 조항과 자살예방 효과	이창우	12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유진아 이해은	20
변액연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	임준환 윤상호	26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안철경	35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시사점	변혜원	40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기형	53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	기승도	64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황진태	73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전용식 임준환	84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김대환	94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조영현	108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김해식 김소연	114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참여방안	이창우 조용운	121
수익률 논란 계기로 본 변액연금시장의 구조적 변화	전용식 김세중	129
손해보험의 보험위험액 산출방법에 관한 소고	조재린 김유미	140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조영현 이해은	150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과 시사점	박선영 이해은	160
후취형 변액연금상품도입에 따른 추가적 위험과 관리방안	윤상호 임준환	171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판매전략	변혜원	181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윤상호 이창우	188

2

고령화

일시납 변액형 즉시연금상품 현황과 시사점	이경희 이경아	197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	조용운	207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우 류건식	215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류건식	22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류건식 김대환	235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 및 노후준비 실태 비교와 시사점	이상우 정원석	244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류건식 김대환	252

이슈 II _Contents

<h2 style="font-size: 3em; margin: 0;">3</h2> <h3 style="margin: 0;">보험제도 및 정책</h3>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안)과 개선방향	이승준	3
	비만세(Obesity Tax)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김대환 윤상호	14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공시제도(안)와 관련 시사점	장동식	25
	영국의 보험모집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 논의와 시사점	송윤아	35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	김해식 조재린	45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김대환 김동겸	53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	조재린 채원영	63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장동식	72
	포괄수가제(DRG) 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	이창우 조용운	82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김소연	9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선정 논의와 시사점	임준환	100
	손해보험의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필요성 검토	황진태	110
	중국 자동차보험제도와 시사점	기승도 이소양	119
	영국의 보험판매채널규제 개선 동인과 영향	이기형 정인영	128
	미국과 EU 보험중개사의 정보 공개 기준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 Contingent Commission과 이해 상충	송윤아	136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의 규제방안과 시사점	이승준	145
	공사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 프랑스 자연재해보험 사례	김소연 박정희	157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송윤아 정인영	169

<h2 style="font-size: 3em; margin: 0;">4</h2> <h3 style="margin: 0;">거시금융 및 기타</h3>	금융산업의 경쟁패러다임 변화와 소비자신뢰 제고방안	전용식	18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와 개선 방향	이승준	196
	국내 금융회사의 국경 간 M&A 역량 강화 필요성	전용식	209
	주택담보대출의 유통화 동향과 시사점	조영현	219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규제 분석과 시사점	전용식 채원영	227

1. 보험경영

- | | |
|--|---------|
| 1. 국내 보험회사의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한 자산운용수익 제고방안 | 임준환 전용식 |
| 2. 생명보험 자살면책 조항과 자살예방 효과 | 이창우 |
| 3.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 유진아 이혜은 |
| 4. 변액연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 | 임준환 윤상호 |
| 5.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 안철경 |
| 6.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시사점 | 변혜원 |
| 7.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이기형 |
| 8.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를 개선 원인과 시사점 | 기승도 |
| 9.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 황진태 |
| 10.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 전용식 임준환 |
| 11.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 김대환 |
| 12.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 조영현 |
| 13.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 김해식 김소연 |
| 14.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참여방안 | 이창우 조용운 |
| 15. 수익률 논란 계기로 본 변액연금시장의 구조적 변화 | 전용식 김세중 |
| 16. 손해보험의 보험위험액 산출방법에 관한 소고 | 조재린 김유미 |
| 17.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 조영현 이혜은 |
| 18.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선영 이혜은 |
| 19. 후취형 변액연금상품도입에 따른 추가적 위험과 관리방안 | 윤상호 임준환 |
| 20.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판매전략 | 변혜원 |
| 21.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 윤상호 이창우 |





국내 보험회사의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한 자산운용수익 제고방안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국내 보험회사들은 장기국공채의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익보강 차원에서 유가증권(채권 또는 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담보자산으로 현금을 수취하는 증권대차거래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공채 금리 하락으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 운용수익률이 하락 추세임.
 -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의 증권대차거래 규모와 수익은 미미한 수준으로 생명보험 상위3사의 경우 보유 국공채 규모의 4% 수준 내외이고 대차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도 20bp 수준임.
 - 미미한 이유는 첫째 담보관리 체계 구축 결여와 현업의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함.
- 보험회사에게 증권대차거래는 첫째, ALM전략에 부합되고, 둘째, ALM체제하에서 부가 수익(대차수입과 예탁수수료 절감)을 창출할 수 있으며, 셋째, 적극적 채권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등 금리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 중 하나임.
 - 증권대차거래는 보험회사의 장기부채에 상응하는 장기국공채(만기보유형)를 거래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만 하는 거래이므로 보험회사의 ALM전략에 부합함.
 - 동 거래는 현금담보 투자를 통한 대차수입뿐 아니라 유가증권 보유에 수반되는 예탁수수료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예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이행보증금으로 수취한 현금담보를 활용하여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대차계약의 만기에 부합하는 단기채권 비중을 크게 하고 장기우량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음.
- 향후 증권차입수요 확대로 증권대차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용수익을 보강하고, 이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위험을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담보관련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AIG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차거래 만기가 단기인 경우 유동성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1. 검토 배경



■ 최근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보험회사 자산 운용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자산운용수익 제고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3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0년 8.3%에서 2010년 3.7%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3.36%를 기록함.
-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0년 5.9%로 2000년 8.9%에 비해 400bp 하락하였으며, 2010년 기준 운용자산의 19.5%를 국공채로 운용하고 있음.
- 금리하락은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됨.

〈표 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국공채 비중, 수익률, 금리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공채 비중 ¹⁾	4.4	7.8	11.6	14.7	16.9	18.1	19.3	18.3	17.5	18.5	19.5	
수익률	운용자산	8.9	8.7	8.6	7.9	7.1	6.8	5.8	5.8	5.4	5.5	5.9
	국공채	16.6	13.6	11.1	7.4	6.8	5.8	5.2	5.0	5.4	5.2	5.2
국고채 금 리	3년	8.3	5.7	5.8	4.6	4.1	4.3	4.8	5.2	5.3	4.0	3.7
	5년	8.7	6.2	6.3	4.8	4.4	4.5	5.0	5.3	5.4	4.6	4.3
	10년	7.8	6.9	6.6	5.1	4.7	5.0	5.2	5.4	5.6	5.2	4.8
	20년	-	-	-	-	-	-	5.4	5.4	5.6	5.4	5.0

주: 1) 운용자산 대비 국공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각 사 업무보고 자료.

■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어려워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단기부동자금인 MMF 규모가 2010년 말 425조 원으로 2004년 258조 원에 비해 연평균 8.7% 증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산운용 효율화를 통한 자산운용수익을 보강 (enhancement)하기 위해 증권대차거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증권대차거래는 증권대여자가 보유한 유가증권(국공채 또는 주식)을 증권 차입자(증권사, 헤지펀드 등)에게 대여하고 증권 차입자로부터 이행보증 담보(현금 혹은 유가증권)를 수취하는데, 현금 수취의 경우 이를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는 거래¹⁾임.
 - 따라서 안전자산인 채권투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채권수익률을 웃도는 수익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의 AIG가 증권대차거래를 재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헤지펀드가 본격화될 경우 증권대여시장의 채권대차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 현재 국내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증권대차거래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미한 이유는 첫째 담보관리 체계 구축 결여와 현업의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함.
-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증권대차거래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보다는 과거의 거래 관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채권대차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기준 11.3조 원으로 그 비중이 시장의 6.4%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생명보험 상위3사의 증권대차거래 규모도 보유채권 대비 4% 수준에 불과함.²⁾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으로서 증권대차거래의 의미를 살펴보고 증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장기부채에 상응하는 자금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에 활용할 경우 보험회사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보험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증권대차거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고는 투자측면에서 증권대차거래가 가지는 기회요인과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함.

1) 본고에서는 채권을 대여하고 현금을 담보로 하는 현금담보 채권대차거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제로 여러 대차거래 중 현금담보 채권대차거래가 지배적임.

2) 한국증권금융 기준.

2. 증권대차거래의 기본구조와 잠재 리스크



가. 국내 증권대차거래 현황

■ 주식을 제외한 국공채 대차거래시장 규모는 한국증권금융 누적 체결 기준으로 2011년 11월까지 약 169조 3,348억 원을 기록함.

- 이 중 은행은 19조 4,170억 원, 보험회사는 11조 3,737억 원을 대여하고 있음(〈표 2〉 참조).³⁾
- 채권대차거래에서 최대 수요자(160조 원 규모)는 증권회사이며 그 다음이 은행, 자산운용사임.

〈표 2〉 참여자별 채권 대차거래 통계

(단위: 백만 원, %)

참여자구분	대여자		차입자	
	체결규모	비중	체결규모	비중
외국인	834,850	0.49	834,850	0.49
내국인	168,499,953	99.51	168,499,953	99.51
은행	19,417,000	11.47	4,993,500	2.95
증권회사	5,446,612	3.22	159,553,053	94.22
보험	11,373,700	6.72	0	0
연기금	123,339,941	72.84	0	0
자산운용	7,517,700	4.44	1,717,700	1.01
기타	2,239,850	1.32	3,070,550	1.81
합계	169,334,803	100.00	169,334,803	100.00

주: 2011년 1월 3일~2011년 11월 25일까지 누적액임.
 자료: 한국증권금융.

■ 증권회사는 주로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하고 있음.

- 증권회사는 채권매매 차익거래와 자금조달을 위한 RP거래를 목적으로 채권을 차입⁴⁾함.

3) 채권은 국공채(3년, 5년) 혹은 통화안정증권임.

4) RP거래란 미래에 채권 재매입을 전제로 현재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임.

■ 국내 보험회사들은 현금담보 재투자자를 통한 수익창출(대차수입)과 채권보유 비용절감 목적으로 대여자
로만 참여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수준임.⁵⁾

- 2011년 9월 말 기준 국내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국공채 보유금액은 52.7조 원 규모에 달하나 이
중 4%만이 대차거래에 운용되고 있음.
- 채권대차 규모가 보유자산 대비 미미하여 수익에 대한 기여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⁶⁾
- 채권을 대여할 경우 채권 보유 시 지급해야 하는 예탁수수료를 채권 차입자가 지불해야 하므로 예
탁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나. 증권대차거래의 미시적 시장구조

■ 대차거래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담보금액의 결정, 대여증권의 대여기간 및 이자수익, 현금담보의 투자수
익 배분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이행보증 담보금액의 결정]** 초과담보제도에 의해 대여증권 시장가치의 102~105%에서 결정되며,
일일정산 시가평가제도(Marking to Daily Market Price, MTM)를 통해 유가증권 대여자를 보
호⁷⁾함.
- **[대여기간]** 대차거래의 만기는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단기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채권 차입자와 대여자가 언제든지 상황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이자수익과 투자수익 배분]** 대여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증권 대여자에게 귀속되지만 대여
자가 수취한 현금담보를 재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증권대여자와 차입자간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되며, 이 때 증권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를 리베이트 금리(rebate rate)라 부름.⁸⁾

5) 대차거래는 담보현금을 다시 유가증권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레버리지가 내재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담보현금을
일종의 차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6) 국내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증권대차거래 관련 수익은 2011년 투자영업수익(13.5조 원)의 0.03% 수준인 것으로 추산됨.

7) 초과담보제도란 채무이행보증을 위한 현금담보가 대여 유가증권의 시장가격보다 2~5%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고,
일일정산 시가평가제도란 대여한 유가증권의 가치를 매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전일가격과 금일가격의 차이를 담
보에 반영하는 제도임.

8) 리베이트 금리는 대여증권의 회소성에 따라 마이너스까지 가능한데, 예컨대 회소성이 큰 증권을 대여하면 대여자는 차입자
로부터 리베이트 금리를 수취할 수도 있음.

〈그림 1〉 증권대차거래 개시(좌) 및 종료(우) 시 흐름



자료: An Introduction to Securities Lending(Australia), 2005.

■ 대차거래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증권 대여자(보험회사)는 증권을 대여하고 증권 차입자(증권회사, 헤지 펀드 등)는 현금을 동 대여자에게 이행보증 담보형태로 제공하는 구조임(〈그림 1〉 참조).

- 대차거래 개시 이후 증권 대여자는 담보로 받은 현금을 만기까지 단기금융시장에 투자⁹⁾함.
- 한편, 대차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증권 대여자는 현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되돌려주고 대여된 증권을 회수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됨.
 - 단기금융시장에 현금담보를 투자한 경우 계약 종료와 함께 동 담보를 회수하여 현금과 투자수익 일부(리베이트 금리)를 차입자에게 상환함.

〈표 3〉 현금담보 유가증권(채권) 대차거래의 특징

특징	현금담보 대차거래
교환방식	유가증권 재취득을 전제로 대여
교환형태	유가증권 vs. 현금
담보유형	현금
거래동기	담보로 수취한 현금을 단기금융시장에 투자
상환대상	담보 제공자(차입자)에게 리베이트 금리와 이행보증 현금을 지급하고 대여증권을 회수
증거금제도(MTM)	초기 및 변동증거금 부과
초과담보	채권 대여자가 초과담보 요구(채권시장가치의 2~5%)
대여기간 및 이자수익	월별경과이자 지급형식(즉시상환 요구 가능)
이자수익 / 투자수익	대여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대여자에게 귀속 / 투자수익은 대차자에게 배분(리베이트 금리)

자료: An Introduction to Securities Lending(Australia), 2005.

9) 중개기관이 차입자와 증권대차계약을 대행하고 계약조건을 정한 후,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수취하고 증권을 대여함.

다. 보험회사의 투자전략과 리스크

■ 증권대차거래의 장점은 첫째, ALM전략에 부합되고, 둘째, ALM체제하에서 부가적인 수입(대차수입과 예탁수수료 절감)을 창출할 수 있으며, 셋째, 적극적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금리소득을 창출하여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임.¹⁰⁾

- 증권대차거래는 보험회사의 장기부채에 상응하는 장기국공채(만기보유형)를 거래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만 하는 거래이므로 보험회사의 ALM전략에 부합하는 전략임.
- 또한, 동 거래는 대여에 따른 반대급부인 대차수입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유 유가증권을 제3기관에 예탁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예탁수수료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예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¹¹⁾
- 적극적 채권투자 전략이란 이행보증금으로 수취한 현금담보를 활용하여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대차계약의 만기에 부합하는 단기채권 비중을 크게 하고 장기우량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임.

〈계약기간 동안 채권가치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증권대차거래의 예시〉

시장가치 1억 원의 채권을 초과담보 5%, 2011년 11월 22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 중도상환 요구가 가능한 현금담보 채권대여거래의 경우 채권 대여자는 담보금액(현금) 1억 500만 원을 수취하고 현금을 투자수익률 100bp 자산에 투자(리베이트 금리 80bp 가정)할 경우 20bp의 순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현금담보 재투자 과정에서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그리고 듀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유동성위험이란 채권 차입자가 채권 반환을 갑자기 요구할 때 대여자인 보험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현금담보를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발생함.
- 신용위험이란 보험회사가 현금담보를 재투자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노출되는 위험을 말함.
- 듀레이션위험이란 보험회사가 수익보장을 위해 현금담보를 장기채권에 재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으로 대여증권의 만기는 단기인 반면 재투자 채권의 만기가 긴 경우 금리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 익스포저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음.¹²⁾

10) 담보현금을 다시 유가증권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버리지가 내재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담보현금을 일종의 차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적극적 투자전략이란 Barbed 채권투자임.

11) 예탁수수료는 약 30bp(1년 기준).

라. AIG 대차거래 사례에서 나타난 리스크

■ 대차거래에서 수반되는 유동성위험의 예로 AIG 대차거래를 들 수 있음.

- AIG는 보유 유가증권(국채 및 AAA의 신용등급을 갖는 회사채)을 대여하고 담보로 수취한 현금을 주로 최우량 신용등급을 갖는 부동산 담보부 대출증권(RMBS)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해당 증권의 만기는 대체로 3~10년에 해당함.
- 한편, 증권대차거래의 만기가 초단기임을 감안할 때 AIG의 현금담보 자산운용전략은 이미 만기불일치문제(유동성위험)를 내포하고 있었음.
- 당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MBS증권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상환¹³⁾을 우려한 거래 상대방이 대규모 중도상환을 요구하였으나 AIG가 이러한 현금상환에 응하지 못함.
 - 그 결과 AIG는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210억 달러의 공적자금¹⁴⁾을 지원받음.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의 증권대차거래는 유동성 부족으로 보험회사가 파산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임.

■ 따라서 AIG 대차거래 재개는 현금담보부 대차거래를 통해 유동성자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금담보자산의 유동성 여부,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유동성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음.

- AIG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대차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AIG가 증권대차거래 시 담보현금을 비유동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로 파산위험에 다시 빠질 수 있음.

12) 예컨대 보험회사는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대여채권의 상환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담보로 투자한 장기채권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매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발생의 원인은 장기채권이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임.

13) 증권대차거래 시 AIG가 대여증권 가치의 102~105%에 상당하는 현금담보 자산가치를 동 증권이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1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가 CDS거래, MBS투자, 대차거래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의 총액은 1,820억 달러에 달함.

3.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 국내 보험회사들은 장기채의 저금리 추세 장기화로 자산운용수익율이 하락할 것에 대비할 뿐 아니라 자산운용수익의 다각화 차원에서도 채권 대차거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전략이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당분간 금리(국채금리) 하향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장기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연기금 및 생명보험회사들의 수익률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익다변화 전략이 시급한 실정임.
 - 채권대차거래는 ALM차원에서 금리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들에게 유효한 수익다각화전략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헤지펀드 영업이 본격화될 경우 증권차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추가적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국내 헤지펀드는 공모도, 레버리지 전략 등을 활용하여 파생금융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데, 공모도와 관련하여 헤지펀드의 주요 거래자인 프라이머리 딜러은행들로부터 채권의 대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대형 생명보험 상위3사가 대차거래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경우 대차수입과 예탁수수료 절감으로 인한 증권대차관련 수익은 약 2.6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¹⁵⁾됨.

- 그러나 AIG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채권대차거래는 공짜점심이 아니므로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채권대차거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ri**

15) 국내 대형 생명보험 상위3사의 증권대차거래 규모를 현재 4%에서 1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순수익률(대차수익률 20bp와 예탁수익률 30bp 가정 시) 대차수익이 2.6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생명보험 자살면책 조항과 자살예방 효과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살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전염병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 OECD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주로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생명의 전화, 알코올 상담 등 대부분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자살이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는 고용,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요인이 거시적 변수들이어서 정책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생명보험의 면책기간 조정은 자살예방 관련 정책에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하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음.
 -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전후 자살률 추이에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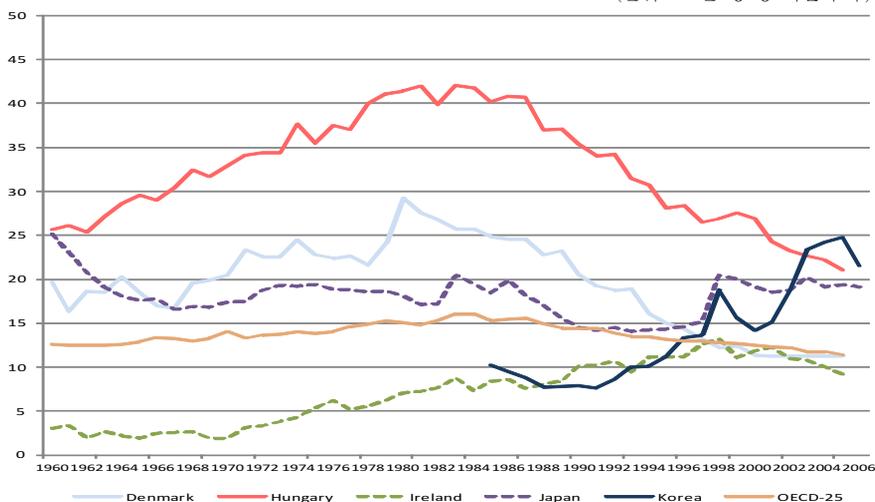
1. 검토배경



- 최근 몇 년간 학교 폭력에 의한 청소년 자살, 우울증 등에 의한 자살, 노년 자살, 유명 연예인의 자살 등 각계각층에서 연령을 가리지 않고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살이 사회적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종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자살은 가족과 사회 및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 및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¹⁾로 인식되고 있음.
 - 자살의 사회적 심각성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자살은 감소 중이지만 유독 일본과 우리나라만 증가추세에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OECD 국가의 자살률 추이

(단위: 10만 명 당 자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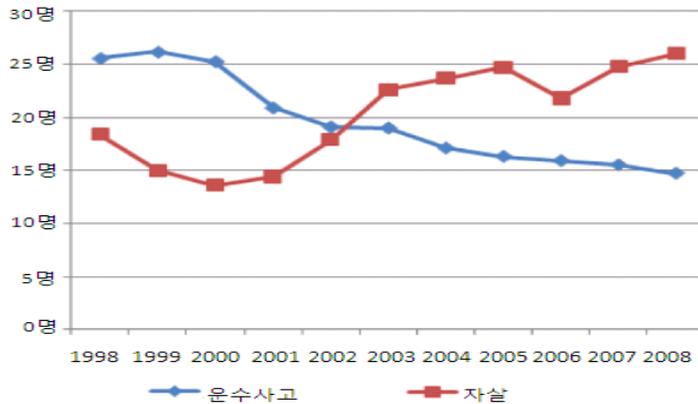
자료: OECD(2011), <http://lysander.sourceoecd.org/vl=90058060/cl=11/nw=1/psv/societyatglance2009/08/04/index.htm>.

1) 보건복지부(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 연령대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중장년, 노년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아 사회적 심각성이 높음(〈그림 2〉 참조).

〈그림 2〉 인구 10만 명당 운수사고와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변화 추이 비교: 1998~2008

(단위: 10만 명당 자살자 수)



자료: 강은정·이수형(2010).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고는 자살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²⁾으로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기간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함.
 - 생명보험의 자살면책 조항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동 가입자의 자살동기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나 면책기간이 짧아 면책기간에 따른 자살동기 억제효과는 실제 크지 않음.
 - 생명보험의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이 짧아 자살동기 억제유인이 크지 않다면 면책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

2. 자살의 정의



- 정신적 기능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자살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함.

2)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살을 염두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생명보험의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계약에서 적용되는 자살 개념에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의 자살, 심신상실 중의 자살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표 1〉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의 개념

구분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의 개념	제외
한국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정신장애자 및 심신상실자의 자살,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자살
독일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민법상의 책임능력 있는 피보험자의 모든 행위	미필적 고의, 사형집행, 중과실에 의한 자살
영국/미국	도덕적, 법적 결과에 대한 의식은 없으나, 물리적 결과에 대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	정신이상 상태에서의 자살
프랑스	자기의 명예, 재산, 건강과 관련하여 중대한 심리적인 악화로 인해 고의로 자기 자신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자신의 행동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무의식적이고 고의 없는 자살
일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사망을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초래한 행위	과실에 의한 자살, 정신장애자의 자살

자료: 김형기·김광호(2004),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면책조항의 개선방향」, 삼성금융연구소 연구보고서, p. 11.

3.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면책조항



■ 「상법」과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상법」 제659조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함.
- 그러나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면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은 면책임.
- 단, 계약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함.

■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음.³⁾

- 자살행위는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라는 점
- 자살행위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최대 선의의 의무(Duty of Utmost Good Faith)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자살을 감행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는 점
- 피보험자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보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관적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 생명보험이 자살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 한편,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면책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함.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면책기간 조항이 없는 한편, 벨기에, 그리스 등은 종전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살행위에 대하여 면책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1990년대 중후반부터 면책기간이 설정됨.
- 일본의 경우 면책기간이 1년이었으나 최근 들어 3년으로 연장됨.

〈표 2〉 각국의 자살면책기간

(단위: 년)

국가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법규정
벨기에	∞	∞	∞	1	1	1	존재
스웨덴	0	0	0	0	0	0	없음
덴마크	0	0	0	0	0	0	없음
독일	3	3	3	3	3	3	존재
그리스	∞	∞	∞	∞	2	2	존재
일본	1	1	1	1	2	3	존재
미국	주마다 상이함(33개주: 2년, 2개주: 1년, 나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호주	1	1	1	1	1	1	없음
한국	2	2	2	2	2	2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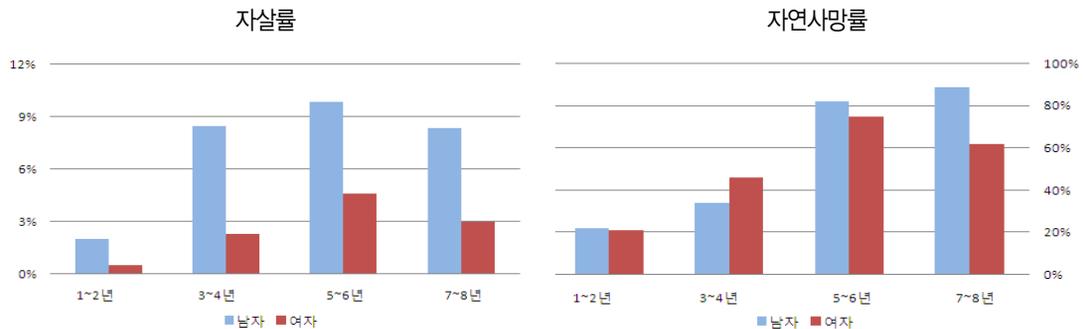
자료: Chen, J., YJ. Choi, and Y. Sawada(2008), 「Suicide and Life Insurance」, 『CIRJE Discussion Paper』, p. 17.

3) 김형기·김광호(2004),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면책조항의 개선방향」, 삼성금융연구소 연구보고서, p. 7.

■ 미국의 생명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면책기간 직후 자살률이 최고점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남.

● 보험가입자의 자연사망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보험가입자의 자살률은 면책기간(2년) 전후로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형태를 나타냄.

〈그림 5〉 미국의 보험가입 후 시간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살률과 보험가입자의 자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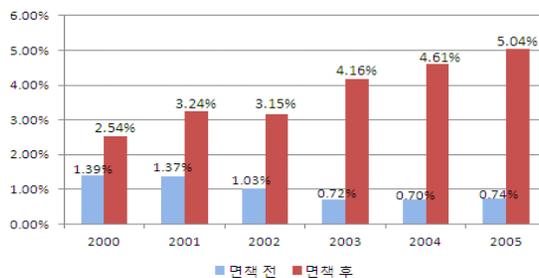


주: 자살률 = 자살로 발생하는 보장금액 / USD 100,000
 자료: Tseng(2004), 「The effect of life insurance policy provisions on suicide rates」, University of Chicago, Ph. D. Dissertation.

■ 우리나라의 경우 면책기간 후 사망자 대비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00~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자 수를 면책기간 전후⁵⁾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6〉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전후 자살률 변화



주: 자살률 =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자 수 / 생명보험 가입 후 사망자 수.
 자료: 이경룡·김사영(2007),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5) 참고로 면책기간 전(생명보험 가입 후 0~2년)과 면책기간 후(생명보험 가입 후 2년~∞년)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해석에 유의 바람.

5. 시사점



- 국내외 연구결과들은 자살이 반드시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제도의 유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제도의 변화가 자살예방정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자살예방의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생명보험 관련 자살에 대해 면책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자살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전후 자살률 추이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 유인 확률이 높을 수 있음.
-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 조정과 더불어 생명보험 가입 시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험가입적격심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험가입적격심사는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에 대한 사전적 배제를 통해 개인의 자살의도를 제거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울러 향후 풍부한 생명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살면책기간 조정이 자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명백히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들은 주로 생명보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면책기간 전후 추이를 단순히 살펴본 것에 불과하며, 자살에 대한 자살면책기간 조정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정신 및 소득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kiri**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유진아 연구위원 / 이해은 연구원

요약

- 2011년 하반기 보험회사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가계대출 동향 집중 점검」 방침을 발표하면서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 약관대출의 이용 편의성에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금융당국은 2012년 2월 현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그 정의 및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실 유발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동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계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해약금을 담보로 하여 해약금의 70% 이내에서 대출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약관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보험계약 해지이나, 동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보험계약자의 약관대출 원리금 연체 시에도 1) 계속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는 한편, 2) 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사유로 보험계약은 해지됨.
 - 또한,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도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
- 최근 경제성장을 둔화, 높은 물가상승률,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고정자산 유동화 서비스라는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이 가계부채 연착륙 차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3/4분기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하여 약 841조 원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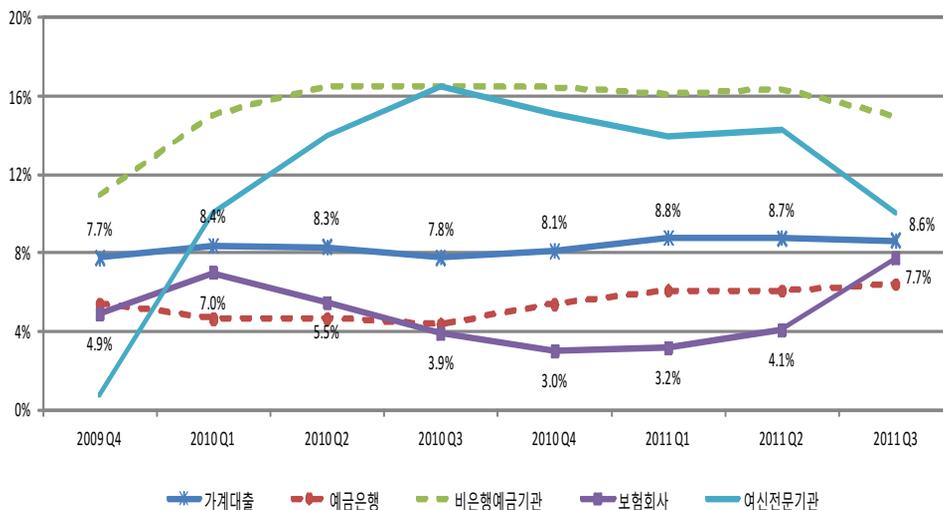
●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경기침체도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¹⁾

■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면서 예금기관과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함.

● 여신전문기관 가계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1년 3/4분기 10%로 나타나 2/4분기 증가율 14.3%보다 다소 낮아짐.

●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년동기 대비 4.1%에서 7.7%로 상승함.

〈그림 1〉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주: 비은행 예금기관은 상호저축,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 현대경제연구원(2011), 「가계부채 위험 복합불황 가능성」.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에 대하여 2011년 11월 23일 「보험회사 가계대출 동향 집중 점검」 방침을 발표하고, 동 방침은 가계대출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금융위원회는 약관대출의 이용 편의성이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으로 봄.
-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2년 2월 현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실태점검 항목으로는 약관대출에 따른 보험회사의 건전성 훼손 및 약관대출 이행과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임.

■ 본고는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과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살펴본 후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검토하고자 함.

2. 보험회사 약관대출

■ 보험회사 가계대출 내용을 살펴보면 약관대출이 보험회사 전체 가계대출의 약 61.1%(2011년 9월 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1년(2010년 9월~2011년 9월) 동안 3.5조 원이 증가하는 등 약관대출이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주요 대출종목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담보대출은 2011년 9월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약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1.9조 원 증가함.

〈표 1〉 보험회사 가계대출 추이

(단위: 조 원)

	'10년 3월	'10년 6월	'10년 9월	'10년 12월	'11년 3월	'11년 6월	'11년 9월
가계대출	60.8	60.7	61.2	62.1	63.0	63.8	66.8
- 약관대출	36.2	36.8	37.3	38.1	38.5	39.3	40.8
- 주택담보대출	19.4	18.8	18.8	18.9	19.5	19.4	20.7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 약관대출은 신용공여 또는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지급금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각에 따라 보험회사 가계대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짐.

- 약관대출을 신용공여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는 경우 동 대출을 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약관대출을 선지급금으로 판단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약관대출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약관대출을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정의하면 동 대출서비스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금융자산에 대한 유동화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최근 약관대출 관련 규제도 주로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둬²⁾

-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유동화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해석되는데, 2010년부터 동 금리에 대한 산출방식이 ‘예정이율+가산금리’로 표준화됨.
- 또한,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금리가 공시항목에 포함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약관대출에 대한 최저 및 최고 금리, 가산금리 등이 공시됨으로써 공정성도 제고됨.

〈표 2〉 약관대출 금리 공시내용

(단위: %)

종류	상품구분	가산금리	약관대출금리		기준일	비고
			최저금리	최고금리		
생명보험	금리연동	1.5~2.5	2.8~6.1	4.5~ 9.0	2012.1.1	최고금리 예외상품 등
	확정금리	1.5~3.2	4.5~7.5	6.0~13.5		
손해보험	금리연동	1.5~3.0	4.7~6.1	6.1~ 8.5	2012.1.31	예외조항 등
	확정금리	1.5~2.0	4.5~6.0	6.0~10.0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관대출은 보험회사가 약관계약상 이행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사항이며,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됨에 따라 약관대출을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약관대출을 신용공여로 간주할 경우 약관대출 연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선지급금으로 분류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음.
- 동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함.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

3.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위험 요인



- **가계대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가계부실이 금융기관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 때문인데, 약관대출의 경우 보험회사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음.**
 -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채무가 일정 부분 대출채권으로 상계되기 때문에 약관대출 부실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없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부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서비스는 약관대출,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데, 대출절차와 대출금리 측면에서 약관대출이 다른 대출상품보다 가계에 유리함.**
 - 주요 보험회사의 대출상품별 금리를 비교한 결과,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낮고 부동산 대출보다 다소 높게 적용되고 있음(〈표 3〉 참조).
 - 약관대출은 가계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절차가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보다 간편함.

〈표 3〉 주요 보험회사 대출금리(2012년 1월 말 기준)

(단위: %)

구분	약관대출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확정금리	금리연동	확정금리	금리연동	확정금리	금리연동
대한생명	5.5~11.0	5.1~9.0	8.1~16.1	-	4.8~7.3	4.4~6.7
삼성생명	5.7~10.5	4.8~6.6	7.9~14.9	-	4.9~6.6	4.6~6.4
교보생명	6.3~10.5	5.3~7.8	-	10.9~15.9	-	4.2~(국채연동) 5.3~(회사채연동)

자료: 생명보험협회, 각 사 홈페이지.

- **약관대출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보험소비자 피해 사항은 약관대출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결과 가계가 위험관리에 실패하는 경우인데, 동 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낮음.**
 - 가계의 소득수준이 악화될 경우 약관대출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도 발생하고, 보험료 납입 연체에 따른 해지가 발생함.

- 즉, 보험계약 해지가 약관대출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가계가 약관대출 이자는 연체하더라도 계속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여 약관대출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더욱이, 가계가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된 후 2년 이내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 부활을 승낙한 후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하면 해당 계약은 부활됨.

4. 결론 및 시사점

-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환경은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원리금 상환이지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인상되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를 4.0% 성장에서 3.7%로 하향 조정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 말 4%대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직장인 건강보험료도 2012년 2.8% 인상될 예정임.
- 우리나라 가계 대부분은 거주주택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조달³⁾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임.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방안 마련 시 이러한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3)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변액연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 윤상호 연구위원

요약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수혈을 받은 미국 Hartford 보험회사 사례를 들어 변액연금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 노후저축수단인 변액연금상품은 다양한 형태의 최저보증(Minimum Guarantee)과 투자기능이 결합된 연금상품으로 주식 또는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의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시스템위험이란 금융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장애로 금융서비스 흐름에 단절이 생겨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 가능성을 총괄하는 의미임.
- 변액연금 제공자는 1) 금융혼란 시 변액연금 계약자의 조기 인출로 인한 보유 유가증권 매각이나, 2)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한 헤징활동 실패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변액연금으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전파시키는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나,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관리가 요구됨.
- 따라서 2003년 도입 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변액연금시장의 경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관리방식을 현재 소극적 자세에서 보다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발적 위험관리 노력과 함께 위험관리에 대해 요구자본을 줄여주는 보험감 독정책의 전환도 필요함.
 - 현재 국내 대부분의 변액연금 취급 보험회사들은 최저보증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을 뿐 자본시장을 통한 별도의 위험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자본시장을 통한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스템 구축과 헤지전문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변액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경우 재보험시장을 통해 최저보증위험을 이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금융정책 당국자는 변액연금 취급 보험회사들의 헤징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헤징으로 인한 위험감소분만큼 요구자본을 줄여주는 방안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변액연금상품 부문의 선두주자였던 미국 Hartford사가 금융위기로 2009년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사례를 들어 변액연금이 시스템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험회사 활동이라는 견해가 있어 왔음.

- 미국 Hartford사는 생명 및 손해보험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보험회사로서 2003년 인출금부인 “Principle First”라는 특약을 변액연금상품에 최초로 도입함.
 - 인출금부란 특정기간 동안 약정된 금액(예를 들어, 투자원금의 일정 비율)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연금가입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확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특약임.
- Hartford사의 2007년 전체 이익인 30억 달러 중 약 20%를 변액연금상품이 기여하였으나, 금융위기 시작점인 2008년 3/4분기 기록되었던 전체 손실 26억 달러 중 9억 3,300만 달러가 연금 상품에 의한 것으로 알려짐.
- Allianz사로부터 25억 달러의 자본 차입 이후에도 추가적 자본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비판적 의견이 나타나면서 동 회사의 2008년 11월 20일자 주가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
- Hartford사는 2008년 11월 Florida에 위치한 저축은행 Federal Trust를 인수해 미 재무부의 공적자금 수혈요건을 갖추었으며, 2009년 2월 1억 달러의 자본을 주감독당국으로 지원받고, 추가로 34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부실자산구조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me)을 통해 지원받음.
- 이러한 공적자금 지원은 Hartford사로 인한 시스템위험 가능성을 감독당국이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했었다는 것을 의미함.

■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옵션은 그 특성상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관리가 중요하며, 이는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활동이 자본시장을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생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으로 적립금의 투자손실 발생 시 계약자들이 행사가격으로 동 연금을 매각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들은 동태적·정태적 헤지¹⁾, 그리고 재보험 구매를 통해 위험을 관리함.

1) 변액연금 관련 헤지는 최저보증에 반대되는 마켓포지션을 선물이나 금리스왑과 같은 파생금융상품 구매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으로서 자본시장을 통해 타 금융업권과 연계되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활동임.

● 이에 따라 위험관리활동으로 인해 타 금융업권과의 연결고리 생성이 수반되는 변액연금을 주요상품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시스템위험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증폭시킬 수 있는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본고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급증한 변액보험이 실제로 시스템위험을 유발할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변액연금 중심으로 분석하고, 동 분석을 통해 변액연금 관련 감독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면서 향후 국내 변액연금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변액연금의 특징

■ 변액연금은 1952년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CREF)에서 퇴직연금의 형태로 최초 출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유형의 보증이 변액연금에 부가되는 형태로 발전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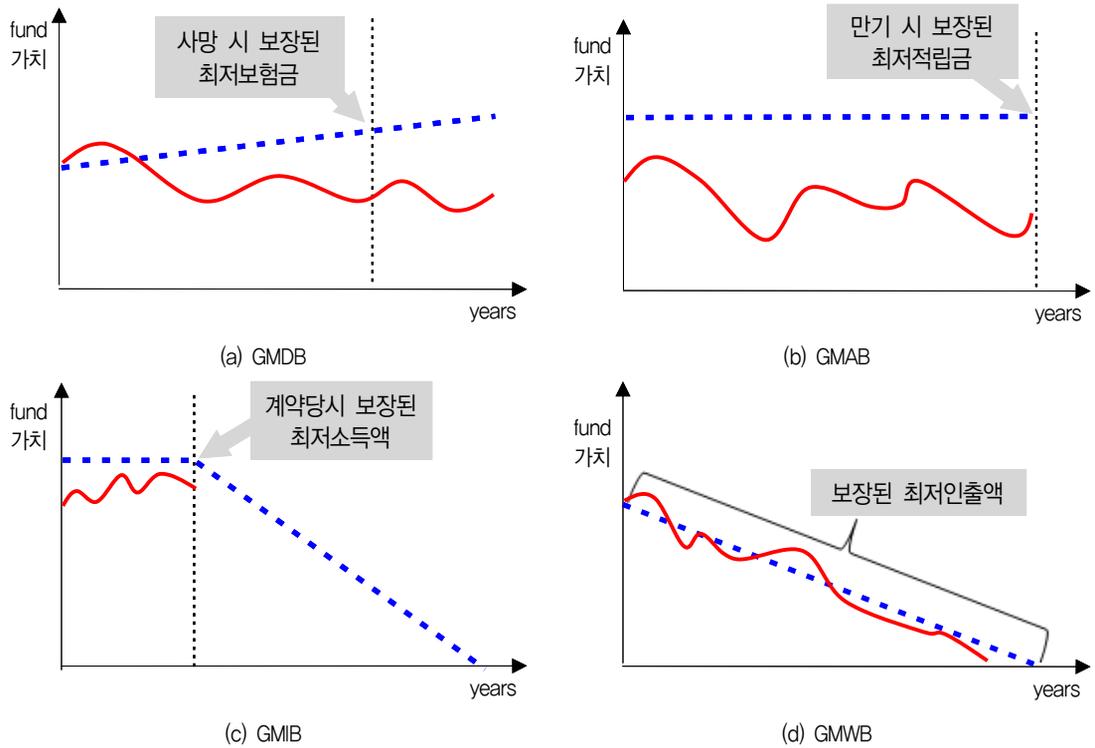
- 1980년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이 최초로 변액연금의 보증옵션으로 도입이 된 이후,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그리고 생존급부(living benefit)인 최저소득액보증(GMIB)과 최저부분해약보증(GMWB) 등이 부가됨.
- 변액연금은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투자수익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보증특약·옵션의 구매를 통해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안정된 노후소득을 원하는 베이비부머의 선호를 받아옴.

〈표 1〉 변액연금의 보증유형 및 일반적 보장내용²⁾

보증유형	일반적 보장내용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계약자 사망 시 최저보험금 보장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특정기간 이후나 특정시점의 최저적립금 보장
최저소득액보증(GMIB)	특정시점 이후 사망까지 최저소득 보장
최저부분해약보증(GMWB)	투자금의 일정 부분 인출을 통한 특정기간 동안의 최저소득 보장

2) 최저사망보험금보증과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의 차이는 최저 투자금의 보장시점이 사망시점인지 특정시점인지에서, 그리고 최저소득액보증과 최저부분해약보증의 차이는 보증의 행사시점과 가입자 사망 시 잔존하는 계좌잔고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가에 있음. 또한, 투자수익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보증내용의 선호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 보증혜택을 올리는 roll-up이나 ratchet과 같은 옵션이 보장에 포함되기도 함.

(그림 1) 내가격 시 적립금과 보증계약의 가치변화



● 각각의 최저보증옵션은 적립금의 투자손실 발생 시에도 계약자의 최소한에 해당하는 노후·사후대책 마련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임.

■ 기금가치의 하락 시 가입자가 각종 최저보증옵션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 변액연금 도입·개발에 앞선 해외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기법의 헤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 보증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함.
- 하지만 위험관리전략의 목적은 위험수위를 각 보험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고, 위험에 노출되는 자본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며, 위험에 노출된 잔여 자본금의 수익을 상품의 가격책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데에 있음.
- 일반적으로 정태적 헤지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적립금 보증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보증에, 동태적 헤지는 최저소득액 보증과 최저부분해약 보증, 또는 roll-up이나 ratchet이 추가된 복잡한 보증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음.

〈표 2〉 위험 헤지 방식과 특징

헤지 방식	특징 및 설명
정태적 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상품을 장외거래로 구매하여 최저보증 부채의 위험 노출도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구입 후 자산조합의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 보증의 복제에 필요한 변형적 옵션의 구매 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비교적 간단한 보증의 헤지를 위해 많이 사용됨
동태적 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보증 부채의 위험 노출도를 상쇄하는 자산조합을 자체적으로 직접 복제하여 구축하는 방식으로 시장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자산조합의 상시적 재조정이 이루어짐 - 유동성이 많고 거래비용이 작은 장내거래 파생상품들이 자산조합 운영에 이용되며, 변형적 옵션의 성격을 갖는 복잡한 보증의 헤지를 위해 주로 사용됨
복합적 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태적, 동태적 헤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위험 노출도의 변동을 측정하는 금리, 주가, 주가변동성 등의 계수를 구분하여 동태적 또는 정태적 헤지를 적용하거나, 정태적 헤지를 통해 위험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잔존하는 위험 관리를 위해 동태적 헤지를 병행하는 “static core with dynamic overlay”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다양한 헤지전략 수립을 통해 변액연금의 보증부채를 관리할 경우 자본시장으로 이어지는 비전통적 위험관리활동이 필요하게 되어 타 금융업권 및 국제적 금융시장과 시스템적으로 연결고리가 생성됨.

3. 변액연금과 시스템위험의 상관관계



- 시스템위험이란 금융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장애로 금융서비스 흐름에 단절이 생겨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 가능성을 총괄하는 의미임.
 - 종전까지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인식 아래 부실회사의 미시적 관리가 중요시되어 왔음.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장애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부실화시키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경험한 후, 금융회사의 위기에 대해 시스템적 관점의 거시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금융시스템의 거시적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규제 변화가 모색되어 왔으나, 금융회사들의 업종 융합 현상과 함께 금융위기 시 부실화되었던 보험회사의 예를 들어 보험권역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현재 대책방안이 준비되고 있음.

■ 거시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서비스 흐름을 중단시킬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즉 금융시스템 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의 식별작업과 선정기준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옴.

- 지난 2011년 확정된 은행권의 SIFI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보험권역도 자체적 SIFI 선정기준을 2012년 6월 확정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선정기준으로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크기, 연계성, 대체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표 3〉 SIFI의 주요 선정기준 및 정의

측정기준	정의
크기(Size)	금융시스템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크기
연계성(Interconnectedness)	금융시스템에서 특정 금융기관과 타 금융기관들 간의 연결고리 존재 및 밀접성
대체성(substitutability)	특정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일성 및 동일 금융서비스의 타 금융기관 제공 가능성

- 그러나 보험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SIFI 선정기준을 각 보험회사별로 적용하기보다는 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전통적·비전통적 사업영역을 구분해 사업항목별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비전통적 보험영역이란 전통적 보험위기 관리기법인 리스크 풀링으로 관리가 불가능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이전시켜야 하는 활동을 통틀어 얘기하며, 이 중 변액연금 최저보증옵션의 위험관리 활동이 대표적인 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 보험영역에 속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옵션으로 인해 시스템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취급은 은행과는 달리 수익제고가 아닌 위험감소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차대조표내에서 파생상품에 노출된 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 보험회사가 최저보증 위험관리를 위해 취급하는 주요 파생상품은 금융위기 시에도 유동성이 유지되면서 다수에 의해 취급되었던 선물과 금리스왑들이며, 이미 엄격한 담보계약을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고 있음.

- 보험회사의 변액연금 보증이행은 타 금융회사가 아닌 계약자와의 거래로서 장시간에 걸쳐 지급이 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경기침체로 인한 위험관리 실패 시에도 우선적으로 책임준비금 및 자기자본을 통한 위험관리를 한 후 경기회복 시 헤지전략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보험회사의 도산 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타 보험회사들로의 계약이전이나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한 계약자 보호도 가능함.

■ 그러나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과 자기자본만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방식(Naked)을 통해 최저보증을 관리할 경우 금융위기 때처럼 경기침체와 시장변동성이 급증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시 높은 성공률을 보인 헤지전략에도 불구하고 Hartford사와 같은 보험회사는 급속도의 자본잠식 현상을 보임.³⁾
- 이는 자본시장의 하락 압력 시 변액연금 보증부채의 급속한 가치상승으로 보험회사가 꼬리위험에 직면해 자본금을 잠식당하여 책임준비금과 자기자본만으로 보증위험을 관리할 시 도산에 빠질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

4. 우리나라 변액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변액연금은 2003년 도입 이후 연평균 55.12%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퇴직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수익과 최저해택이 보장된 변액연금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국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변액종신	1,976	2,485	7,633	3,336	3,302	3,395	3,641	3,580	3,798
변액연금	-	4,699	10,001	39,418	50,421	82,497	79,433	84,786	101,580
합계	1,976	7,183	17,634	42,754	52,723	85,893	83,075	88,366	105,379

3) 미 Milliman사는 2008년 9~10월 금융위기 시 미국 보험회사의 변액연금 보증 헤지 성공률이 93%에 육박했으며, 그로 인해 약 400억 달러의 추가손실을 경감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Performance of insurance company hedging programs during the recent capital market crisis, Milliman, 2005 May).

■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급증하고 있는 판매 추세에 비해 현재 변액보험 판매로 함께 상승하고 있는 최저보증 위험관리에 대한 전략적 고려는 부재한 실정임.

- 일부 보험회사는 변액연금의 보증위험관리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파생상품의 구매를 통한 능동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다수 국내 보험회사들은 수동적 관리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 즉, 경기침체와 시장변동성 확대에 의한 최저보증의 내가격 시 책임준비금과 자기자본만으로 보증부채를 감당해야 함.
- 비록 자본시장을 통한 타 금융업권과의 연결고리가 부재해 변액연금 최저보증으로 인한 시스템위험 발생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이나, 이는 변액연금 판매 증가로 인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도산 위험 노출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대다수 보험회사들의 수동적 보증위험관리 활동으로 인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보증과 최저적립금보증의 두 가지 특약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외 베이비부머들의 노후대책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최저소득액보증과 최저부분해약보증과 같은 특약의 도입은 미루어지고 있음.

- 동태·정태적 헤지 등 능동적 위험관리운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증위험의 단순한 헤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관리기법을 통한 수익률 제고 및 계약자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능력으로 이어짐.
- 적립금과 자본금만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수동적 방식에만 의존하는 대다수 국내 보험회사의 보증위험관리로 인해 복잡한 구조의 헤지전략 구축이 불가피한 최저소득액보증과 최저부분해약보증 옵션들의 국내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시사점

■ 변액연금으로 인한 시스템위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나,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관리는 필요함.

- 현재 운영되는 각 보험회사의 변액연금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관리방식은 주식시장 하락위험에 대해 별도로 헤지하지 않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상황임.
 - 변액연금의 낮은 주식투자 비중과 변액연금 최저보증 옵션의 단순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변액연금의 상품구조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최저보증 위험관리가 나름대로 적합한 방법일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변액연금시장의 경쟁심화, 변액연금상품의 보증옵션 다양화, 이에 따른 자본시장 노출확대 등을 감안해 볼 때 최저보증에 대한 소극적 위험관리방식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을 통한 능동적 위험관리방안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책임준비금을 통한 위험관리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합할 수는 있지만 시장가격이 상시 존재하는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헤지가 보다 적절함.
 -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은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헤징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위험관리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2003년 도입 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변액연금시장의 경우 최저보증에 대한 능동적 위험관리방식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발적 위험관리 노력뿐만 아니라 위험관리에 대한 요구자본 절감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보험감독정책의 도입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을 통한 최저보증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변액연금 최저보증 헤지매매 시스템 구축과 헤지전문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주가지수선물시장, 채권선물시장, 금리스왑시장을 통해 변액연금 보증위험 관련 주가 및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 이러한 변액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경우 재보험시장을 통해 최저보증위험을 이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헤지프로그램 운영 관련 비용문제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체적 헤지가 어렵다면 재보험시장을 활용한 위험관리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금융정책 당국자는 변액연금 취급 보험회사들의 헤지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헤지로 인한 위험감소분만큼 요구자본을 줄여주는 방안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능동적 최저보증 관리전략 구축은 최저소득액 및 최저부분해약 등 다양한 보증옵션 활성화를 비롯해 노후 및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더욱 적합한 변액보험 상품개발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kifi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요약

■ 공제로 운영되던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 예상됨.

- 첫째, 보험시장 내 공정경쟁에 대한 기본 틀이 구축되어 향후 타 공제의 감독일원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형사 위주의 과점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타 금융지주회사 및 대형 보험회사의 금융그룹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둘째, 두 개사 보험조직 및 전속설계사 채널의 구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지만, 직원 및 설계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경우 시장질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
- 셋째, 농협은행(금융점포)의 25% 룰 적용은 결과적으로 기존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로 나타날 수 있으나,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특례로 방카 규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농협보험의 「보험업법」 적용은 「농업협동조합법」 내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제12조) 「보험업법」의 전면 적용을 규정(제134조의5)하여 시행되었음.**

-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분리 각각 설립하고, 2009년 10월 28일 판매 중인 공제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허가의제하며,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은 조건부 허가 의제(제134의5, 부칙 제15조)임.
 - 단, 퇴직연금은 5년간 판매제한하며, 농기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상품 등은 별도 허가가 필요함.
- 농협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의제하여 방카를 즉시적용, 조합은 5년간 적용 유예(자산 2조 원 이상인 조합의 25% 룰은 단계별 제한)하며, 2009년 10월 28일 이전 공제모집자격자에게 보험모집자격을 부여함.
- 기존 공제계약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 및 농협손해가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봄.

■ **유사보험(공제) 형태로 영위해 왔던 농협의 공제사업이 2012년 3월 2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농협금융지주회사 내에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시장에 진입함.**

- 생·손보를 포함하여 농협공제의 규모(2011년 말 기준)는 총자산 36.7조 원, 수입보험료 10.3조 원이며, 규모면에서 농협생보는 대형 3사에 이에 4위, 농협손보는 9위에 해당됨.

〈표 1〉 농협생명의 자산 및 보험료 비교

(단위: 조 원)

구분	농협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총자산	35.3	146.4	63.7	57.9	20.2
수입보험료	9.3	21.6	11.1	10.8	4.2

주: 1) 농협 손보 총자산 1.4조 원, 수입보험료 1조 원임.

2) 농협생명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2011년 말 기준, 민영보험은 2011년 3월 말 기준임.

- 농협보험의 진입으로 신규창출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민영보험시장 규모는 증가함.
 - FY2011년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88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농협생보공제 보험료 9.3조 원이 추가되면 생명보험시장 규모가 약 10%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표 2〉 생보시장 전체와 농협생보의 비교

(단위: 조 원, %)

구분	생보전체(a)	농협생보(b)	비중(b/a)
총자산	436.3	35.3	8.1
수입보험료	88.1	9.3	10.6

주: 생보 총자산은 2011년 10월 말, 수입보험료는 FY2011 추정, 농협 통계는 2011년 12월 말 기준(중앙일보, 2012. 3. 2)임.

■ **농협보험의 출범은 보험시장 내 공정경쟁 체제 구축, 보험회사 간 경쟁 강화 및 금융그룹화 정책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농협공제의 보험업 진출로 공정경쟁의 기초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타 공제(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보험업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제기관 감독일원화에 기여함.
 - 아울러 FTA 등 시장개방 시 쟁점이 되어 왔던 국내보험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함.
- 농협 생보는 수입보험료 기준 4위의 대형 생보회사로서, 농협손보는 성장 잠재력을 갖는 중견 손보회사로서 대형사 위주의 과점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농협 생보 수입보험료를 9.3조 원으로 가정 시 대형3사 점유율(FY'09) 54.1% → 48.4%(△ 5.7%)임.
- 농협금융지주의 진출은 KB금융지주 등 기존 소형 생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들과 본격적인 금융그룹 간 경쟁 촉진을 유발할 것으로 보임.
 - 농협금융지주 산하 생보회사가 기존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와는 달리 대형사로서 시장 내 역할을 자리매김할 경우 타 금융그룹 또는 대형보험회사에도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M&A 가능성이 예상됨.

■ **공제 형태인 조직을 2개의 민영보험회사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총원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공제조직이 민영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언더라이팅 및 심사, 고객 및 영업관리, 리스크 관리, 손해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아울러 대면채널 구축을 위한 전속설계사 인력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입 및 경력채용이 이루어져 현재 농협생보 총직원 수가 600명 수준이나 유사한 규모의 국내 대형 생보사의 임직원은 4,000명 수준(교보 4,398명, 대한 4,187명)임.

■ **방카 중심으로 영업을 수행하던 농협공제가 향후 보험시장에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속설계사의 육성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설계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전개가 예상됨.**

- 농협보험이 전속설계사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하에서는 사실상 수월하지 않음.
- 경쟁 위치에 있는 대형보험사의 설계사 숫자가 2만 명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1천여 명에 불과한 설계사의 신규 확보가 향후 지속성장의 관건임.
 - 농협보험은 방카시장에서의 불가피한 시장 감소를 설계사 시장의 증가로 만회해야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 내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대형 지역조합의 방카 규제 혜택이 소멸 되는 5년까지는 설계사 시장에서 연착륙이 필요한 실정임.
- 만일 조기에 전속설계사를 확보하기 위해 타 회사의 설계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경우 모집시장 질서가 혼란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설계사 스카우트 시 과도한 사업비 지출 증가가 우려가 있음.

〈표 3〉 기존 보험사와 농협생보의 비교

(단위: 명, 개)

구분	설계사 수	점포 수
삼성	38,251	2,570
대한	24,279	1,050
교보	22,235	517
농협	1,182	4,473

주: 1) 농협점포 수는 지역단위조합 수임. 농협은행 금융점포 1,172개를 포함하면 5,645개임.
 2) 농협은 2011년 말 기준임(보험사 설계사 수 2011년 10월 말 기준).

■ **농협은행(금융점포)의 25%를 적용으로 기존 보험사의 경우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단위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로 기존 방카 규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농협공제가 독점하고 있던 농협금융점포의 방카슈랑스에 대해 「보험업법」상의 25%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나머지 75%의 시장(약 1조 7천억 원)을 두고 경쟁함.
 - 결국 전속설계사 채널보다는 방카 및 신채널의 활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소형 및 외자계 보험사들에게 신규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반면, 농협공제 매출의 대부분(73%)을 차지하였던 1,167개(총 4,473개 금융점포)의 단위조합에 대해 공제상담사의 모집행위 허용, 방카슈랑스 25%를 5년간 유예 조치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함.

- 중앙회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약 8만 명의 공제상담사가 별도의 자격 없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으나⁴⁾, 「보험업법」상 모집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 측면에서는 농협의 전국적 금융점포망(1,172개)을 통해 기존의 농협공제상품에 한정하고 않고 전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됨.

● 반면, 공제상품과 같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보험상품을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임. Kiri

4) 「보험업법」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협보험 설립 후 2년 동안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부칙 § 15④)함.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극단적 기후현상의 심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농도의 심화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89ppm으로 1750년 이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9년 관측 시작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적응이 기후변화를 주어진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나 재해 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완화는 기술변화나 대체를 통해 기후변화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IPCC는 적응을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는 자연계 또는 인간계의 순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리스크에 근거한 보험료를 통해 손실축소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관련 리스크관리 교육을 통해 적응을 유도함.
- 현재 보험회사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에는 탄소배출 경감유도 상품판매,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기후변화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음.
 - 이밖에도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관련 정책 입안 참여, 사회책임투자, 회사 내 탄소배출 절감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중고부품활성화보험 등의 상품들이 판매됨에 따라 탄소배출 경감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탄소배출 관련 제도 변화와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개선제안 등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기후변화의 원인 또는 정도에 대한 완벽한 의견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온실가스¹⁾ 농도의 심화가 기후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²⁾
 - 기후변화란 100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 기후상태나 기후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함.³⁾
 -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로는 연평균 기온, 해수면, 강수량, 강우강도 등이 사용됨.
 - GAW(Global Atmosphere Watch)⁴⁾에 따르면, 2010년 이산화탄소의 지구 전체 평균농도는 389ppm⁵⁾으로 산업혁명 이전인 1750년과 비교하여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구대기감시센터(안면도)에서 2009년에 측정된 이산화탄소의 연평균 농도는 392.5ppm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 관측 시작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⁶⁾
- 기후변화는 극단적 기상현상의 발생 심도 및 빈도를 상승시킴으로써 물적 피해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지속적 기온상승이나 환경변화를 통해 질병 발병률을 높이기도 함.
- 보험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크게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적응이 기후변화를 주어진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리스크에 근거한 보험료를 통해 손실축소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교육을 통한 리스크관리 의식 고양 등을 통해 적응을 유도하고 있음.⁷⁾

1) 주요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methane),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오존, 프레온가스(chlorofluorocarbon) 등이 있음.

2) IPCC 4차 평가보고서는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함.

3)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조에서는 기후변화를 지구대기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기후의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기후의 변화로 정의함. 즉,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대기구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자연적 원인에 기인하는 기후변동성(climate variability)을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보다는 넓은 의미의 기후변화, 즉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 모두를 기후변화 현상에 포함하도록 함.

4) <http://www.wmo.int/pages/prog/arep/gaw/ghg/GHGbulletin.html>

5) ppm: parts per million, 100만분의 1농도.

6) http://www.wmo.int/pages/prog/arep/gaw/ghg/documents/AsianGAW_GHG_newsletter1.pdf

- 본고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완화 방법들을 살펴본 후 국내 보험산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정부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

-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이 국제적 공조를 통해 기후변화 추세 및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함.
 - WMO와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가 공동으로 설립한 IPCC는 기후변화 추세 및 원인규명,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 및 대응전략을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표 1〉 참조)함.

〈표 1〉 IPCC 설립경과 및 활동

설립 및 조직	
1988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 및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부 간 협의체 설립
1992년 11월	조직을 개편하여 3개 실무그룹 및 1개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G1: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기후모델링 등 연구 • WG2: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 및 취약성 분야 연구 • WG3: 배출량 완화, 사회 경제적인 비용 편익분석 등 정책분야 • TF: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태스크포스팀
- 평가보고서 발간: 전 세계 과학자가 참가하여 기후변화 추세 및 원인규명,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및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	
제1차(1990년)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증거 확인 →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노력을 촉구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을 발족하는 결정적 계기
제2차(1995년)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영향으로 결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속력이 있는 장치로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제3차(2001년)	현재의 기후시스템 이해와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값과 이에 대한 불확실성 제시
제4차(2007년)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제시 및 기후변화는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
제5차(2014년)	발간 예정
-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및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발간	

7) Stahel(2010), "Climate Change: Road-Mapping Insurance's Role in Climate Change", General Assembly Renew 2010, the Geneva Assouoqion

-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d on Environment and Devlopment)에서는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논의가 진행 중임.
- 우리 정부도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WMO, IPCC 등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지만,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절감해오고 있음.
 - 특히, 2009년에는 5년간(2009~2013년) 107조 원을 녹색기술,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개발, 교통, 건축, 생태계 복원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함.⁸⁾
 - 전략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국가 온실가스정보 관리체계 구축, 국가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감축전략 추진, 탄소순환운동전개 및 산림 등 탄소 흡수원 확대, 북한 조림 등 그린 한반도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3.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 해외사례



-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도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는 신상품 제공,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 탄소정보공개 등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는 상품은 자동차 관련 상품이 주를 이루며,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상품이나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탄소정보공개 등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8)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표 2〉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

완화 방법	내용
탄소배출 경감 유도 상품 제공	주행거리 연동(PAYD) 자동차보험 친환경건축 관련 보험상품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할인 및 대출 우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리스크관리 보험상품 제공 기술개발에 직접 투자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탄소 배출권 관련 상품 제공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청정개발체제 관련 리스크, 탄소상쇄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관리
기후리스크 공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참여
기타	교육 및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 고양 기후변화 관련 정책 입안에 참여 사회책임투자(기후변화 관련 요소 고려) 회사 내 탄소 배출 절감 노력

가. 탄소배출 경감 유도 상품

■ 보험회사들은 탄소배출을 경감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탄소배출 경감 유도 상품으로는 주행거리 연동(PAYD: Pay as You Drive) 자동차보험, 친환경 건축 관련 상품 등이 대표적임.

■ 주행거리 연동(PAYD)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인 탄소배출 억제 관련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Mills(2009)의 보고에 따르면 24개 보험회사들이 PAYD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균 운전자보다 덜 운전하는 계약자에게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음.⁹⁾

-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여러 형태의 PAYD 자동차보험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행거리 절감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율 및 유지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연료절약형 자동차나 저탄소배출 자동차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판매됨.
 - 하이브리드 전기보트와 요트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친환경 해상보험상품도 있음(Travelers).

9)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현황을 알아 본 Mills(2009)의 2008년 조사는 29개국, 244개의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함.

Mills(2009), "From Risk to Opportunity: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eres Report*.

■ 친환경건축 관련 상품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보험료 할인으로부터 손실 발생 후 친환경 재물복구비용을 보상,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관련 혜택, 친환경건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음.

- 미국 Allianz의 Fireman's Fund가 판매하는 GreenGard보험은 친환경건물을 건축한 계약자, 기존 건물에 친환경 리노베이션을 한 계약자, 손해 발생 후 환경 친화적인 재개발을 원하는 계약자를 보장함.

나. 재생에너지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 보험회사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생산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대출 우대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변화 완화를 유도함.

- 기술개발 관련 리스크 담보 상품은 크게 종합보험과 성과보증보험의 형태를 띠는데, 성과보증보험의 경우 수익 규모, 산출물, 설비 성능 등이 성과의 기준이 됨.
 - 성과보증보험은 AXA, Munich Re, Navigators, Sompo Japan, Tokio Marine Holdings 등이 판매하고 있음.

■ 아울러, 해외 보험회사들은 기술개발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조성을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기후리스크 통제를 시도하고 있음.¹⁰⁾

-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5개 보험회사가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에 1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였는데, 이는 2007년 투자규모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임.¹¹⁾
- 유럽 보험회사들이 미국이나 아시아 보험회사들에 비해 녹색친화산업 투자측면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AIG가 동 산업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Zurich Life의 경우 기후 및 환경 친화적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보험상품(unit-linked life insurance)을 제공하고 있음.

10)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별첨 1>을 참조함.

11) Mills(2009)

〈표 3〉 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기술이나 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회사	투자내용
Allianz	독일에 3개 풍력발전 시설 소유, 운영, 이탈리아에 네 번째 풍력발전 시설을 개발 중 (이들 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2억 2,000만 달러 규모)
AIG	스페인에 18메가와트 태양광발전 시설에 투자
Swiss Re	1996년부터 대체에너지, 수질 및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에 직접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2006년 기준 3억 2,000만 달러 규모)
Prudential	2007년 말까지 풍력 생산에 5억 달러를 투자함 (약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
Allstate	환경 친화적인 투자에 2억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계획

자료: Mills(2009).

다.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660억 달러를 상회하며, 2012년에는 5,500억 달러, 2020년에는 3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됨(The Climate Group).
- 탄소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보험회사들은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탄소상쇄(carbon-offset)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의 배출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해당 국가의 배출권 인도 제한 등으로 인해 배출권이 인도되지 않을 리스크를 담보함.
 - CDM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후 달성한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제도임.
 -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인증된 감축실적(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어야 하며, 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의 인증을 받아야 함.

〈표 4〉 탄소시장 관련 보험상품

회사	내용	비고
Aon	탄소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탄소시장 참여와 관련 리스크 평가
Swiss Re	CDM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Kyoto-CDM 관련 리스크 보험
IAG	탄소상쇄(carbon offsets)를 구매 가능하도록 함	-
Munich Re	합의된 탄소크레딧 가치를 보장하고 손실 발생 시에 CDM과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투자자에게 보상	Kyoto Multi Risk Cover
Zurich	탄소크레딧 인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CDM 프로젝트 채권자에 대한 보장	탄소인도(carbon-delivery) 보험 CER/VER Delivery Securitization Policy

자료: Mills(2009).

라. 기후변화공시제도 도입

■ 보험회사들의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s) 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리스크 공시에 기후리스크¹²⁾를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17개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6개 보험판매회사가 탄소배출제도를 달성했으며, 다른 회사들도 일정한 시일 내에 탄소배출제도를 달성하겠다는 공약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¹³⁾
- 기후리스크 공시와 관련하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기후공시기준이사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한편, 미국 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00년 자동차, 제조업, 석유 및 가스, 보험, 석유화학, 수도 및 전기회사들의 제출서류에 기후변화 보고를 포함함.

■ 미국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기후리스크 공시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FY2010에는 수입보험료가 3억 달러 이상인 보험회사는 의무공시, 나머지 회사는 자율공시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¹⁴⁾(〈별첨 2〉 참조).

12) 기후리스크(Climate Risk)는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기후변화리스크(Climate Change Risk)라고도 불림.

13) Mills(2009).

14) NAIC의 Financial Condition (E) Committee 산하의 Examination Oversight (E) Task Force에서 담당하고 있음.
http://www.naic.org/committees_e_examover.htm

- 본 설문조사에 참가하는 보험회사는 매년 5월 1일까지 지역 감독당국에 설문을 제출해야 하며, 설문조사 작성에 대한 강제는 각 주의 재량에 따름.
- 개별 설문응답은 비공개이며, 참여하는 주정부와 NAIC가 협조하여 통합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것임.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세계 주요기관들의 온실가스 배출, 수자원 이용, 기후변화 관련 전략에 대한 정보를 축적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¹⁵⁾ 기후변화, 특히 탄소배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60여 개국의 3,000개 이상의 기관이 본 정보공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4. 보험회사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 국내사례



가. 탄소배출 경감 유도 상품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탄소배출 경감을 위한 상품으로는 PAYD 자동차보험상품과 중고부품활성화 자동차보험이 있음.

- PAYD 자동차보험상품은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고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요일제 자동차보험과 7,000km 이하 운행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보험이 판매되고 있음.
 - 마일리지보험은 작년 12월에 출시되었으며, 1월 기준으로 약 4만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자원재활용으로 저탄소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중고부품활성화 자동차보험은 차량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 2010년 11월 출시됨.
- 2011년 4월 기준으로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14개 회사에서,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환경마크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15) <https://www.cdproject.net/en-US/Pages/HomePage.aspx>

- 한편, 한화손해보험과 환경부는 2011년 3월 부산, 수원시와 탄소배출권 녹색자동차보험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배출권 연계 자동차보험인 ‘녹색자동차보험’을 출시함.

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상품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녹색산업종합보험 등이 있으며, 관련 기업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으나, 보험회사가 관련 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녹색산업종합보험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인증된 녹색기술, 녹색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10% 또는 20%), 부보율 확대 등의 우대를 적용하는 상품임.
 - NH보험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기계종합공제를 판매하고 있으며, 현대해상도 태양광 에너지 재산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음.¹⁶⁾
 -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¹⁷⁾은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음.

다. 기타

- 탄소배출권 관련 보험상품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탄소종합보험이 있는데, 본 상품은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함.

 - 탄소배출권 획득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나 금융기관이 사업 소요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 구매자가 탄소배출권 선물계약 체결 후 배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담보함.¹⁸⁾

16) 진익·김해식·김혜란(2011),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조사보고서 2011-3, 보험연구원.

17) 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임.

18) http://www.ksure.or.kr/jsp/support/support_04_02.jsp

■ 국내에서는 탄소리스크 공시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CDP의 2010년 보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86개 기업이 기후리스크 및 탄소배출 관련 질문에 응하였으며, 보험회사 중에서는 4개사가 질문에 응한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은 응답결과를 공개하였으나, 현대해상은 응하였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5. 요약 및 시사점



■ 온실가스 농도 상승은 기후변화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은 탄소배출 경감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 농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한 후 논의가 진행 중임.

■ 보험산업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는 신상품 제공, 재생에너지 산업 및 녹색기업 육성 노력,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제공, 기후리스크 공시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음.

● 특히, 보험회사들은 축적된 리스크관리 능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며, 확대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리스크관리를 통해 탄소시장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밖에도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거나 관련 정책 입안에 참여하기도 하며, 사회책임투자(SRI: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회사 내 탄소 배출 절감 노력 등의 기후변화 완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일리지자동차보험이나 승용차요일제 특약과 같은 PAYD 자동차보험상품과 중고부품활성화 자동차탄소배출 경감 유도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탄소배출 경감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탄소배출 관련 제도변화와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개선제안 등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이나 회사 내 탄소 배출 절감 노력 및 탄소리스크 관리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kiri

〈별첨〉

〈별첨 1〉 보험회사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녹색펀드

회사	설립년도	비고
Storebrand	1996	Storebrand-Scudder Environmental Value Fund(1996) 현재는 Storebrand Principle Global Fund로 불리움
Sompo (Sompo Japan Green open)	1999	개시 이후로 Tokyo Stock Price Index를 약 10% 능가 2005년 두 번째 펀드를 내놓음(Sompo Japan SRI Open)
KlimaStrategie Equity Fund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G(Munich Ergo Asset Management Group)가 설립한 펀드 • 기후변화 영향을 방지하는 회사들에 투자
Green Fund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F Asset Management, AIA Pension and Trustee Co. Ltd.가 설립
European Clean Energy Fund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iss Re가 주요투자자 • 유럽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자본 제공
WF Clean Tech Fu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A • 지구온난화, 환경, 관련 문제들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기술,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에 투자 • 2008년 중반 기준으로 4,000만 달러가 투자됨
Start Green Sustainable Innovation Fund 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tis(2010년 이후 Ageas로 회사명 변경) • 신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고자 하는 네덜란드의 기업가를 지원
CleanTech Venture Fund	-	Swiss Re가 운용
Gerling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	-	HDI Gerling이 설립
EcoTrends Fu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ianz Group은 본 펀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분야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투자 • 2007년 6월까지 약 14억 달러를 투자

자료: Mills(2009).

〈별첨 2〉 NAIC의 보험회사 기후리스크 공시 질문

질문	CDP질문과 비교
당사의 운영이나 조직의 탄소배출을 평가, 감소시키거나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요약해 주시오.	CDP: 성과 21번 질문에 해당
당사는 리스크관리와 투자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요약해 주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사의 리스크관리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CDP: 리스크와 기회 질문 1~3에 해당
당사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식별 및 리스크가 당사 영업에 미칠 영향(재무적 영향을 포함)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CDP: 리스크와 기회 질문 1~3에 해당
당사에 기후변화가 현재 제기하는 리스크나 예상되는 리스크를 요약하십시오. 이러한 리스크가 당사의 영업에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이러한 리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지리적 지역의 식별도 포함하십시오.	CDP: 리스크와 기회 질문 1~3에 해당
당사는 기후변화가 당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 왔습니까? 이러한 고려에 따라 당사의 투자전략을 바꾸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사가 취했던 과정을 요약하십시오.	CDP: 리스크와 기회 질문 3: 다른 리스크 질문 6: 다른 기회에 해당
당사가 취했던 보험계약자들이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현상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도록 독려하는 과정을 요약하십시오.	CDP: 리스크와 기회 질문 4~6에 해당
당사가 기후변화이라는 주제로 주요 고객층을 사로잡았다면 그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CDP: 지배구조 질문 24, 26, 27에 해당
컴퓨터 모형의 사용을 포함한 당사의 영업에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CDP: 리스크와 기회 질문 1~3에 해당

자료: NAIC(2010), *Insurer Climate Risk Disclosure Survey*.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보험과 공제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여 약정한 위험이 실현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험업의 범주에 공통적으로 포함됨.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법규를 적용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공제 간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하였음.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수 보다 많은 90여개 이상의 공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감독이 미흡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의 보험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공제에 대한 감독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여 2008년부터 근거법 없는 공제를 「보험업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함. 공제가 「보험업법」의 소액단기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면허보험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음.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은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입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최저 1,000만 엔으로 크게 낮추었고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자산운용,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보험회사와는 다른 규제와 감독을 받음.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회사들에게는 사업모형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화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기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하여 보험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가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공제에 대한 감독제도는 미비한 상태에 있음. 공제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의 차이가 보험산업 내에서의 공정경쟁 훼손과 취약한 보험소비자 보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일원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근거법 없는 공제나 근거법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제를 「보험업법」의 범주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험업 전체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함.

1. 검토배경



- 지난 3월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불특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대형 공제도 「보험업법」상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공제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제에 대한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국내에서 보험업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통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보험회사와 공제는 상이한 규제·감독을 받아왔음.
 -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체국보험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되며, 신한, 새마을금고, 수협은 발효일 2년 후인 2014년 3월 15일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¹⁾
 - 그러나 대형 공제 외의 다수의 공제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험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²⁾

- 공제와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하여 대량의 동질위험 집단을 구성하고 약정한 위험이 실현 될 경우 경제적 손실 보전”이라는 보험업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³⁾ 2011년 현재 보험업 영위회사는 총 150여개일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공제는 1970~80년대에는 많지 않았으나 1990년 중반 이후 설립이 확산되면서 2011년 현재 90여개⁴⁾로 추산되며 40개 민영보험회사(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9개사)⁵⁾를 초과하고 있음.
 - 공제의 설립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민영보험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자의 리스크 전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공제가 특정 리스크별 전문인수기관으로 획정되어 보험업의 이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1) 이기형(2011. 12. 5),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험분야 주요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KiRi Weekly』 제159호, 보험연구원.

2) 연합뉴스(2011. 10. 4), 「93개 공제조합 감독 사각지대·피해속출」 참조.

3) 「상법」 제638조(의의)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부화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연합뉴스(2011. 10. 4), 「93개 공제조합 감독 사각지대·피해속출」 참조.

5) 회사 수에서 지점은 제외한 것임. 지점(손보 9개사, 생보 라이나, AIA)을 포함하는 경우 53개사임.

〈표 1〉 2010년 보험업 영위 현황

(단위: 개, 억 원, %)

구분		회사 수	보험료	점유비	가입자 제한여부
민영 보험	생명보험	23	830,074	59.5	불특정
	손해보험	30	513,446		불특정
	소계	53	1,343,520		
공영 보험	국민연금	1	245,602	33.4	전국민
	국민건강	1	284,577		전국민
	산재보험	1	45,993		근로자
	공무원연금	1	84,232		공무원
	수출보험	1	4,848		수출입기업
	우체국	1	69,470		불특정
	사립학교	1	20,269		사립학교 교직원
	소계	7	754,991		
공제	농협	1	97,227	7.1	불특정
	수협	1	8,665		불특정
	새마을금고	1	13,716		불특정
	신협	1	5,533		불특정
	기타	8(78)	33,977		업종에 따라 특정, 불특정함
	소계	12(92)	159,118		
보험업 전체		72(150)	2,257,629	100.0	

주: 공제의 기타의(78), 소계(92), 보험업전체(150)는 금융감독원의 공제조사결과 93개 공제를 감안한 경우임. 또한 보험료는 반영되지 않은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 『2010년도 보험통계연감』에서 작성함.

■ 공제기관의 증가 원인은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업법」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기반 구축을 모색하는 주요국들과는 상이한 점임.

- 공제시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⁶⁾ 뉴욕 주는 1920년부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1997년부터 「보험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U국가들도 EU 지침에 따라 「보험법」 적용으로 편입하였음.

6) 미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공제(fraternal society)와 보험회사가 공존하였으나 1849년 뉴욕주가 신규 설립회사에게 자본금과 잉여금을 요구하게 되자 공제조합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1980~90년대에 들어 민영생명보험시장의 50% 이상을 공제가 점유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오다 1920년부터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80% 이상의 주가 지급능력을 규제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1930년에 공제의 점유비는 8%로 떨어짐.

- 국내 보험시장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공제에 대한 감독체제를 마련하였음.
- 이에 보고는 국내 공제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공제기관을 「보험업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여 보험업의 공정경쟁 원칙 확보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모색할 있는 방법을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함.

2. 국내의 공제현황 및 문제점



가. 공제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를 규제하거나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공제의 정의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비해 유럽은 공제를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에 대해 보증, 구제(province) 또는 저축, 보험, 의료보조, 신용, 기타의 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적인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공제의 종류는 멤버의 구성 범위를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조합공제와 한정하지 않은 일반공제로 구분할 수 있고, 정부가 보험료 지원이나 조세 등으로 지원하는 정책성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 1937년 수산업협동조합 설립으로 시작된 공제는 2011년 현재 60개의 다양한 공제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상호 부조형 공제를 제외하면 48개임.
 - 세부적으로는 일반 공제 4개, 조합 공제 40개, 정책성 공제는 4개가 운영 중임.

〈표 2〉 공제와 보험회사 비교

설립	신설 공제 수				합계
	일반공제	조합공제	정책성 공제	소계	
1950년 이전	1(수협)	1	-	2	2
1960년대	1(농협)	3	-	4	6
1970년대	-	2	-	2	8
1980년대	1(신협)	7	-	8	16
1990년대	1(새마을)	7	1(건설공제)	9	25
2000년~05년	-	10	1(과학기술인)	11	36
2006년 이후	-	10	2(노란우산, 경기사회복지)	12	48
연도 합계	4	40	4	48	-

주: 오영수 외 2인(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p. 37에서 정리함.

■ 공제는 동질위험집단을 대량으로 풀링(Pooling)하여 약정한 위험이 실현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보험업상의 보험회사와 동일하나 일반 공제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업임.

-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 가운데 회원이 기금을 각출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조합공제는 상호회사와 유사함.
- 일반 공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반 공제는 주식회사나 상호회사의 범주에 해당하지도 않은 아주 특수한 형태의 보험업임.

〈표 3〉 공제와 보험회사 비교

구분	보험회사		공제	
	주식회사	상호회사	조합공제	일반공제
회사설립	상법, 보험업법	상법, 보험업법	민법, 해당법규	민법, 해당법규
소유	주주	회원	회원/기금	-(기금)
운영목적	영리	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계약자	불특정다수	회원	회원	불특정다수
영위종목	모든 종목 혹은 일부종목 영위가능		특정종목	특정종목, 모든종목
운영주체	회사	회사	협회, 공제기관	협회, 공제기관
계약자보호	예금자보호, 제3자보호기금		-	-
모집방법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대리점	-	-
규제법규	보험업법	보험업법	해당법규	해당법규
감독기관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해당부처	해당부처

■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기관이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미흡한 관련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⁷⁾

- 2011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3개 공제 중 공제상품을 만들어 요율, 판매, 손해사정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유공제'를 취급하는 곳은 54개에 이룸.
- 공제감독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20개, 국토해양부 17개, 각 시·도교육청 13개, 지식경제부 10개, 환경부 6개, 행정안전부 5개, 공정거래위원회 5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임.

■ 최근 들어 공제의 설립 근거법이 우후죽순 형태로 제정되고 있으며, 감독기관도 부재한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도 다수 존재할 수 있음.

- 최근 설립되는 공제는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되는 공제도 있으며, 보험시장을 통한 보험 가입이 곤란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제는 의료사고공제를 들 수 있음.
- 또한, 아주 특수한 리스크를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한다는 점임.
 - 예를 들면 예술인 공제, 폐기물처리업체공제, 주택관리사공제, 녹색제품구매공제, 소방사 공제, 사회복지사공제 등 다수가 존재함.
- 대부분 관련 분야의 조합이 운영한다는 점임.
 - 이는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업법」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시장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공제의 문제점

■ 공제와 보험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과 「상법」 등 다른 관련 법규에 의해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는 반면에 공제는 받지 않음으로써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모순됨.

-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경우 공제조합에 대해 「보험업법」을 통해 보험회사와 동일한 감독과 규제를 하고 있어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우체국보험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신협 등 4대 공제에 대해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7) 연합뉴스(2011. 10. 4), 「93개 공제조합 감독 사각지대·피해속출」 참조.

- 대부분의 공제가 관련 산업의 협회 또는 단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업과 협회업무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험업의 본질적 기능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보험업 이외의 업무에 대한 본체 내 겸영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제기관들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내·외부의 충격으로 공제사업 경영전반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음.
 - 또한, 공제기관의 경영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적으나, 타인을 위한 보험 즉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수 있음.

- 90여개의 공제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 관련 업무의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재무건전성이 훼손된 경우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에 노출됨.
 - 금융감독원이 공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제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존재하며 보험업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 기초서류 협의를 요구한 바 있음.⁸⁾
 - 또한, 공제조합의 경우 투명한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파산 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소비자의 피해와 국가적 부담으로 전가될 여지가 있음.

- 보험업에 대한 일관적인 감독정책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험 사기 등으로 인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와 보험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공제계약과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계약 자료가 집적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한 역선택과 보험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관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임.
 - 대부분의 공제는 손해보험의 영역의 특수한 리스크(재물손해, 상해손해, 보증손해, 보증리스크 등)를 주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어 손해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0. 4), 「유사보험 영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기사 관련.

3.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도입배경 및 특징



가. 도입배경

- 일본은 2004년까지 공제⁹⁾가 급증하였는데 정보공시 결여, 모집 시 설명의무 태만 등에 따른 계약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2006년부터 조합의 목적과 가입대상을 불문하고 공제를 「보험업법」으로 편입하였음.
-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를 감독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음.
- 공제에 대한 보험업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보험업법」 시행 이후 2년간의 준비기간에는 공제를 특정 보험업자로 규정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2년 후에는 소액단기보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음.¹⁰⁾

나. 소액단기보험업의 특징

- 소액단기보험업은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로 「보험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필요 자본금(기금)은 일반 보험회사의 1/10에 해당하는 최저 1,000만 엔임.
- 특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 중 「보험업법」의 적용 제외를 받는 공제는 계약자 집단이 제한되어 있는 일반 회사 내 공제, 학교 내 공제, 계약자 1,000명 이하 소규모 공제 등임.¹¹⁾
- 연간 수입보험료가 50억 엔 이내인 경우에만 소액단기보험업에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보험회사로 면허를 취득해야 함.

9) 2004년 일본 총무성이 조사한 일본의 근거법이 없이 운영되는 공제를 보면 임의단체는 422개, 기업내 공제는 103개 단체, 공익법인 운영공제 159개 등 총 684개로 나타났음. 일본공제연구회(2007), 『공제사업과 일본사회』, 매일경제신문사, p. 220.

10) 2012년 현재 소액단기보험업으로 67개사가 등록하였음.

11) 일본 「보험업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 3에 열거되어 있음.

〈표 4〉 소액단기보험업의 특징

구분	소액단기보험업	보험회사	
진입 요건	회사형태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규제방법	등록제	면허제
	최저자본금	1000만 엔	10억 엔
	사업규모	연간보험료 50억 엔 이하	제한 없음
	취급상품	소액 1000만 엔 이하, 보험기간 2년, 월납식	제한 없음
행위 규제	모집방법	소액단기모집인	제한 없음
	자산운용	예·적금, 국채, 지방채로 제한	제한 없음
	건전성규제	책임준비금, 정보공시, 솔벤시규제, 업무보고 등	
계약자보호	영업보증금공탁	계약자보증기구	

자료: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http://www.fsa.go.jp>)에서 자료 정리.

■ “소액”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소액단기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소액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이 단기인 상품으로 제한되고 있음.

- 보험가입금액은 사망보험 300만 엔(복수계약은 1,500만 엔)이하, 의료보험 80만 엔(복수계약 240만 엔) 이하,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중증장해보험 300만 엔(복수계약 1,500만 엔),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중증장해보험 600만 엔(복수계약 3,000만 엔), 상해사망보험 600만 엔(복수계약 1,500만 엔), 손해보험은 1,000만 엔 이하로 한정됨.
- 보험기간은 사망 및 의료보험은 1년이고, 손해보험은 2년임.
- 상품 인가는 사전 보고제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판매 60일 전에 금융청에 제출해야 함.

■ 책임준비금적립, 솔벤시(Solvency)규제 등 건전성 규제는 일반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산운용과 파산 시 계약자보호 등에서는 차이가 있음.

- 자산운용의 경우 예·적금이나, 국채, 지방채 등 안정성이 큰 자산에만 한정하여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는 손·생보별로 분리 운영되는 보험 계약자 보호 기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영업보증금¹²⁾을 매년 공탁해야 함.

12) 공탁 영업보증금은 매년 보유보험료의 5%와 1,000만 엔을 합한 금액임.

■ 소액단기보험업자도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형 구축이 가능함.

- 이와 반대로 보험회사¹³⁾가 소액단기보험업자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특화보험시장 또는 지역별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있음.

4. 시사점



■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국내의 공제 등 유사보험은 보험회사와의 규제차이, 독점적 지위 등으로 소비자 편익 훼손,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미국, 독일(유럽), 일본과 같이 공제 등 유사보험을 「보험업법」 적용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임.

- 특히 일본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인가받은 공제와 캡티브 성격의 공제 등을 제외하고 모두 「보험업법」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업법」의 위반으로 규제하고 있음.
- 독일은 「보험법」 제3편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소규모공제사업의 범위도 감독당국이 정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주식회사, 상호회사, 상호교환보험((reciprocal), 로이드보험, 연대우애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 기타 보험조직으로 규정하여 감독하고 있음.

■ 현재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과 관련한 조항이 있지만¹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감독을 통한 소비자 편익제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 모색을 위해서는 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 확대는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같이 회사설립 자본금을 크게 낮춘 소규모보험업을 신설하고 이에 적합한 진입규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은 준비기간을 거쳐 3단계로 추진을 검토함(〈표 5〉 참조).

13) 동경해상, 아오이보험, 富士보험은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14) 현재 「보험업법」상에서 공제관련조항은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공제업과 보험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제업자에게 기초서류 해당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보험업법」 제193조).

- 1단계는 근거법이 없이 불특정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공제에 대해 적용함.
- 2단계에서는 근거법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공제와 특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되 기금을 각출하지 않는 공제에 대해 적용함.
- 3단계로 근거법이 있지만 특정 계약자와 기금을 각출하는 공제(상호회사)에 대해 적용함.

〈표 5〉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단계(예시)

계약자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보험 계약자	불특정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공제	소규모보험업 (근거법없는 공제)	소규모보험업 (근거법있는공제)	
	특정	공제	공제	(기금불각출공제)	소규모보험업 (계약자특정공제)
				공제	(기금각출공제)
					상호회사

- 공제가 「보험업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업에 대한 일관된 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보험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제기관들이 영위하는 특수한 리스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업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됨. KIRI



FY2011¹⁾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5.5%로 FY2010의 81.1%에서 약 5.6%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FY2011의 손해율이 전년도보다 상당 수준 개선되었지만 예정손해율(약 70% 수준으로 가정)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자기차량 손해 담보의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등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사고발생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즉, 제도개선으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발생률은 줄었지만 고급자동차의 증가(또는 평균차량가액의 증가)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진 복합적인 효과로 손해율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효과가 향후에도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손해율 수준(75.5%)이 예정손해율 수준 보다 아직 높고, 손해율이 다소 개선되면 자동차보험요율을 인하하라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요율을 내려왔던 과거의 경험 등을 감안할 때(실제로 2012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됨), 2013년 이후에는 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함.

첫째, 손해보험회사는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대비하여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이 필요할 것임. 둘째, 2010년 12월 추진된 여러 제도개선 중에서 “비례공제 자기부담금제도” 이외에 자동차보험 수가 일원화 및 보험사기 방지 등과 같은 기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부합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창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범위를 책임보험으로 한정하고 요율결정 체계를 책임과 임의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2011년 4월~2012년 1월 자료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최근자료이므로, 동 통계기간 자료를 FY2011자료로 간주하여 분석함.

1. 검토배경



-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가진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므로,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논란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실시된 ‘2006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및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 대표적임.

-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손해율 악화 현상의 반복과 같은 자동차보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이후에 제안된 여러 방안 중에서 어떠한 제도개선안이 손해율 안정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손해율 악화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와 같은 자동차보험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부적(담보별)으로 분석하여 2010년 12월에 제안된 제도 개선안들이 손해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론하고,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운영방안,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은 사고빈도, 사고심도 및 대당손해액이며 이를 담보별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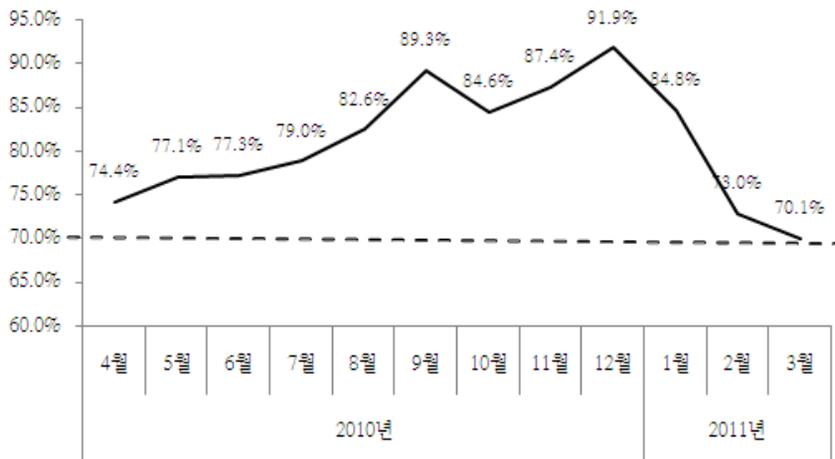
2.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 FY2010에는 연중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

-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FY2010 월별 손해율이 2010년 하반기까지 예정손해율²⁾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였음.
 - 4월 74.4% 수준에서 매월 상승하여 12월에는 91.9%에 이름.
- 이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여론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쉽지 않았고,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³⁾을 통해 보험료 인상 없이 손해율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됨.

<그림 1> FY2010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 추이



주: 손해율은 당월 손해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FY2010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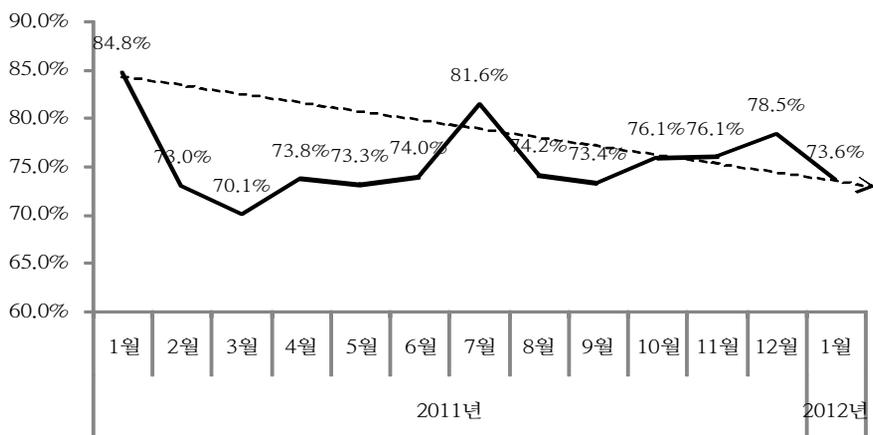
2)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를 근거로 약 70%로 가정함.

3) 2010년 하반기에 진행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보험개발원 주최)가 개최되었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도개선 안이 2011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됨.

■ 2010년 12월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FY2010에 81.1%였던 손해율이 FY2011에 75.5%로 5.6%p 감소하는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빠른 속도로 개선된 점 등을 볼 때, 동 제도개선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됨.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2월 이후 2010년 하반기에 90%에 육박하던 월별 손해율이 70% 중반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 1월까지 70% 중반 수준을 유지(〈그림 2〉 참조)함.

〈그림 2〉 2011년 이후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 추이



● 손해율 변화 흐름을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FY2009 75.9% 수준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FY2010에 81.1%로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2010년 12월 제도개선 이후 75.5% 수준으로 안정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0년 12월 제도개선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됨.

〈표 1〉 연도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FY2009	FY2010	FY2011
손해율	75.9%	81.1%	75.5%

주: FY2011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년호.

3. FY2011 손해율 개선 원인 분석



가. 개괄적 원인 분석

■ FY2011의 손해율 개선 효과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사고빈도, 사고심도 및 대당보험료의 변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사고발생률 감소가 손해율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손해율 감소에 사고빈도는 약 9.2%p, 대당보험료 증가는 약 6.6%p의 영향을 준 반면에 사고심도는 손해율 상승에 7.9%p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 점을 볼 때 사고심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제도개선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감소, 그리고 대당경과보험료 증가로 손해율이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됨.⁴⁾

〈표 2〉 손해율에 영향을 준 요인(효과)

(단위: 천 원)

구분	사고빈도	사고심도	대당경과보험료
FY2010	28.3%	1,725	592
FY2011	25.7%	1,861	631
효과	-9.2%p	7.9%p	6.6%p

주: 1) 효과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동효과)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임.

2) 분석 방법은 서영길,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조변화 분석모형”에서 제안한 다요인 분석방법을 참조하였음.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년호.

나. 세부적(담보별) 원인 분석⁵⁾

■ 개인용자동차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담보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영향을 준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의 도입으로 소손해 사고건수(또는 차량담소 사고건수)가 크게 감소한 점 및 대물배상 물적담보 할증기준 확대에 따른 물적담보 기준별 적정보험료 부과가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4) 본 분석은 개괄적, 총괄적 분석이므로 세 가지 요인들이 실제 손해율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보별(세부적)로 이들 세 가지요인의 변화 방향을 분석해보아야 함.

5) 개인용자동차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의 67.7%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보험종목이므로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분석결과가 전체자동차보험의 현상을 대표하여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본 분석에서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음.

- 2010년 12월 여러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 제도의 영향을 받은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손해율 개선이 FY2011 전체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사고발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데 반해 동 담보의 보험료는 증가함.
- 대물담보는 사고심도(건당 손해액) 증가에 비례하여 건당 보험료가 증가되는 상쇄효과가 있었지만 물적담보 할증기준 확대에 따른 손해율 악화(적정 보험료 부과 실패)문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담보별 사고빈도 감소효과를 보면, 자기차량 손해담보(차량)의 사고빈도 감소효과가 각각 -18.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2월 제도개선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자기차량손해담보 사고발생률, 특히 소손해사고를 포함한 전체 자기차량손해담보 발생건수(발생률)⁶⁾를 크게 감소시켜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사고빈도의 영향

구분	FY2010(A)	FY2011(B)	효과(C=B÷A-1)
대 인 I	6.1%	5.9%	-3.4%
대 인 II	1.5%	1.5%	1.6%
대 물	14.5%	14.2%	-2.1%
자 손	0.6%	0.6%	-1.4%
차 량	26.3%	21.5%	-18.1%
무 보 험	0.1%	0.1%	3.9%
증 권 별	28.2%	25.6%	-9.1%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년호.

■ 담보별 사고심도의 효과를 보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신체사고담보 및 무보험차상해의 사고심도가 전년 대비 각각 7.3%, 9.0%, 12.9%, 12.9%씩 크게 증가하여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인적 담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의 사고심도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 등 실질 소득 정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6) 강기훈·기승도(2011)에 따르면, 분손사고의 손해액 탄력도가 전손사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분손사고건수 감소효과는 소손해사고의 감소효과를 의미하고,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효과의 주요 요인이 됨.
 - 분손 사고율 감소효과: -17.8%(= 20.3%/24.7%-1), 전손 사고율 감소효과: -10.3%(=0.35%/0.39%-1).

- 인적사고인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사고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두 담보의 규모가 작고 사고심도의 증감효과(방향)가 연도별로 변화가 심해, 동 담보의 심도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물적담보(대물 및 자차)의 사고심도가 증가한 것은 외제차 등 고가자동차 증가(차량가액의 지속적 증가) 등 보험금 원가상승과 대물배상의 물적담보 할증기준의 확대에 따른 손해액 증가가 원인임.
- 사고심도 부분을 사고빈도(사고발생률)와 연계하여 해석하면, 차량담보에서는 사고심도 증가 효과가 사고발생률 감소효과 보다 더 적지만, 대물배상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차량담보는 손해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대물배상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4〉 사고심도의 영향

(단위: 천 원)

	FY2010(A)	FY2011(B)	효과(C=B÷A-1)
대 인 I	2,126	2,123	-0.1%
대 인 II	3,316	3,248	-2.1%
대 물	936	1,004	7.3%
자 손	2,609	2,947	12.9%
차 량	954	1,041	9.0%
무 보 험	4,780	5,399	12.9%
증 권 별	1,725	1,861	7.9%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년호.

■ 담보별 대당보험료의 효과를 보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담보 등 물적담보의 보험료는 각각 11.5%, 12.9% 상승하였으나, 대인배상 등 인적담보는 감소 또는 정체된 것으로 분석됨.

- 담보별 대당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은 대물배상의 물적담보 할증기준의 다양화, 고가자동차의 증가와 같은 물적담보의 대당 보험료 상승이 원인이며, 2010년 하반기 온라인사 등 일부사가 보험료를 소폭 인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보험료가 차량가액에 연동되므로 차량가액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당보험료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사고발생률 감소와 더불어 대당보험료가 상승한 것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손해를 개선이 전체 손해를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임.

〈표 5〉 대당보험료의 영향

(단위: 천 원)

	FY2010(A)	FY2011(B)	효과(C=B÷A-1)
대 인 I	171	166	-2.8%
대 인 II	61	61	0.1%
대 물	157	175	11.5%
자 손	23	24	6.2%
차 량	279	315	12.9%
무 보 험	7	7	-6.6%
증 권 별	592	631	6.5%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년호.

4. 시사점



- 2010년 1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 손해율 수준 75.5%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진되지 못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통한 보험료 인상 압력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수가 일원화, 자동차보험사기 감소 방안과 같은 후속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12월 제도개선 중에서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 등 일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적정 손해율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손해율 악화(2013년 이후로 예상)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는 수익성 위주 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보험회사들의 보험료인하 경쟁⁷⁾ 등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다시 악화될 개연성도 존재함.

7) 2000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및 진입장벽 완화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에는 가격인하경쟁을 하려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직관회사와 자동차보험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반응이 결합되어 자동차보험 시장에는 가격 인하압력이 상존함.

- 따라서 FY2012 중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FY2013 이후 손해율 악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격논쟁이 재연될 수 있음.
 - 손해율이 예정손해율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가격인하 경쟁을 지양하는 등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보다는 손해율을 관리하는 경영전략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FY2011의 손해율이 이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정손해율(약 70%로 추정)을 크게 상회하는 75.5% 수준은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기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지 않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창의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준약관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이 깊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관련이 있는 대인배상Ⅱ로 한정하고, 나머지 담보는 표준약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요율 결정이 일원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요율결정체계를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경제 환경 변화가 손해율에 영향을 줄 경우 이를 탄력적으로 보험요율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제도 이외에 유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유가 급등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로 사고발생률이 개선될 수 있음. Kiri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황진태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들어 생명보험업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그간 손해보험을 비롯한 은행 및 증권업의 온라인상 거래는 활성화되었으나, 생명보험은 소극적인 입장이었음.

미국에서는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이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으며, HSBC, American National Life 등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8년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인 SBI AXA(현 Nextia Life)와 Lifenet이 설립되었으며, 판매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들 회사들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과 저소득층을 주 고객층으로 하여 정기 및 의료보험 등 표준화된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온라인 생명보험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경우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생명보험상품에 대해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온라인 생명보험은 비대면채널에 해당되어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완전 판매 문제가 상존할 수 있고, 보험료 견적, 건강검진, 청약, 계약체결 등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한편, 표준화된 상품 위주의 공급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판매채널과의 마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온라인 생명보험 사업모형을 설계하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중요함.

감독당국의 경우 보험료 인하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보험회사 간 과도한 가격경쟁이 야기되고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이 중요함.

1. 검토배경



■ 그간 온라인(또는 인터넷) 판매채널에 소극적이었던 생명보험회사들이 최근 들어 저가형 생명보험상품 제공을 목적으로 동 채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판매는 단순히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넘어 온라인상에서 보험료 견적, 청약, 보험계약 적부심사, 계약체결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임.
-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활동은 존재하였으나, 동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는 미미함.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은행 및 증권도 인터넷 뱅킹, 인터넷 주식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음.
 -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상품인데다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생명보험산업도 사업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 활용 확대 추세가 두드러짐.

- 미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이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음.
 - HSBC, American National Life 등은 현재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2008년에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 2개사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동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는 SBI AXA(현 Nextia Life)와 Lifenet임.

■ 이에 보고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온라인 생명보험업 현황을 살펴보고, 생명보험의 온라인 채널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온라인 생명보험의 순기능과 함께 발생 가능한 문제점, 그리고 감독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함.

2. 미국과 일본의 온라인 판매채널 현황



-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도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짐.
 - 인터넷을 비롯한 IT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단순 상거래로부터 첨단 금융산업까지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함.
 -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최초 접속은 1982년 경임.
 - 인터넷 상거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축소시켜 상품가격을 낮춤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금융산업의 온라인 거래 경우에도 고객의 거래 편의성과 판매비용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음.

가. 미국

- 미국의 온라인 생명보험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음.
 - 2006년 전체 생보 상품 중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이 7%에 그쳤으나, 2009년 비중은 평균 15%대, 2011년에는 10%를 기록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채널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6	2009				2011
	개인보험	전통생명	장애	장기간병	연금	개인보험
설계사	52	41	28	37	63	55
우편/전화	19	22	14	18	14	25
직장	18	21	43	26	9	10
온라인	7	15	14	17	14	10
기타	4	1	1	2	0	0

자료: LIMRA, Trends in Consumer Internet Use for Insurance 2009, LIMRA(2012), "2011 Trends in the United States", LIMRA's Factbook, 재인용; LIMRA(2012), "To Buy or Not to Buy Life Insurance: Buyer and Nonbuyer Differences".

■ 2011년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 10% 중 온라인상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을 구입한 비중이 4%를 차지함.

● 반면, 온라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입한 후 프린트나 메일, 전화,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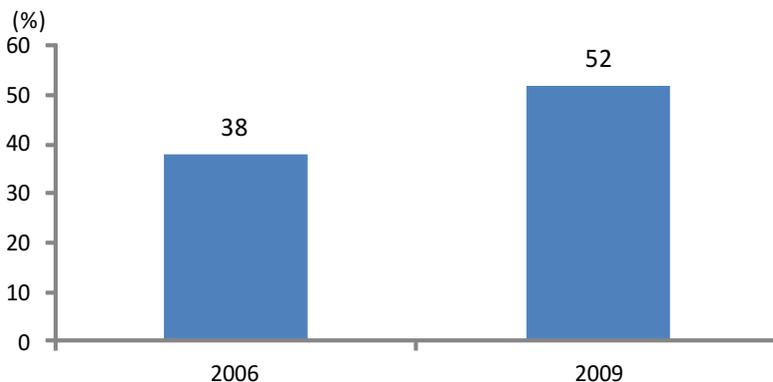
〈표 2〉 미국 2011년 인터넷 생명보험 가입 및 계약체결 관련 비중

구분	2011
온라인상에서 모든 절차진행	4
온라인상 보험 구입 후 프린트나 메일을 통해 계약	1
온라인상 보험 구입 후 전화로 계약	2
온라인상 보험 구입 후 설계사와 계약	1
잘 기억나지 않음	2

자료: LIMRA(2012), To Buy or Not to Buy Life Insurance: Buyer and Nonbuyer Differences.

■ 개인보험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인터넷 활용도 2006년 38%수준에서 2009년 52%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1〉 보험상품 정보수집 관련 인터넷 활용 비중



주: 1) 과거 2년 이내에 개인보험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비중임.

2) 2006년 응답자 수는 1,287명, 2009년 응답자 수는 2,000명임.

자료: LIMRA, Trends in Consumer Internet Use for Insurance 2009, LIMRA(2012), "2011 Trends in the United States", LIMRA's Factbook 재인용.

나. 일본

■ 일본의 경우 2008년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SBI AXA(현 Nextia Life)와 Lifenet이 설립됨.¹⁾

- SBI AXA는 SBI Holdings와 AXA Japan Holdings가 제휴하여 2008년 4월에 설립됨.
- Lifenet은 2008년 6월 독자적으로 설립된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임.
- 이밖에도 ORIX Life도 2011년 5월 온라인 판매채널시장에 참가함.

■ 일본 생명보험의 가입채널 비중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머물러 있음.

- 전반적으로 설계사를 통한 생명보험 가입 비중이 우세하며, 인터넷을 통한 가입 비중은 미진한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0.8%에 머물렀던 인터넷 가입비중이 2006년 1.8%에 이른 적도 있음.
- 또한, Japan Institute of Life Insurance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비중이 2.9%에 이른다고 발표함.²⁾
 - 아울러 향후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 시 선호할 채널로 인터넷이 7.9%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세 이하 9.9%, 30~34세 15.8%, 35~39세 10.3%로 나타남.

〈표 3〉 일본 생명보험 가입채널별 비중

(단위: %, 명)

구분	2007	2010
설계사	56.7	51.7
통신판매	5.7	5.2
- 인터넷	(1.0)	(1.0)
농협, 우체국	11.2	16.8
방카슈랑스	2.8	2.7
대리점	3.8	6.1
직장	6.3	7.4
기타	9.9	6.5
잘 모름	3.6	3.5
응답자 수	3,309	3,290

자료: 생명보험문화센터(2012),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1) 정승희·최현우(2009), 「일본 온라인 전용 생보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하나 금융정보』.

2) Lifenet Insurance(2009) 참조(Japan Institute of Life Insurance에 의해 작성됨).

■ SBI AXA(이하 'Nextia Life'라 함)의 경우 표준화된 상품을 통해 보험료 견적, 가입신청, 청약,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절차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실적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판매에 따른 인건비 절감, 종이서류 사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함.
- Nextia Life의 취급 상품으로는 종신, 의료, 정기, 소득보상보험이며, 이 상품들은 비교적 온라인 상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 있음.³⁾
 - 건강검진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고지만으로 보험가입 신청이 가능함.
 - 보험금 청구방식은 고객센터에 전화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보험금 지급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함.
- FY2009~FY2010 연간 수입보험료는 각각 69억 7,200만 원, 132억 3,000만 원에 그쳤으나, FY2011 3/4분기 누적 수입보험료는 145억 400만 원을 기록함.

〈표 4〉 FY2011 3/4분기 실적

구분	FY2009	FY2010	FY2011 3/4
수입보험료(백만 원)	6,972	13,230	14,504
신계약(건)	12,977	13,831	12,108
신계약액(백만 원)	1,892,058	1,592,822	1,092,756
보유계약(건)	16,268	27,156	36,619
보유계약액(백만 원)	2,330,958	3,571,820	4,379,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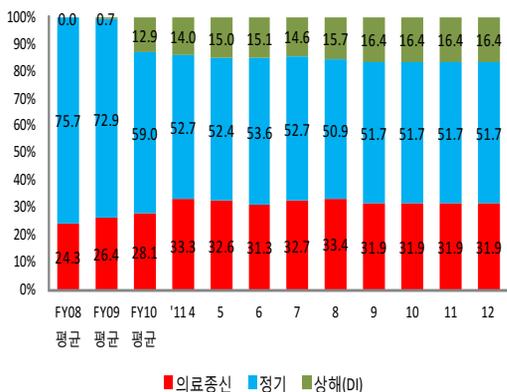
주: 1) FY2011 3/4분기는 누적치임.
 2) 환율 100엔당 1,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Nextia Life 홈페이지.

■ Lifenet도 표준화된 정기보험, 의료종신, 상해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월 기준 보험료 수입도 증가 추이를 나타냄.

- 설립연도인 FY2008에는 정기 및 의료보험을 취급하였으나, FY2009에 상해보험을 추가함.
- 상품포트폴리오의 경우 정기보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의료보험, 상해보험 순임.
- FY2011 월평균 수입보험료가 40억 900만 원으로 FY2010에 비해 95.6% 증가함.⁴⁾
 - FY2008~FY2010 월평균 수입보험료가 각각 1억 200만 원, 6억 9,000만 원, 20억 4,900만 원을 기록함.

3) 자세한 상품내용은 <http://www.nextialife.co.jp>을 참조함.
 4) 환율 100엔당 1,400원으로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그림 2) 상품포트폴리오 및 월 기준 수입보험료 추이



주: 환율 100엔당 1,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보험회사 내부자료 재구성.

3. 미국과 일본의 비대면 판매채널 감독규제



가. 미국⁵⁾

■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전화영업을 통한 비대면 채널 관련 규제인 불초청 규정(Do-Not-Call Rule, 2003년 제정)이 있음.⁶⁾

- 동 법 시행으로 연방통상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를 설립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동 규제를 통해 소비자가 영업 관련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때 FTC의 동 Registry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됨.

5) 안철경·변혜원·서성민(20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을 참조함.

6) 엄밀한 의미에서 Do-Not-Call Rule은 전화영업(TM) 채널을 이용한 아웃바운드 영업에 대한 규제이기는 하나, 일부 온라인 보험회사의 경우 전화영업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함.

■ Do-Not-Call Rule 시행을 위하여 Telemarketing and Sales Rule(TSR)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 제정으로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전화영업도 규제를 받음.

- 동 법에 따라 보험회사도 전화영업 시 이러한 규제에 기초한 내부지침을 설정해 두어야 함.
- 아울러 통신소비자보호법(TCPA: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제정으로 보험회사들의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 대한 무제한적 영업을 금지됨.

■ 이들 법률의 시행으로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보험회사는 FTC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자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있음.

나. 일본

■ 2006년 4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상품 심사가 간소화되고 사업비가 자유화되면서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생명보험회사가 출현하는 계기가 됨(정승희·최현우 2009).

■ 일본 보험업법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영업행위규제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음.⁷⁾

- 다만, 보험의 특수성에 따라 불초청 및 재권유 금지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로 두고 있음.⁸⁾
-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판매 관련 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구분, 거래형태의 사전명시 의무, 광고 등 표시 의무, 계약체결 전 서면교부 의무, 계약체결 시 증권 교부, 손실보전 금지, 적합성 원칙 적용, 허위설명 금지, 단정적 판단 제공 등 금지, 서면에 의한 계약 해지

■ 금융상품거래법상 영업행위규제 관련 『금융상품거래업자를 위한 종합감독지침』⁹⁾에서 인터넷 거래에 대한 별도의 감독지침도 있음.

- 온라인 거래상 감독지침의 경우 대부분 전술한 영업행위규제 관련 대면채널을 이용한 일반적 거래의 감독내용을 준용함.

7) 이상우(2008),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투자형보험과 비투자형보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조사자료, 보험연구원.

8) 일본 『금융상품거래법』과 『보험업법』을 참조.

9) 일본 금융청(2010. 6),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Operators, etc.*.

-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은 동 감독지침 III-2-3-4 (1) (iv)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고객이 컴퓨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고 클릭하였을 경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III-2-3-4 Control Environment for Providing Explanations to Customers

(1) Major Supervisory Viewpoints Control Environment for Providing Explanations

(iv) Method of Internet-Based Explanations

Regarding “the explanations provided in a method and to an extent necessary for enabling the customer to understand” specified under Article 117 (1) (i) of the FIB Cabinet Office Ordinance. In the case of a financial instruments transaction conducted via the Internet, a Financial Instruments Business Operator shall be deemed to have provided “the explanations provided in a method and to an extent necessary for enabling the customer to understand” as specified under Article 117 (1) (i) of the FIB Cabinet Office Ordinance, when the customer has read explanations shown on the computer display and indicated his/her understanding with a click of the button.

4. 결론 및 시사점



-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한 생명보험사업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고 인터넷에 능숙한 고객층에 적합한 저가의 생명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모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처럼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은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과 인터넷 청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일본처럼 우리나라 온라인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됨(아래 <표 5> 참조).
 - 온라인 생명보험 사업모형은 주로 저렴한 가격과 가입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인바운드 영업이 될 것으로 보임.¹⁰⁾
 - 일부 국내 소형 외국사들도 온라인 사업모형을 통해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10) 인바운드 영업은 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직접 전화, 인터넷, 점포 등을 통해 상품 공급자를 찾도록 하는 형태인 반면, 아웃바운드 영업은 설계사나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영업하는 형태임.

- 한편, 상품구조가 복잡할 경우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소비자라도 보험상품 구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표준화된 상품이 주로 취급될 것으로 보임.
 - 해외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표준화가 용이한 정기보험, 의료보험 등이 기본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각 회사의 상품설계 능력에 따라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성보험과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한 일부 보장성보험(예: 어린이 보험)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물론, 고객응대, 유지관리, 문제해결 지원은 콜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표 5〉 정기보험 보험료 비교

(단위: 엔)

순위	생명보험회사	월 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1	SBI AXA(현 Nextia)	3,450	2,669	781
2	Lifenet	3,484	2,669	815
3	Sony	4,110	2,669	1,441
4	Daido	4,380	2,669	1,711
5	Sompo Japan	4,650	2,669	1,981
10	Aioi	5,640	2,669	2,971
20	Meiji Yasda	6,990	2,669	4,321
24	Sumimoto	7,410	2,669	4,741
25	Asahi Mutual	7,410	2,669	4,741

주: 2009년 3월 14일 30세 남자 기준 10년 납 3,000만 엔 정기보험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The Diamond Weekly, 정승희·최현우(2009) 재인용.

■ 그러나 온라인 생명보험의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존하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보험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생명보험 사업모형을 설계하는 회사들은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신중한 고려가 중요함.

- 온라인 생명보험은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견적, 청약 및 계약체결, 온라인 결제 등이 진행되므로 기존 대면채널에서 강조되는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등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계약체결 및 온라인 결제 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상존함.
 - 과거 금융회사 전산망 해킹사태와 같이 온라인상 거래에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 표준화된 상품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광고비 지출로 실질적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은 브랜드나 이미지가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초기비용 지출 문제도 있을 수 있음.
 - 한편, 별도의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이 아니라 기존 생명보험회사가 자회사의 형태로 온라인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 채널과의 마찰 가능성도 상존함.
- 마지막으로 온라인 생명보험업이 활성화될 경우 보험회사들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도 존재함.
- 보험료 인하 효과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칫 과도한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이 중요함. Kiri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 은행업과 보험업을 겸영하는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인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 원인이 은행사업 부문의 부실보다 보험사업 부문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공적자금 지원 승인 근거 가운데 보험사업 부문의 자본 부족과 지주회사인 ING그룹의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은행사업 부문이 아닌 보험사업 부문 매각을 ING가 결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임.

ING그룹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표면적인 원인은 ING은행이 투자한 Alt-A RMBS(주거용모기지 담보 채권)의 부실이지만, 2008년 들어서면서 확대된 유가증권 평가손·상각과 부동산/PE 투자 손실로 인한 보험사업 부문의 악화가 ING그룹의 부실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보험사업 부문 부실이 ING그룹의 자본구조(이중 레버리지)와 자회사 간 거래를 통해 은행으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유럽위원회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ING그룹에게 이중 레버리지란 지주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Core Debt)한 후 이를 자회사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자본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은행, 보험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버퍼기능인 자본이 이중 레버리지로 취약해졌을 수 있음. 또한, 그룹 내 자회사들과의 서비스·자본 거래로 높아진 상호 의존성이 외부 충격을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ING그룹의 사례는 은행·보험 겸영 사업모형의 장점인 리스크 분산효과에 따른 자본 절감 효과와 자회사 간 시너지·상호 의존성에서 나타나는 자본 효율성의 경우 호경기일 때는 수익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와 같은 불경기일 때에는 역으로 외부 충격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함. 지주회사가 외부차입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자회사에 투자하는 자본구조가 시장환경 급변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는 국내 금융그룹의 자본구조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아직 국내 금융감독체계에서는 리스크 분산효과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중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지주회사의 자본조달 유연성이 악화될 수 있고 경영환경 급변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이중 레버리지 관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ING그룹 사례는 사업모형의 단순화(Simplicit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Reliability)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 국내 금융그룹들이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할 때 신중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 검토배경



- ING그룹¹⁾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원인이 보험사업 부문의 부실일 수 있다는 이슈가 제기됨.
 - 유럽위원회(EC)가 공적자금 지원 이유로 보험사업 부문의 자본부족이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또한, ING그룹은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함.

- 공적자금 지원의 표면적인 원인은 2008년 3/4분기부터 발생한 은행 부문의 손실로 알려져 있으나 2008년 들어 보험사업 부문도 손실 규모가 작지 않았음.²⁾
 - 2008년 3/4분기 저축은행인 ING Direct가 4천 7백만 유로의 손실을, 그리고 4/4분기 14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초부터 보험사업 부문의 경우에도 부동산 및 유가증권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음.
 - 2008년 들어 ING그룹의 순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전년 동기대비 기준, 1분기 19%감소, 2분기 25%감소) 3/4분기에 손실로 돌아섰는데,³⁾ 이 당시 보험사업 부문의 손실 규모가 5억 7천만 유로를 기록하여 은행 부문의 2억 유로를 크게 상회하였음.

- 보험사업 부문의 손실이 그룹 자본구조와 자회사 간 거래(intragroup transaction)경로를 통해 은행 부문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ING그룹의 이중 레버리지(double leverage) 자본구조가 자본을 과소 계상하여 위험을 확대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이중레버리지란 지주회사가 외부에서 핵심부채(Core Debt)를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중간 지주회회사인 ING Bank와 ING Insurance에 지분 투자하는 구조를 의미함.
 - 핵심부채란 지주회사가 차입한 자금 가운데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 투자한 금액을 차감한 부채를 말함.

1) 보험업과 은행업을 겸영하는 네덜란드 금융그룹으로 2008년 말 총자산은 1.3조 유로 수준이며 총자산 중 은행업의 비중이 75%에 달함.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2,500여 개 자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임.

2) Geneva Association, Systemic Risk in Insurance—An analysis of 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2010. 3.

3) KiRi Weekly(2008. 10. 27). 「ING 100억 유로 구제금융: 미래손실을 예방하는 버퍼?」.

- ING그룹의 은행과 보험사업 간에는 상호지급보증, 대출 등 거래가 활발하였고 ING Insurance는 그룹 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⁴⁾

■ 이하에서는 보험사업의 손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ING그룹의 은행-보험사업 분리

가. ING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배경

■ 2008년 10월 18일 ING그룹의 주가가 27% 폭락하며 ING그룹의 붕괴설이 대두됨.

- 2008년 3/4분기 자산 부실화로 16억 유로 상각, 5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하였고, ING그룹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
- 자산 부실화와 상각 원인은 유가증권 투자 손실 및 평가손, 부동산/PE 투자 손실 등임.

〈표 1〉 ING그룹의 2008년 4/4분기 사업부문별 실적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8년 4/4분기	2008년 3/4분기	2008년 3/4분기 ~ 4/4분 증가율	2007년 4/4분기
보험부문	-2,536	-574	-	1,805
유럽	-186	101	-284.2	357
아메리카	-992	-214	363.6	439
아시아 태평양	-209	19	-	112
기업보험	-1,149	-453	-153.6	897
은행부문	-1,841	-216	-752.3	1,151
도매은행	-366	40	-	512
소매은행	75	420	-82.1	522
ING Direct	-1,411	-47	-	73
기업금융	-139	-629	77.9	45
합계(세전)	-4,377	-763	-430.1	2,644
합계(세후)	-3,101	-585	-676.4	2,482

자료: ING Group, 2008년 4/4분기.

4) 「ING Insurance Annual Report 2008」; 「ING Bank Annual Report 2008」.

- 2008년 하반기 보험사업의 손실이 은행의 손실보다 더 컸었고, 특히 미국 저축은행(ING Direct 14억 유로)·미국 보험사업(9억 9천 2백만 유로)에서의 손실 규모가 컸음.
 -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미국 주식채권시장 불안으로 미국 보험사업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변액연금 사업이 악화되었음.
 - 은행 부문에서는 ING Direct의 2008.4/4분기 손실이 14억 유로로 ING 은행 부문 손실 18억 유로의 대부분을 차지함.
 - 미국 ING Direct는 저축은행(US Thrift Institutions)으로 자산 중 55%를 부동산 담보대출부채권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따라야했기 때문에 Alt-A 주거용모기지담보채권(이하 ‘Alt-A RMBS’이라 함)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으며 약 210억 유로를 투자하였음.
 - Alt-A RMBS에는 은행이 90% 이상을 투자하였음.
 - ING그룹 자산 중 75%를 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부문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음.

- 보유채권 및 주식투자 손실에 따른 상각, 자본조정으로 160억 유로의 자본이 감소하여 ING그룹의 자본은 2008년 초 372억 유로에서 2008년 말 173억 유로로 감소함.

나. 공적자금 투입과 보험사업 매각

- 네덜란드 정부와 EC는 100억 유로의 공적자금⁵⁾ 투입과 부실자산보호조치(Impaired Asset Protection Measure)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은행 부문 92.5억 유로(위험가중자산의 2.7%), 보험부문 47.5억 유로(EU 요구자본의 절반수준)임.
 - 부실자산보호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ING 보유의 미국 Alt-A RMBS 자산의 80%를 인수하여 미국 Alt-A RMBS 자산가치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조치임.
 - 100억 유로의 공적자금은 ING가 네덜란드 정부에 의결권 없는 Core-Tier 1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지원되었으며, 6개월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 계획(Credible Plan)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 지원이었음.⁶⁾

5) ING가 네덜란드 정부에 의결권 없는 Core-Tier 1주를 발행함.

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9. 11. 18), Commission Decision of On the State Aid.

■ EC는 공적자금 지원을 승인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로 보험사업 부문의 자본 부족을 명시하였는데, 보험사업 부문의 자본 부족이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임.

- 보험사업 부문의 자본 부족 이외에 EC가 명시한 공적자금지원 승인 이유는 첫째, Alt-A RMBS 자산의 가치하락, 둘째, 부동산투자 관련 추가 상각(write-down)우려, 셋째, ING그룹의 부채비율 악화(2007년 9.5%에서 2008년 말 13.5%로 상승) 등임.⁷⁾
- 2008년 결산 결과 보험사업 부문은 11.8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은행 부문은 4.5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문에 더 많은 지원(부실자산보호조치 포함 92.5억 유로)을 하였음.⁸⁾

■ ING그룹이 EC와 합의한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은행과 보험업의 분리, 그리고 이중 레버리지 해소(핵심부채 상환)이며 이를 위해 ING그룹은 보험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

- 지주회사가 외부에서 조달한 부채를 자회사 지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자본이 이중 계상(double counting)되며 필요 자본을 과대 계상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EC는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부문의 어려움이 악화되었던 원인을 이중 레버리지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ING그룹은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사업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EC의 제안을 수용, 구조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 ING그룹의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자산규모는 '08. 9월 1.37조 유로에서 45% 감소한 0.76조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ING그룹은 보험사업 부문 매각으로 핵심부채를 해소하고 공적자금 일부를 상환할 계획임.

- 보험사업의 가치는 140~150억 유로로 평가되어 ING그룹이 보유한 핵심부채 71억 유로, 보험사업이 보유한 핵심부채 23억 유로를 해소하고 은행업만 수행할 계획
- 보험사업과 병행되는 자산운용사업도 매각할 계획

7) Point 32. The Commission noted in its decision approving the rescue aid that the reasons for the loss of market confidence in ING, which triggered the State intervention, was due to perceived toxicity of the Alt-A portfolio, market concerns about further write downs, the capital needs of ING Insurance and the deteriorating debt to equity ratio of ING Group. EC(2009. 11. 18).

8) 지주회사로서 ING그룹은 채권발행으로 자본을 조달, 은행부문(29.5억 유로)과 보험부문(26.5억 유로)에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은행부문이 조달한 자금을 보험부문에서 활용하기도 하였음. 구제금융 100억 유로 중 은행부문 50억 유로, 보험부문 40억 유로, 지주회사 10억 유로를 사용하기로 하였음.

- ING그룹의 구조조정은 유럽지역에서 은행과 보험업을 겸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사업·자본 구조조정 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Fortis(베네룩스 지역)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을 매각하고 현재는 보험업만 유지, 독일의 Allianz는 Dresdner 은행 매입 계획을 철회하였음.
- 미국의 MetLife는 자회사인 MetLife Bank를 GE Capital에 매각할 계획임.

3. 금융 겸업화의 분산효과가 위험확대로 전환



- 금융겸업화의 진전도가 높은 복합금융그룹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는 첫째, 리스크 분산효과를 감안한 필요 위험(경제)자본량 절감과 둘째, 자회사 간 거래를 통한 위험의 전이 효과임(Intra-group spillover effect).
- 특히, 복합금융그룹에서 나타나는 이중 레버리지 이슈는 2000년 초부터 제기되어왔음.⁹⁾

가. 리스크 분산효과와 금융그룹할인 효과 간의 상충관계

- 겸업화에 따른 리스크 분산효과는 필요 위험(경제)자본량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룹단 위의 사업 복잡화에 따른 금융그룹 할인효과(Conglomerate Discount Effect)를 초래할 수 있어, 금융 겸업화에는 두 효과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
- 자본효율성 측면에서는 은행과 보험업의 리스크 분산효과로 그룹 전체의 필요 위험자본량이 분산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개별 자회의 합계 위험보다 적을 수 있어 높은 자본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음.¹⁰⁾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룹 사업단위의 복잡성(complexity)과 불투명성을 갖는 금융겸업화는 오히려 금융그룹의 가치를 할인시키는 효과(금융그룹 할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9) BIS Joint Forum(2001).

10) Slijkerman et al.(2006), "Risk Diversification by European Financial Conglomerate",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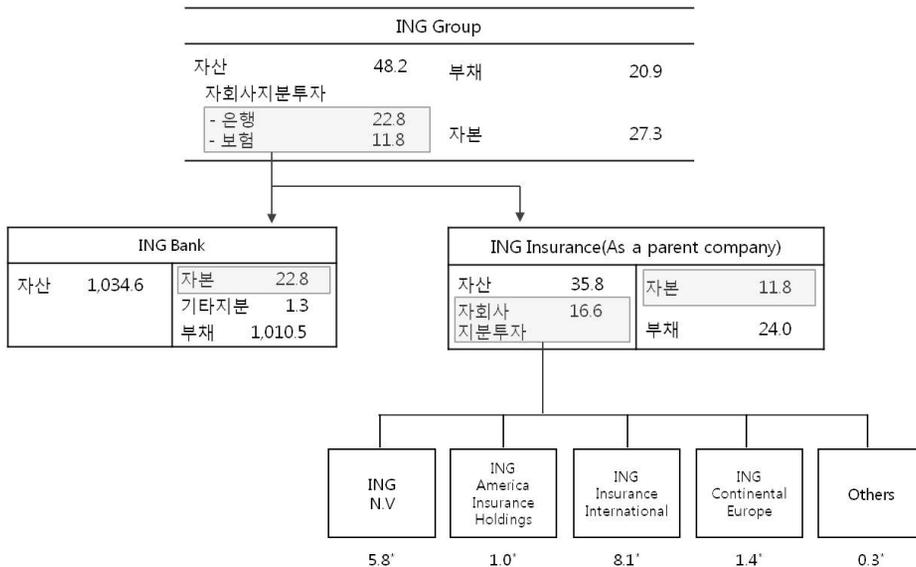
- 그룹의 사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어렵고, 경영측면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복합금융그룹의 기업가치가 단순한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의 가치에 비해 낮을 수 있음.¹¹⁾

■ ING Group은 겸업화의 장점(분산효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중 레버리지를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소 위험자본을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그림 1) 참조.

- 지주회사인 ING Group이 은행사업과 보험 사업을 지배하는 중간 지주회사들인 ING Bank와 ING Insurance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구조임.
 - ING그룹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은행과 보험업에 346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음.
- ING그룹은 이중 레버리지를 통해 경제적 위험자본의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2008년 말 현재 ING Group(지주회사)의 자본은 273억 유로이고 채무는 209억 유로이며 핵심부채(core debt) 72억 유로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¹²⁾
 - 중간지주회사인 ING Insurance는 산하 보험자회사에게 핵심부채 23억 유로를 공급¹³⁾

〈그림 1〉 2008년 말 ING그룹의 자본구조

(단위: 십억 유로)



주: * 각 회사별 자본임.

11) European Insurers-Consolidation Soup, 17 June, 2005.

12) ING Group, Annual Report 2008.

13) 핵심부채는 자회사 지분투자금액에서 자본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그림에서 제시된 경우는 $16.6 - 11.8 = 4.8$ 이나 ING Group은 연차보고서에서 23억 유로라고 명시하고 있음.

- ING그룹은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¹⁴⁾ 기준으로 겸업화의 분산효과를 54억 유로로 추산 하였음(최소 15%의 과소자본을 유지).
 - 특히 금리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은행과 보험업간 겸업화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ING 그룹은 금리위험 분산의 겸업화에 대한 기여도가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됨.¹⁵⁾
 - 결론적으로 은행과 보험업의 상호의존성을 활용, 과소자본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임.
- ING Bank와 ING Insurance는 중간지주회사로서 외부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핵심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는 확대될 수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ING Bank는 843억 유로의 채권을, ING Insurance는 170억 유로의 채무를 지고 있음.

나. 자회사 간 거래

-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회사 간 거래가 자회사 간 리스크를 전이시킬 수 있음.¹⁶⁾
- 상호지급보증, 자회사 간 거래, 상호간 대출 및 차입은 금융자회사 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회사의 손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될 수 있음.
- 다른 금융그룹과 유사하게 ING그룹의 은행과 보험사업 부문간에도 서비스 제공,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자회사 간 거래가 있었음.
- 보험사업 부문은 은행에 단기 예치를 하고 지주회사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하고 있음.
 - 보험사업 부문에서 은행 부문으로 이체(transfer)된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는 2007년 118억 유로, 2008년 44억 유로임.
 - 보험사업 부문은 은행 부문으로부터 15억 유로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ING Insurance는 기타 부채 171억 유로 중 68%인 117억 유로를 그룹 내 자회사로부터 차입함.

14) 경제 환경 악화 기간 중 기대하지 못했던 손실을 흡수하는데 요구되는 최소자본으로 그룹 내부모형에 의해 산출됨.

15) 은행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긴 자산을 갖고 있는 은행의 금리 위험 갭은 보험부채의 긴 듀레이션으로 상쇄 되는 효과가 있음.

16) Bernhard Mayr(2007), "Financial Contagion and intra-group spillover effects".

4. 시사점



-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분리 사례는 겸업화로 인한 혜택(범위의 경제와 리스크 분산효과)이 위기 시에는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함.
 - 겸업화는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 범위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사업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사업 부문 간의 겸업화는 겸업화의 위험이 개별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합보다 낮게 되므로 분산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그러나 겸업화 구조는 레버리지 확대, 사업부문 간 상호작용 증가로 사업구조가 복잡해 질 수 있고, 외부충격에 취약하여 위기 발생 시 겸업화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겸업화의 장점을 향유하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의 단순화(Simplicit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Reliability)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ING그룹의 구조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ack to Basic 전략이 확산되면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미국의 MetLife가 2000년에 인수했던 상업은행을 매각하려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겸업화 및 대형화 트렌드는 이러한 요인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120%를 초과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대형화·겸업화에 수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ING그룹의 이중 레버리지비율이 2008년 124%에 달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중 레버리지비율만으로 ING그룹 사례와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겸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확대가 겸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아직까지 국내 대형금융그룹의 겸업화 진전도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나 ING그룹 사례는 이중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겸업화·대형화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감독당국은 금융그룹 내부거래의 메커니즘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감독차원에서 자회사 자본 확충을 위한 지주회사의 외부차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 부문 계량평가지표 항목에 이중 레버리지와 부채비율을 포함하고 있음(이중 레버리지는 120% 미만이어야 1등급이고 부채비율은 30% 미만이어야 1등급).
 - 감독당국은 지주회사의 이중 레버리지 및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자회사와 자회사 간의 상호작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특성(차입거래, 지급보증, 유동성제공)과 자회사의 독립적 신용평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김대환 연구위원

요약

■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로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임.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병증과 중증입원으로 이어질수 있는 만성질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음.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 제한하는 주요 논리는 보험회사의 참여로 인해 질병관리서비스의 고급화가 초래되고 건강정보가 인수여부(underwriting)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보험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험회사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임.

차별화된 질병관리서비스의 제공은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와 선택권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노력은 보험회사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임.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pricing)은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또한, 건강정보의 활용은 그동안 인수하기 어려웠던 고위험자의 리스크 수준에 적합한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하여 인수범위가 확대되고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의 활용으로 보험접근성의 저하가 염려된다면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가입자 중 건강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정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에게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가입고객의 건강개선을 통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와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임. 특히,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정보가 가입여부 심사나 보험료 책정에 활용될 우려가 사라짐.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가입자에게 한정할 때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의 건전성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타 기관과 달리 고객의 건강을 유지·개선시켜 손해율이 충분히 감소된다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인도 발생하는 등 동질의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는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의료비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낮은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영유아 사망률도 낮아 비용 대비 높은 건강성과를 달성해 왔음.
 - 하지만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상태에 있음.
 - 급증하는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노인인구의 만성질환으로부터 야기되고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여 만성질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함.
 -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을 유지·개선시키도록 허용하여 의료비 감소를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보험회사 CIGNA의 경우 미국,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유지·개선시켜 손해율을 경감시키고 있음.
 -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개인의 건강상태정보를 보험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임.
 - 이는 보험업에 대한 오해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후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됨.

-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참여해야 하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아울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더라도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범위를 고려·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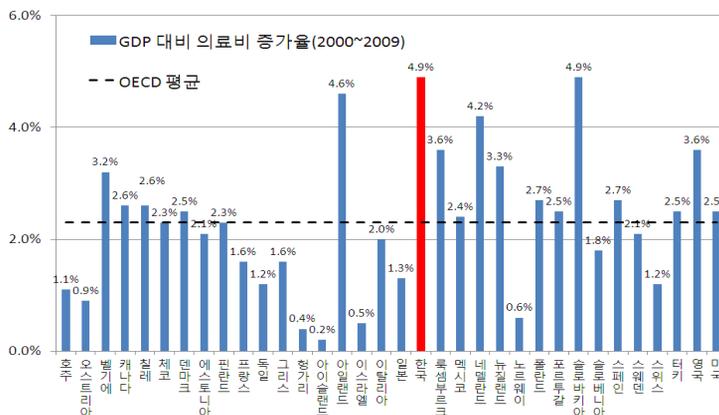
2.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동안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의료비용이 문제시 되고 있음.

-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성과는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5위로 평가됨(2006년 기준).¹⁾
 - 우리나라 기대수명(80.3세)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영유아사망률(3.5%)은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의료비 지출액 자체는 낮은 수준이나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은 4.9%로 세계 최고 수준임.

〈그림 1〉 주요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 추이



자료: OECD, "Health Data", 각 년도.

- 정책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²⁾은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도 64.0%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는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음.

1)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2006), 「A Provincial Benchmarking Report」.

2) 보장률은 급여의료비와 법정비급여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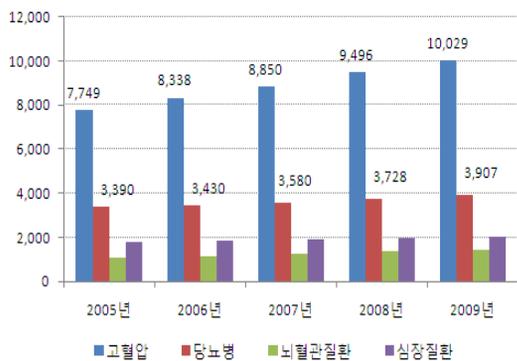
- 급증하는 의료비와 담보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가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전체 건강보험적용 인구 중 65세 노인진료비는 10.5%에 불과하지만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는 지속 증가하여 33.3%에 달함.³⁾
- 노인의료비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인 1인당 진료비 증가가 큰 원인임.
 - 과거 10년 동안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65세 미만의 경우 101.44%에 그쳤지만, 65~74세 127.81%, 75~84세, 198.79%, 85세 이상에서는 무려 427.0%에 달함.⁴⁾

■ 노인인구의 만성질환(Chronic Disease) 증가는 노인의료비, 나아가 국민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질병구조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혈압 유병률과 당뇨병 유병률⁵⁾이 지속 증가하여 현재 각각 30.3%, 9.6%(2009년 기준)에 달함.⁶⁾
- 특히 만성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만성질환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70~8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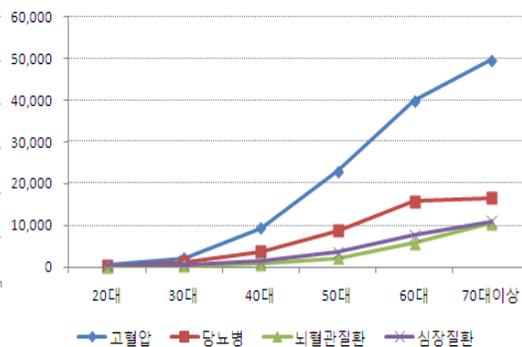
〈그림 2〉 만성질환 진료인원 추이

(단위: 명/10만 명당)



〈그림 3〉 연령대별 만성질환 진료인원

(단위: 명/10만 명당)



주: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료를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고혈압과 당뇨, 동네의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활용.

3) 2011년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 3),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

4)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 3),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

5) 신발생 및 구환자를 건강보험 적용자 수로 나눈 값임.

6) 고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분율을 의미하고, 당뇨병은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분율(30세 이상 기준).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수반하는 만성질환은 사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관리를 통해 유병률 자체를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함.

-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의료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병증과 중증입원으로 이어져 고가의 의료수요를 발생시킴.
- 다행히 만성질환은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
 - WHO(2005)⁷⁾도 ‘만성질환은 질병으로 발현되기 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며, 예방이 가능하지만 발현된 이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건강문제’로 정의함.
- 그러므로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의 사후적인 관리보다는 체계적인 사전적 예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보험회사의 참여 제한



가.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입법과정과 주요 내용

■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추진될 계획임.

- 2010년 5월 변용전 전의원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발의함.
- 2011년 4월 손숙미 전의원은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수정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발의함.
- 개정 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될 계획임.
 -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정이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⁸⁾

7) WHO(2005), 「Preventing chronic diseases a vital investment」.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2),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목적과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함.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대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개발·제공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정의함.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강측정의 실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함(제5조).
- 건강위험도 평가를 통해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및 각각의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함(제6조).
-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상담, 교육, 지도 및 지원,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정하고 이와 맞지 않는 서비스는 금지함(제7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9조).
- 의사가 만성질환자 및 질환군에 대한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간 유착을 통해 필요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함(제11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이용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확인 한 후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건강관리의뢰서가 없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음(제12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이용자의 정기적 건강측정 권장 의무, 서비스 관련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 서비스 내용·비용·시설·인력 현황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함(제13조).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일체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함(제1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인증할 수 있음(제17조).

나.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한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보험회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음.

- 2010년 5월에 발의된 초기 「건강관리서비스법」⁹⁾에서는 보험회사도 법에서 규정한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음.
- 하지만 2011년 4월에 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¹⁰⁾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

〈표 1〉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제한

2010년 5월 「건강관리서비스법」	2011년 5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p>제10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허가를 신청한 경우 3.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의료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제10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제한 등) ②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 상정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추가됨.¹¹⁾

- 보험회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논리는 보험회사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즉,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배제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이유임.
-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금지는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임.

9) 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811697」.

10) 변용전 외 10인 발의(손숙미 의원 포함), 의안번호 「1808485」.

11) 국회입법조사처(2011. 6. 24), 『이슈와 논점』, 제256호.

-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업과 보험업이 결합할 경우, 보험회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의 검진서비스를 새로이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됨.
 - 질병관리서비스의 고급화가 가속화되어 개인의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 질병예방서비스 이용에서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4.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써의 보험회사의 역할 필요성

■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 보험회사의 참여 금지는 보험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함.

-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Pricing)은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임.
- 건강리스크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건강이 좋은 사람이 불건강한 사람의 의료비(보험료)를 지불해줘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즉,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적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활동임.
- 때문에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그만큼 언더라이팅 비용 및 보험사기 방지 비용이 감소되어 보험료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감독이 필요함.

- 보험회사의 참여가 질병관리서비스의 고급화로 이어져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소비자만 고가의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차별화된 질병관리서비스의 제공은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와 선택권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고급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정부차원에서 표준적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기준안과 가격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노력은 보험회사의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임.

■ 보험회사는 다른 건강관리서비스기관보다 동질의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인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입장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업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임.
- 반면, 보험회사는 급증하는 손해율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객의 건강을 유지·개선하려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임.
- 심지어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개연성도 존재함.
 - 보험회사가 고객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비용이 보험금감소 금액보다 낮다면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유인까지 발생하게 됨.

나. 개인정보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의료정보를 보험가입 심사 및 보험료 책정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 금지시킨 주요 근거임.
-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고 있다는 논리임.¹²⁾
-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12) 국회입법조사처(2011. 6. 24), 『이슈와 논점』, 제256호.

〈표 2〉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다. 보험가입 고객에 한정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보다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시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보험가입자로 한정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료 산정(pricing) 및 인수여부(underwriting)는 건강리스크 수준에 부합되어야 하나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영위로 인해 보험접근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반면, 기존에 인수가 거부되었던 고위험자의 경우 오히려 정확한 리스크 수준에 맞는(은) 보험료가 산정되어 인수가 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향후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도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접근성이 크게 우(염)려된다면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가입자 중 동의를 구한 고객에 한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금지는 보험회사가 가입고객의 건강개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이며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임.
- 특히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정보가 가입여부 심사나 보험료 책정에 활용되지 않음.

〈표 3〉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대분류	잠재 고객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소분류		
보험미가입자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만 원하는 고객		X
	보험가입만 원하는 고객		X
	보험가입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원하지 않은 고객		X

■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전국민이 아닌 보험가입자로만 한정할 때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성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해 사회적으로도 효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의사는 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알선·소개할 수 없다고 법(제11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할 것임.
 - 약사법에서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에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담합행위가 발생하고 있음.¹³⁾
 - 약사, 제약회사,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방식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비용도 상당함.¹⁴⁾
- 또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서비스를 과잉공급하거나 질을 낮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13)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4) 2011년 한 해에도 3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약사, 제약사 관계자가 수백 명에 달하며(보건복지부, 2011. 8), 2012년 3월에도 약사와 의사 340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가 구속됨.

- 보험회사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건강관리서비스업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됨.
 - 반면 보험회사가 일반 국민이 아닌 자사의 보험가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수익극대화가 아닌 손해율 경감이 주요 목적이 됨.
 - 보험회사는 손해율 경감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함.
 -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업 자체의 수익극대화가 아닌 보험업의 손해율 경감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처럼 서비스를 과잉공급 할 유인이 없음.
 - 특히 자회사가 아닌 겸업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제공 목적이 수익창출보다는 손해율 관리에 집중될 것임.
 - 보험회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게 될 것임.
 - 일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비해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동질의 서비스를 고가에 제공하기가 어려워 소비자의 효용증대와 시장의 모니터링 비용 감소로 이어짐.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한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건강관리서비스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함.
 -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제들이 기타 건강관리서비스기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음.

5. 결론

- 만성질환의 사전적 예방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함.
- 보험회사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설립 및 자본참여를 금지시킬 경우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고비용체제로 고착화되어 비효율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
-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건강관리서비스로 인한 사회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대상을 보험가입자로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목적을 수익창출이 아닌 손해율 안정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자사의 보험가입자에게만 제공할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하는 목적이 수익창출이 아닌 고객의 건강 유지·개선을 통한 보험업의 손해율 경감이 될 것임.
 - 손해율 경감을 위해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과잉 공급할 유인이 없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은 증가하게 됨.
 - 무엇보다 보험회사는 손해율 경감으로 인한 이익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유인마저 존재함.
-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와 다른 기관의 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
-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금지시킬 경우 보험가입자가 동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됨.
 - 가격, 서비스의 질 및 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판단하여 서비스의 제공자를 선택하면 될 것임.
 -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와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비교하여 선택할 때 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대될 것임. **kiri**

〈참고문헌〉

-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3),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
- 국민연금공단(각 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회입법조사처(2011. 6. 24), 『이슈와 논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제256호.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2),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8),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행정처분절차 진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고혈압과 당뇨, 동네의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변용전 외(2010. 5. 17),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안번호 1808485.
- 손숙미(2011. 4),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안번호 1811697.
- OECD(2011), “Health Data”.
-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2006), 『A Provincial Benchmarking Report』.
- WHO(2005), 『Preventing chronic diseases a vital investment』.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 보험산업은 금융산업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불만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음.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저축성, 투자성 상품은 타 금융권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어,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본고에서는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험모집과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보험가입 시 설계사가 적합한 상품을 권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할수록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금 지급 시 가입 당시의 설계사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 관찰되었음. 따라서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설계사가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미지 제고를 도모해야 함.

한편 보험가입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모집 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함.

1. 검토배경



■ 보험산업은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임.

〈표 1〉 연도별 금융민원 건수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은행·비은행	31,236	27,760	39,998
보험	40,936	40,334	40,801
증권·자산운용	4,654	4,075	3,93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3. 23.), 「2011년 중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 보험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임.

●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민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 보험민원 유형

(단위: 건, %)

유형	2010년		2011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보험모집	10,468	26.0	10,886	26.7
보험금 등 산정	6,328	15.7	5,862	14.4
면부채 결정	3,037	7.5	4,186	10.3
계약의 성립 및 실효	2,317	5.7	3,122	7.7
보험금 등 지급	1,850	4.6	3,115	7.6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1,802	4.5	2,231	5.5
장해 및 상해등급적용	937	2.3	620	1.5
기타 ¹⁾	12,712	31.5	10,204	25.0
단순질의(Q&A)	883	2.2	57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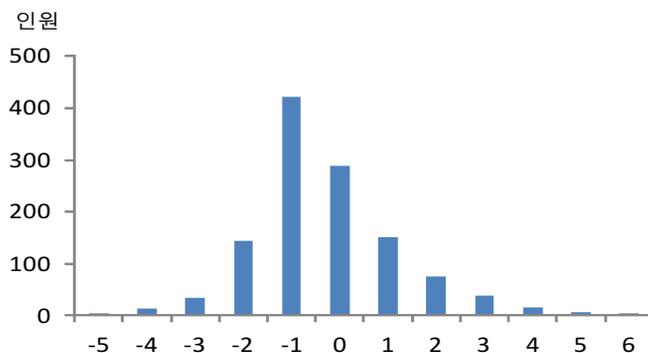
주: 1) 재산운용, 보험질서 등의 민원 및 제도 관련 질의 등(처리 중인 민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3. 23.), 「2011년 중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 이러한 보험민원 발생은 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하락시켜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저축성, 투자성 상품은 타 금융권과도 직·간접적으로 경쟁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를 통하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¹⁾에 따르면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보험회사보다는 은행의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타업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은 금융기관 중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의 이미지가 더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92명, 은행의 이미지가 더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619명, 동일하다는 응답자는 289명임.

〈그림 1〉 은행 대비 보험회사의 상대적 이미지



주: 1) “아래에 제시된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어떠십니까?”에 대한 응답
 2) “매우 안 좋음” 1점, “매우 좋음” 10점으로 1에서 10점 사이로 평가
 3) 은행 대비 보험회사의 이미지 점수는 보험회사 평가 점수에서 은행 평가점수를 빼서 계산함.

■ 본고는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개선이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봄.

- 보험 가입 경험, 보험금 지급과 연관된 서비스와 보험회사의 이미지 간의 관계를 분석함.
- 설문조사는 2012년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의 1,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1) 보험연구원(2012),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 가입 경험과 이미지



■ 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보험회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보험 가입여부와 이미지

(단위: 명, 점)

가입여부		인원	평균 이미지 점수	차이검정	
생명보험	가입	952	7.39	t-value	3.57
	미가입	248	7.06	p-value ¹⁾	0.0004
손해보험	가입	815	7.40	t-value	3.73
	미가입	385	7.14	p-value ¹⁾	0.0002

주: 1) 통상적으로 t-value가 ±1.65보다 크면 (p-value가 0.05보다 적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

■ 설계사가 지인이며, 필요한 상품을 권유하고 약관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낀 가입자일수록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점수가 높았음.

- 설계사의 서비스 수준, 친밀도와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함.
- 보험가입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보험회사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는 불완전판매 개선이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함.

〈표 4〉 설계사에 대한 경험과 이미지

(단위: 명, 점)

경험		인원	평균 이미지 점수	차이검정	
설계사가 지인	지인	951	7.43	t-value	3.14
	모르는 사람	134	7.05	p-value	0.0020
설계사가 필요상품을 권유	보통이하	83	6.86	t-value ¹⁾	-5.48
	그렇다	771	7.36		
	매우 그렇다	231	7.63		
설계사가 약관을 충분히 설명	보통이하	147	6.82	t-value ¹⁾	-6.38
	그렇다	509	7.36		
	매우 그렇다	429	7.59		
설계사의 설명을 관심 있게 들음	보통이하	157	6.88	t-value ¹⁾	-5.57
	그렇다	695	7.42		
	매우 그렇다	233	7.60		
약관을 충분히 이해	보통이하	233	6.99	t-value ¹⁾	-6.14
	그렇다	724	7.43		
	매우 그렇다	128	7.79		

주: 1) 보통이하와 매우 그렇다 간의 차이검정 결과.

3. 보험금 수급과 이미지



- 가족의 보험금 수급²⁾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 간에는 유의한 이미지 점수 차이가 없었음.

〈표 5〉 가족의 보험금 수급과 이미지

(단위: 명, 점)

수급여부		인원	평균 이미지 점수	차이검정	
생명보험	수급	256	7.26	t-value	1.62
	비수급	780	7.41	p-value	0.1060
손해보험	수급	339	7.26	t-value	1.60
	비수급	707	7.38	p-value	0.1112

- 가입 당시의 설계사나 직원이 소비자의 보험금 수급에 만족스러운 도움을 줄수록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관찰됨.

● p-value가 0.1042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다소 낮은 한계는 있음.

〈표 6〉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급 관련 서비스와 이미지

(단위: 명, 점)

서비스		인원	평균 이미지 점수	차이검정	
가입당시 설계사나 직원의 도움	있음	191	7.31	t-value	1.12
	없음	65	7.11	p-value	0.2631
해당 설계사나 직원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	보통 이하	36	6.83	t-value ¹⁾	-1.66
	만족하는 편	140	7.41		
	매우 만족	15	7.53	p-value	0.1042
수급까지 기간	3일 이하	72	7.33	t-value ²⁾	0.23
	3일 초과~2주일 이하	158	7.23		
	2주일 초과	26	7.27	p-value	0.8152

주: 1) 보통 이하와 매우만족 간의 차이검정 결과.

2) 3일 이하와 2주일 초과 간의 차이검정 결과.

2) 계약 당사자의 보험금 수급에 관한 설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4. 결론 및 시사점



- 보험회사는 보험모집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설계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설계사의 지인에 대한 영업활동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가입 시 설계사가 적합한 상품을 권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할수록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가입자가 약관을 충분하게 이해할수록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높게 평가했음.
 -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지만 보험금 지급 시 가입당시 설계사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이 관찰됨.

- 보험회사는 보험모집 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음.
 - 보험모집 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을 파악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보험회사는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설계사가 가입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설계사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가입 이후에도 담당 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등의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KIRI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김해식 연구위원 / 김소연 연구위원

요약

-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로 장기금리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장기금리에 민감한 보험회사는 금리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
 - 기준금리 동결 기간에도 보험회사는 장기금리 하락을 경험해 왔기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금리 반등 가능성이 축소되고 장기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즉 금리위험이 증가할 것임.
-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가 자본보다 크게 증가하여 자본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금리위험이 존재하며,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에 대한 저금리 영향이 다르므로 대응방식도 달라야 할 것임.
 - 장기보험에 대한 저금리 영향은 투자수익률 하락과 함께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금리와와의 역마진 부담으로 나타남.
 - 또한, 저금리 환경에서 자기자본규제를 비롯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회사가 부담할 요구자본량은 커지고 자율적인 보험료 결정권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보험영업부문에서는 상품구성의 변화, 예측분석을 적용한 언더라이팅 개발과 다면소통을 위한 모바일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저금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가격조정이 어려운 장기보험의 경우 가장 유연한 금리위험 대응은 신계약 판매를 통해 준비금의 부담금리를 낮추는 것이나, 상품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최근 저금리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들은 예측분석과 시장분할을 통해 그룹별 수익성과 유지율을 목표가격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금리에 대응하고 있어 현금흐름방식의 가격결정방식 시행을 추진 중인 국내 보험회사들도 예측분석에 주목할 필요
 - 한편,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면소통의 기존 채널에서 모바일이나 SNS 채널을 활용한 다면소통을 시도할 필요

■ 자산운용에서 만기 조정이나 금리 반등 시기를 염두에 둔 투자전략으로 수익성 제고와 위험 완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영업과의 통합 관점에서 금리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

- 금리 변동 시 보험회사의 기업가치는 투자영업의 자산가치 변동은 물론 보험영업의 준비금가치 변동도 함께 수반하므로 전사적 관점에서 저금리에 대응해야 함.

1. 검토배경



■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시중금리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짐.

-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13개월 간 지속된 3.25%의 기준금리를 3.00%로 인하하여 이전까지 시장에서 논의된 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가계부채와 물가불안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장기금리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장기금리에 민감한 보험회사는 금리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

- 보험회사는 기준금리 동결 기간에도 장기금리 하락을 경험해 왔기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금리 상승 가능성이 축소되고 장기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즉 금리위험은 증가할 것임.
- 금리의 지속적 하락 또는 낮은 금리가 지속되는 저금리 환경은 보험상품 수익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수익의 하락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본 압박으로 인해 보험위험의 인수능력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금리위험 관리가 요구됨.

■ 보험회사는 자산구성과 상품구성은 물론 언더라이팅과 판매채널 등 보험경영 전반에 걸쳐 전사적으로 저금리 환경에 대응할 필요

- 저금리 영향은 자산과 부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므로 투자영업과 보험영업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금리위험이 관리되어야 함.

- 본고는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투자영업과 함께 상품의 제조·판매 등 보험영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자동차 등 일반손해보험(이하 ‘단기보험’이라 함)과 장기손해 및 생명보험(이하 ‘장기보험’이라 함)의 저금리 영향도 다른 만큼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을 구별하여 저금리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저금리 환경과 저금리의 영향



가. 장기금리 하락 추세

■ 장기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상승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로 장기금리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기준금리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00%에서 3.25%까지 꾸준히 인상된 후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3.25%를 유지해 왔음.
- 반면,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동결된 기간에도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여 장단기 금리 차이가 크게 축소되어 왔으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장기금리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장·단기 국채 금리의 분기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나. 보험회사에 대한 저금리의 영향

■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가 자본보다 크게 증가하여 보험회사 자본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금리위험이 존재

- 금리 하락은 자산과 부채에 모두 영향을 주는데, 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의 듀레이션보다 긴 보험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회사의 기업가치,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의 실질가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보험회계에서는 준비금이 시가로 평가되지 않아 자산가치의 증가만이 장부에 반영되어 금리 하락이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수익률 하락에 따라 금리역마진 손실이 누적되므로(준비금이 증가하여)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작용됨.

■ 한편,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에 대한 저금리 영향은 다른데, 자동차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투자수익 하락이 이슈인 반면,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투자수익 하락과 함께 보유계약에 제공해야 할 고금리 부담이 이슈

- 단기보험에 대한 저금리 영향은 주로 손해를 상승을 보전할 투자수익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보험에 비해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도 크지 않음.
 - 다만, 보험금 지급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인배상책임 등의 준비금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며, 이런 종목에서는 투자수익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더구나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높아 일반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보다 금리위험 노출이 큼.
- 한편, 장기보험에 대한 저금리 영향은 투자수익률 하락과 함께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금리와의 금리역마진 부담으로 나타남.
 - 장기보험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가격을 조정하기 쉽지 않고, 보험계약자는 고금리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장기보험의 유지율이 상승하고 준비금은 증가하는 경향
 - 물론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할 경우 보험상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¹⁾ 최근 국내 감독규제는 보험회사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1) 이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이 필요할 것임.

다. 저금리 환경의 소비자와 규제강화

■ 저금리 환경에서 자본규제를 비롯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2011년 4월 도입된 위험기준자본(RBC)규제의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시장의 성장이 저축성상품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시이율 경쟁이 심화되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공시이율기준 개정²⁾을 제시한 바 있고,
 - 이와 관련하여 금리위험 요구자본에 역마진위험³⁾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 또한, 2013년에는 RBC 신뢰수준이 95%에서 99%로 높아질 예정
-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부담은 커지고 자율적인 보험료 결정권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가격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율과 규제가 균형을 이룰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가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저금리 영향으로 소비자는 금리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규제 강화를 초래

- 최근 변액연금의 수익률 논쟁이나 실손보험의 계약갱신에 따른 보험료 급등 논란은 모두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판매, 공시,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의 변화를 가져옴.

3.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가. 보험영업: 상품구성의 변화, 예측분석과 모바일채널 구축

■ 가격조정이 어려운 장기보험의 경우 금리위험에 대한 가장 유연한 대응은 신계약 판매를 통해서 준비금의 부담금리를 낮추는 것이나, 상품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2) 공시이율 = (보유자산의 투자수익률 + 신규편입자산의 시장기대수익률) * (1±10%). 여기서 시장기대수익률은 신규편입자산을 보험회사의 현행 자산구성으로 배분하고 자산별 시장실세금리로 가중한 합계임.

3) 준비금 부리아이율인 공시이율과 5년 만기 국제 금리에 기초한 투자수익률 간 차이의 50%를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곱하여 산출.

- 가격조정은 시장점유율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상품구성이라는 틀 자체의 조정을 통해서 금리위험을 흡수할 필요
 - 단기보험에서는 투자수익 의존도가 높음(보험금 지급기간이 긴) 상품보다는 투자수익 의존도가 낮은(보험금 지급기간이 짧은) 상품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
 - 다만, 장기손해보험이 주력인 국내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변화 유인이 크지는 않을 것임.
 -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투자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와 분담하는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금리위험 관리 전략은 여전히 유효
 - 2000년대 저금리기 금리확정형 상품에서 금리연동형 상품 위주로 판매되면서 준비금의 부담(조달)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들은 예측분석과 시장분할을 통해서 그룹별 수익성과 유지율을 측정하여 목표가격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금리에 대응
- 최근 미국 보험회사들은 예측분석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어 현금흐름방식의 목표가격결정방식을 시행하려는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예측분석에 주목할 필요
 - 단기보험의 경우 예측분석은 개인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기업보험으로 확대된 후, 2000년대 중반부터 장기보험에도 활용되고 있음.
 - 예측분석은 관측 가능한 데이터로 통계적 모형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서 GLM(Generalized Linear Model),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등의 모형을 주로 활용
 - 특히,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언더라이팅에서 예측분석은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은 물론 일관성 있는 심사가 가능해서 생산성과 효율성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음.
 - 규칙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이 예측분석으로 대체되면 가용업무량이 늘어나고 변수 파악이 용이하여 언더라이팅의 일관성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짐.
 - 언더라이팅 과정의 예측분석 활용으로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잠재 고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 해당 그룹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하여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면 소통의 기존 채널에서 모바일이나 SNS채널을 통한 다면 소통도 시도할 필요

- 기존 채널은 소비자와 설계사나 대리점이라는 단일채널을 통해서만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소통한 반면, SNS와 모바일 채널은 소비자와 기존 채널 및 보험회사가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여 보험회사의 시장분할에 따른 목표그룹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

나. 다양한 투자전략과 전사적인 대응

■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들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의도적으로 탈피하는 투자전략을 취하는 경향을 보임.

-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투자전망과 자산구성에 따라 자산의 듀레이션을 조정하거나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 자산 듀레이션의 경우 듀레이션 확대는 ALM의 틀을 유지하면서 투자수익을 늘리려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듀레이션 축소는 향후 금리 반등을 염두에 둔 접근방식

〈그림 2〉 보험회사의 경제적(내재)가치와 전사적 금리위험 대응



■ 그러나 자산운용에서 만기 조정이나 금리 상승 시기를 염두에 둔 투자전략은 보험영업에 염두에 두지 않은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경우 수익성 제고와 위험 완화라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의 통합 관점에서 금리위험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필요

- 금리 변동은 투자자산 가치 변동만이 아니라 보험영업의 준비금 가치 변동도 함께 수반한다는 점에서 자산구성과 상품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Kiri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참여방안

이창우 연구위원 / 조용운 연구위원

요약

-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도입되었지만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 그동안 해외 보험회사는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면서 국내병원과 직접지급계약을 맺는 등 외국인환자유치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보험회사와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그리고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네트워크 활용, 의료보험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회사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출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음. 이에 2012년 8월 정부는 영세 유치업자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보험상품과 연계한 외국인환자유치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본고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서 영세유치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외국인환자를 국내병원에 소개·유인·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보험회사는 수수료 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출보다는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참여방법을 고민해 왔음. 기본적인 사업모형은 해외 글로벌 건강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자본, 전문인력 등을 이용하여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모형임. 보험사업운영은 국내보험회사가 하고 보험상품 판매는 현지 보험회사가 하는 모형임.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의 래플즈병원의 자회사인 IMI와 영국계 Bupa International의 제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운영방법을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방식에 적용한 모형을 제시하였음.
- 보험회사는 해외진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상품개발로 글로벌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한편, 외국인 보험가입자들을 국내 의료기관으로 소개·유인·알선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1. 검토배경



- 2012년 2월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등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¹⁾
 -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외국인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를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의료법 제27조4항).
- 이는 정부가 국내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성장 기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임.
 - 이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어 국가 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이창우 2012).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영세 유치업자들은 보험회사가 특정병원과 연계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익을 제기하고 있음.²⁾
 - 보험회사와 특정병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관한 제도인 당연지정제에 대한 영향은 없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큰 연관성이 없음.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2. 22), 「2012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 서울파이낸스 보도자료(2012. 8. 23).

■ 이에 2012년 8월 정부는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판매 보험상품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³⁾

● 기존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종사자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환자만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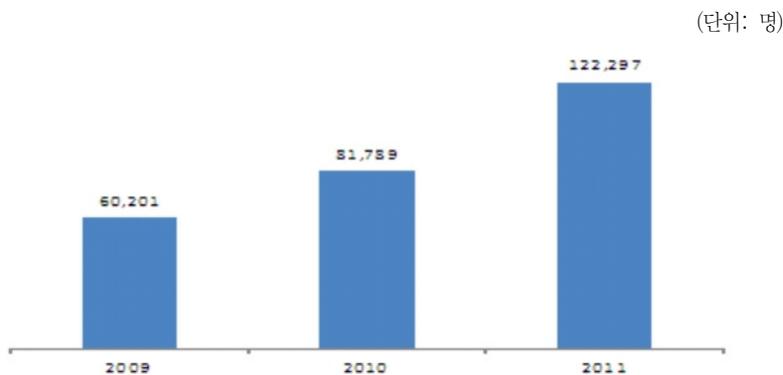
■ 본고는 국내 보험회사가 외국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진출하여 기존의 유치업 종사자와 상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참여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외국인환자유치업 실적 현황

■ 외국인환자유치업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어 산업규모가 작고 개별 참여기업의 규모는 영세한 상태에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122,297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정책목표인 11만 명을 초과하였음.

〈그림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자료: 한동우(2012),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기획재정부(2012. 8. 17),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

- 이 중 외국인환자유치업체는 2009년 외국인환자 1,894명을 국내병원에 유치하였고, 2011년에는 8,098명을 유치하여 외국인 환자유치 규모만 2년 사이에 327% 성장하였음.
- 2011년 산업전체의 소개·유인·알선 수수료수입은 18억 원 수준으로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당 수입은 1,691만 원으로 영세성을 띄고 있음.

〈표 1〉 외국인환자유치업체의 유치실적

구분		2011년	2010년	2009년
유치실적		8,098명	6,723명	1,894명
유실적 업체 수		107개소	54개소	34개소
수수료 수입	전체	18억 원	13억 원	2억 7천만 원
	업체당 (연간)	1,691만 원	2,446만 원	785만 원

주: 1) 수수료는 진료비의 15%로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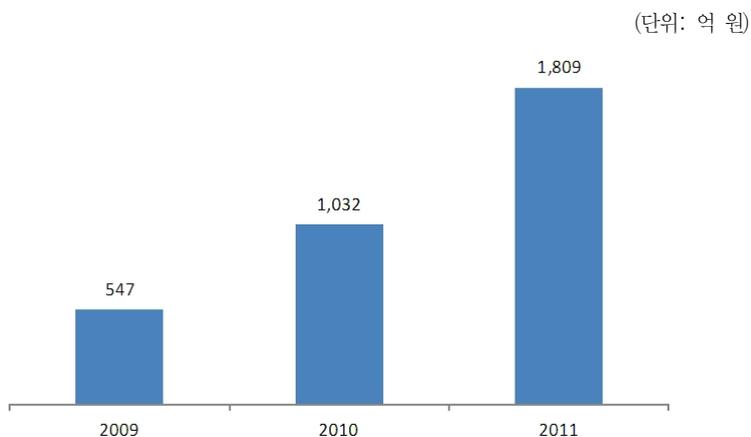
2) 의료기관이 직접 유인한 실적은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진출 회의 자료」.

■ 실제 수수료 수입은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수수료 취득 목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 업체에 참여하는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외국인환자유치에 따른 수입은 주로 진료수익임.

〈그림 2〉 외국인환자 진료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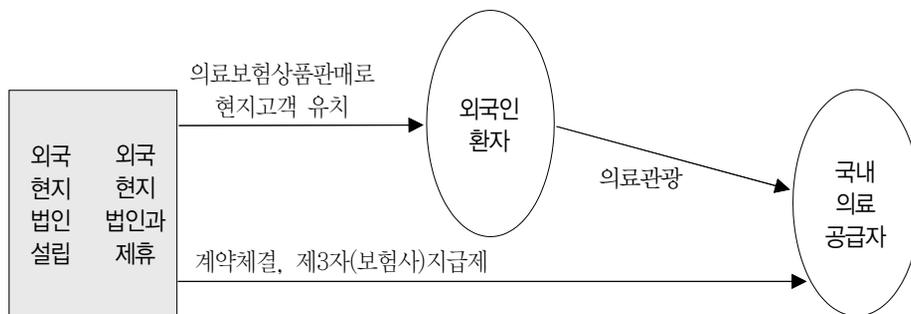
자료: 한동우(2012),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참여모형



- 보험회사는 수수료 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출보다는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참여모형을 고민해 왔음.
 - 해외 글로벌 건강보험회사의 네트워크 및 자본, 전문인력 등을 이용하여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참여모형을 고려하고 있음.
-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외국현지법인 혹은 해외보험사 등과 합작 혹은 계약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발생 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계약된 국내 의료기관으로 소개·유인·알선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 진출한 글로벌 보험회사들에게는 해외 보험회사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음.
 - 숙박 예약 등의 편의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그림 3〉 외국인환자유치업에서 보험회사의 기본사업모형



자료: 이창우(2011),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p.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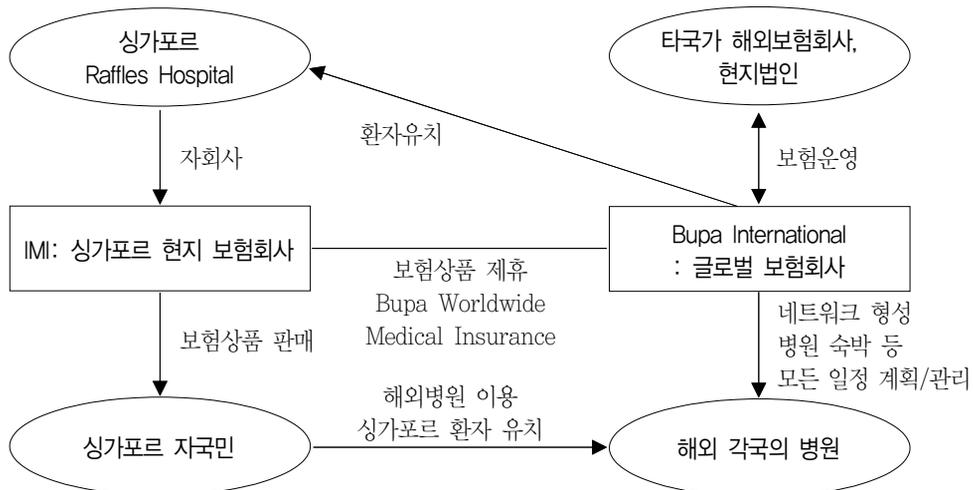
■ 보험상품 판매의 대상은 국내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존재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함.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국가에서는 부유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주효할 것임.
- 반면, 우리나라보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자국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임.
- 대기환자(waiting list)가 많은 영국식 국가의료서비스체계(NHS)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진출할 경우 NHS를 운영하는 주체와 협상을 통하여 대기환자를 국내의료서비스에 연계시켜주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보험상품 판매 대상 국가로의 진출 형태는 해외보험회사와의 제휴가 단기적으로 적절해 보임.

- 싱가포르 래플즈 병원(Raffles Hospital)의 자회사인 IMI(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Pte Ltd)와 영국계 Bupa International의 제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운영은 국내보험회사의 진출방식에 참조가 될 만함.

〈그림 4〉 싱가포르 IMI사와 Bupa International의 보험판매와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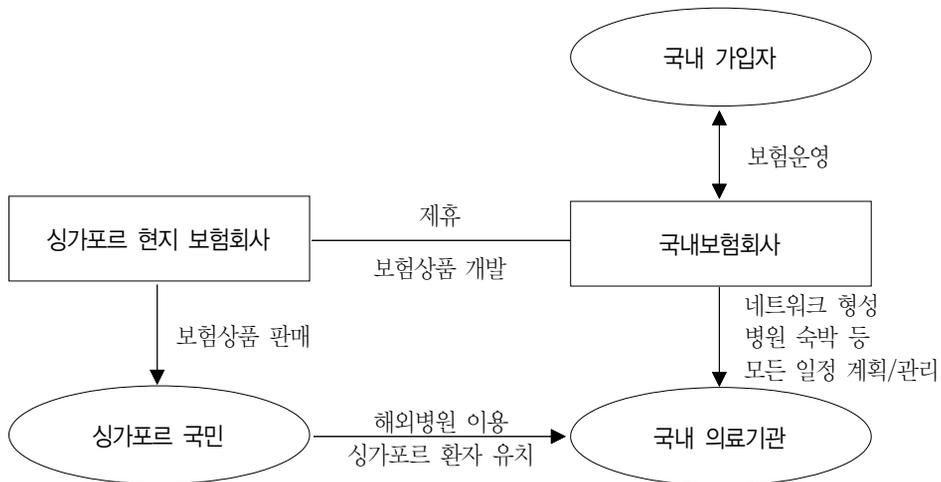


자료: Bupa International, IMI, Raffles Hospital 웹페이지 참조하여 작성함.

- 방대한 해외병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Bupa International(이하 'BI'라 함)는 Bupa Worldwide 의료보험을 싱가포르 현지 IMI사와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운영은 BI가 담당하여 싱가포르 국민의 해외병원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국내보험회사도 BI의 사업모형을 참고하여 외국의 보험회사와 제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임(〈그림 5〉 참조).
 - 국내보험회사는 외국의 현지 보험회사와 제휴를 통해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함.
 - 외국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함.
 - 국내보험회사는 국내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보험회사가 해외 현지에 판매한 상품에 가입한 외국 국민이 국내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함.
 - 국내보험회사는 해외 현지에 판매한 상품에 가입한 외국 국민이 국내병원을 이용할 경우 숙박 등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5〉 예: 우리나라 보험사의 싱가포르 환자유치를 위한 보험판매와 운영방식



■ 중장기적으로 보험상품 판매 대상 국가로의 진출 형태는 해외합작사 설립, 현지법인 설립 등이 있음.

- 해외합작사 설립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보험료 산출을 위한 자료 확보 등이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임.

■ 상기 모형을 통해 보험회사가 실제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보험상품에 기초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외국인환자유치산업을 보호하면서 보험회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임.

4. 맺음말



-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의료산업의 성장에 기여 할 것임.
 - 외국인 보험가입자에게 국내 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을 소개·유인·알선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수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⁴⁾
- 국내 보험회사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외진출이 성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일 것임.
 -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함에 따른 숙박업 수요 증대, 관광수요 증대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보험산업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봄. **kiri**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2. 22), 『2012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8. 17),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
서울파이낸스 보도자료(2012. 8. 23),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되나?』.
이창우(2012),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 보험연구원.
이창우·이기형(2011),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보험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진출 회의 자료』.
한동우(2012),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upa International사 웹사이트 <http://www.bupa-intl.com/>
IMI(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Pte Ltd)사 웹사이트 <http://www.imi.sg/>
Raffles Hospital 웹사이트 <http://www.rafflesmedicalgroup.com/hospital/overview.aspx>

4) 진료수익의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BI와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규모를 파악한다면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벌어들일 수 있는 진료수익을 예상할 수 있음.



수익률 논란 계기로 본 변액연금시장의 구조적 변화

전용식 연구위원 / 김세중 선임연구원

요약

- 2012년 4월 금융소비자연맹의 보고서(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에서 변액연금상품의 수익률 논란이 제기되었음.
 - 이에 5월 17일 보험연구원은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후취 수수료 상품의 도입과 소비자 중심의 수익률 공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 변액연금관련 판매수수료체계 개선, 공시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 FY2011 2/4분기 이후 감소하던 변액연금 수요는 수익률 논란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해지율도 생명보험 전체 및 변액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수익률 논란이 변액연금 수요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FY2012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였고,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감소
 - 변액연금 월별 해지율은 FY2011 평균 1.3%를 나타냈으나 2012년 4월 1.6%까지 상승한 후 5, 6월에는 각각 1.5%를 기록
- 그러나 변액연금 수요는 성장률, 주가지수, 소비자들의 위험선호도 변화와 이로 인한 일반연금보험과의 관계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음.
 - 변액연금의 수요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펀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임.
 -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주가지수와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변액연금의 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는 줄어들었음.
 - 2007년 4/4분기 연금시장의 50%를 차지했던 변액연금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와 주가수익률과 채권수익률 간의 상대적 크기 등으로 10%까지 줄어들었음.

-
- 결론적으로 최근 변액연금의 수요 감소는 수익률 논란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의한 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와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생명보험회사들의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1. 검토 배경



- 최근 변액연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원인이 지난 4월의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됨.¹⁾
 -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이 있었던 FY2012 1/4분기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였고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0% 가까이 감소하였음.
 - 생명보험산업의 FY2012 1/4분기 수익성 악화가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과 이로 인한 수입보험료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FY2012 1/4분기 당기순이익은 8,44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 감소

1) 조선비즈(2012. 9. 23), 「변액연금 논란 탓 생보사 4~6월 초회보험료 3.5조 17% 감소」; 서울경제(2012. 10. 4), 「'변액보험 논란' 생보사 수익 직격탄」.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개요

- 2012년 4월 5일 금융소비연맹은 변액연금 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생명보험업계가 이에 반박하면서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이 촉발됨.
 - 4월 5일 금융소비자연맹은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를 통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중인 변액연금상품의 실효수익률이 대부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함.
 -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수익률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상품을 제조업 상품과 같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보험업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반박함.
 - 5월 17일 보험연구원은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후취 수수료 상품의 도입과 소비자 중심의 수익률 공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함.
- 금융위원회는 2012년 6월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 개선방안은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주요 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하면서 ‘변액보험상품 비교’ 메뉴를 신설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쉬운 용어를 이용하여 단순화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계약자가 변액보험상품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변액보험 핵심 상품설명서를 도입함.
 - 사업비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청약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운용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고 사업비부과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함.

■ 본고에서는 최근 변액연금 수요 감소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생명보험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의 변액연금 수요 감소가 수익률 논란으로 인한 감소 때문인지, 혹은 경기, 금융시장 변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연금시장의 변화 등에 의한 감소인지를 분석하여 판단하고자 함.
 - 수익률 논란으로 인한 감소라면 감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큰 반면, 경영환경의 변화와 연금시장의 변화에 의한 추세적인 감소라면 변액연금 수요 감소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추세적인 감소일 경우 연금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생명보험산업은 연금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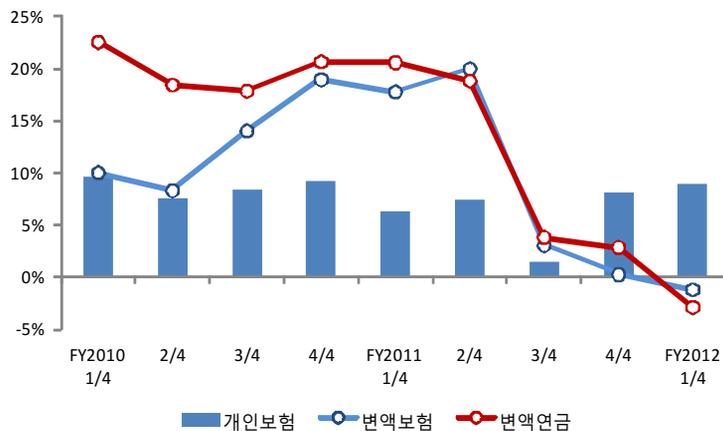
2. 수익률 논란 이후 변액연금 시장 동향



■ 변액연금 수요가 크게 감소하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 FY2012 1/4분기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였고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감소
 - 반면 변액중신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각각 6.2%, 0.4% 증가하여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를 만회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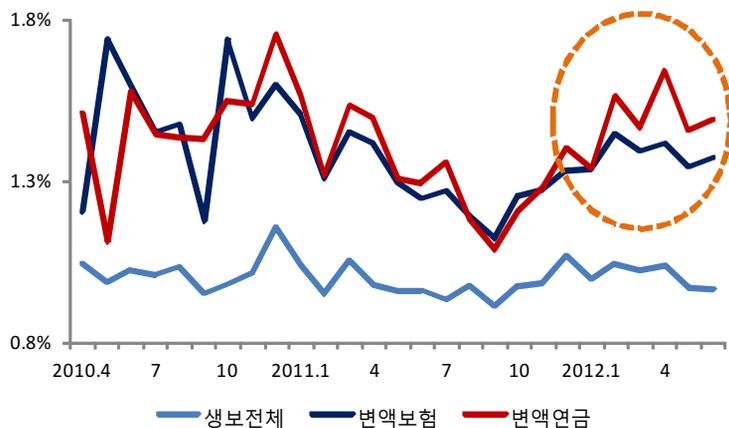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하였는데 변액보험을 제외할 경우 증가율은 12.8% 으로,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감소가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를 제한한 것으로 보임.
- 변액연금 해지율은 2011년 9월 이후 상승추세로 반전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변액연금 월별 해지율은 FY2011 평균 1.3%를 나타냈으나 2012년 4월 1.6%까지 상승한 후 5월과 6월에는 각각 1.5%를 기록하였는데, 주가지수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변액연금 해지율이 상승추세로 반전된 2011년 9월은 종합주가지수가 1,790선을 기록하며 2011년 4월 2,153에 비해 16.9% 감소하였던 시기

-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종합주가지수는 평균 1,903수준으로 이전 12개월 평균 2,025에 비해 100포인트 하락하였음.

〈그림 2〉 변액연금 월별 해지율 추이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3. 변액연금 수요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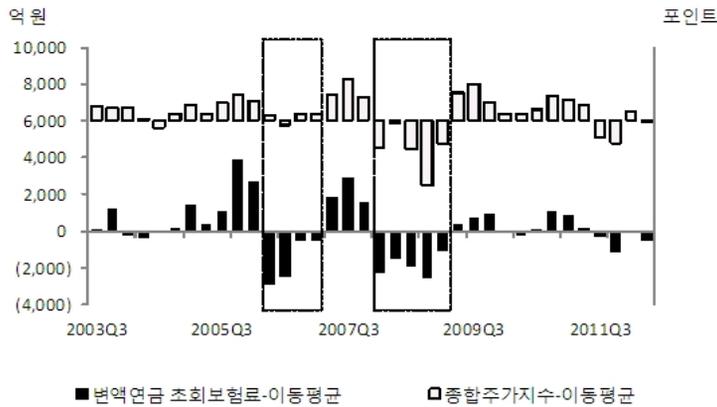


가. 주가지수와 변액연금

- 2002년 변액연금이 판매된 이후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주가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 주가지수가 추세로부터 상승/하락함에 따라서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도 추세²⁾로부터 상승/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 2005년 말과 2007년 말 주가 상승기에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일시납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으며,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던 2008년 말에는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도 크게 감소하였음.

2) 추세는 직전 3분기 이동평균임.

〈그림 3〉 변액연금 초회보험료와 주가지수 추이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KR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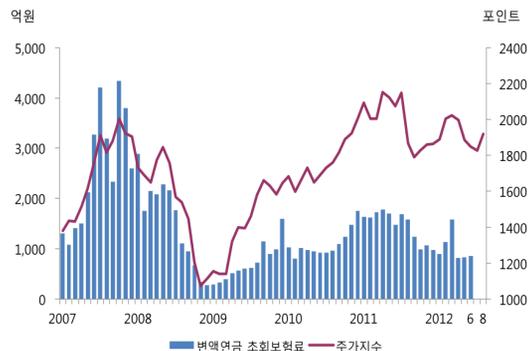
■ 변액연금 초회보험료의 주가지수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는 주식형펀드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변액연금의 상품 특성과 마케팅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적립식펀드가 본격화된 2007년부터 2009년간에는 주가지수 등락에 따라 주식형펀드 유입액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는 주가등락에도 주식형펀드 유입액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2007년부터 2009년간에는 주식형펀드 유입액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2009년부터는 주식형펀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 2008년 말부터 2011년 4월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할 때 변액연금 초회보험료가 주식형펀드 유입액보다 종합주가지수 상승추세와 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주식형 펀드 유입액과 주가지수 추이



〈그림 5〉 변액연금 초회보험료와 주가지수 추이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KRX, 금융투자협회.

-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주가상승기의 종합주가지수와 변액연금 초회보험료간의 상관계수는 0.93으로 주식형펀드 유입액과 종합주가지수간의 상관계수 0.37보다 큰 것으로 분석(〈표 1〉 참조).

〈표 1〉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주식형펀드 유입액과 변액연금 초회보험료의 상관계수와 증가율 비교

구분	종합주가지수			주식형펀드 유입액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고점	저점	평균	월평균 ¹⁾	상관계수 ²⁾	월평균 ¹⁾	상관계수 ²⁾
2007. 7~2008. 11 (하락기)	2,004.6	1,074.0	1,675.7	49,138	0.67	2,151	0.88
2008. 12~2011. 4 (상승기)	2,153.1	1,114.9	1,641.1	28,690	0.37	996	0.93
2011. 5~2012. 3 (하락, 상승반전)	2,150.1	1,791.0	1,952.0	31,733	0.22	1,301	0.75
2012. 4~2012. 6 (상승기)	1,995.9	1,848.6	1,910.2	26,825	-	832	-

주: 1) 월평균 금액이며 단위는 억 원
 2) 상관계수는 주가지수와의 단순 상관계수임.

- 이러한 민감성은 주가상승 시 변액연금 마케팅이 확대되고 대부분의 변액연금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증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하락 시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5월부터 확산된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주식형펀드 유입액 및 변액연금 초회보험료와 종합주가지수간의 선형관계는 약화되고 있으며, 월평균 유입액과 초회보험료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락함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와 변액연금 초회보험료의 상관계수는 작아지고 있음.
 - 변액연금의 상품, 마케팅적 특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변액연금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종합주가지수가 90포인트 하락한 이후 2011년 4월까지 다시 100포인트가 상승하였으나 월평균 주식형펀드 유입액(41% 감소)과 변액연금 초회보험료(54% 감소)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음.

- 2011년 4월 이후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은 줄어들고 수준은 상승하였으나 월평균 주식형펀드 유입액과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확산된 안전자산 선호 성향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강화되면서 2011년 1/4분기부터 변액연금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성향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변액연금 수요 감소는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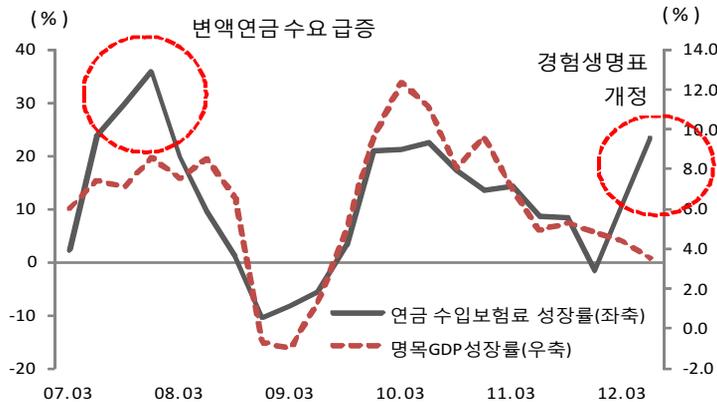
나. 연금수요와 변액연금

■ 개인연금 수입보험료는 GDP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가계의 개인연금 수요는 소득과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인 연금 수요 속에서 소비자는 투자성향에 따라 변액연금과 일반연금을 선택

●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명목 GDP성장률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변액연금과 일반연금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07년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급증은 변액연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것이며 2012년 제7차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일반연금 수요가 급증하였던 경험이 있음.
- 소비자는 투자성향에 따라 주기수익률의 영향을 받는 변액연금과 공시이율의 영향을 받는 일반연금 상품 간에 선택을 하므로, 변액연금 수요에 일반 연금상품의 수요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임.

〈그림 6〉 연금 수입보험료와 명목GDP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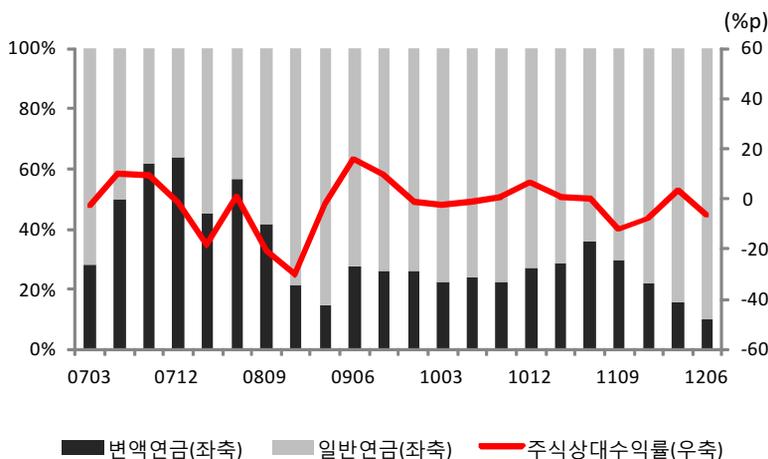


주: 연금 수입보험료는 세제비적격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수입보험료의 합임.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 주가수익률과 공시이율간의 상대 수익률과 투자성향에 따라 변액연금 수요는 영향을 받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변액연금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2007년 3/4분기부터 2008년 말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수익률이 국고채수익률을 하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중에서 일반연금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함.
- 2009년 2/4분기부터 2011년 초까지 변액연금 비중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말부터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변액연금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7〉 주식상대수익률과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비중



주: 주식상대수익률 = 종합주가지수 전분기대비 수익률 -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KRX

■ 최근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 전 가입수요가 몰리면서 변액연금 수요를 구축 (Crowding out)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2년 4월부터 제7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서 연금보험료의 인상 또는 연금수령액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연금상품 판매가 예상되는 7월 이전 연금상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
 - FY2012 1/4분기 세제비적격 일반연금 수입보험료는 46.5% 증가한 반면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2.9% 감소
- 변액연금 상품이 투자형 상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경험생명표 개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변액연금 수요가 일반연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시사점



- 2012년 4월 수익률 논란이 변액연금 수요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나 기본적으로 변액연금 수요는 2011년 2/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2012년 4월 5일 금융소비자연맹의 'K-컨슈머리포트' 발표 직후인 4월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9.7% 감소하였으며 FY2011 1.3%를 나타냈던 해지율은 2012년 4월 1.6%까지 상승함.
 - 5월과 6월에도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0% 가량 감소하였고 FY2012 1/4분기 수입보험료도 2.9% 감소하는 등 변액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수익률 논란은 이미 감소추세로 접어든 변액연금 수요 감소세를 가속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주가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연금의 특성과 FY2012 1/4분기 주가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을 감안할 때 5월과 6월의 초회보험료 수준은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에서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판단됨.

- 변액연금 수요는 주가지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는 약화되고 있음.
 - 유럽재정위기가 실현되기 이전까지 주가가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특징은 변액연금 마케팅 관행과 최저보증으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변액연금 수요가 주가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2/4분기 이후 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약화되고 있어 지난 4월의 수익률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액연금 수요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변액연금도 연금상품의 하나이므로 변액연금 수요는 전반적인 연금수요에 영향을 받는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고 일반연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변액연금 수요 감소 추세는 지속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액연금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변액연금 비중이 위축되고 일반연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제7차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일반연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한 것은 일반연금으로 변액연금 수요가 일부 대체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변액연금 시장의 구조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은 생명보험사들의 영업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나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수요를 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하는 변액연금 마케팅 전략의 효과성은 저하되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변액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상품이며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타 연금상품들과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기능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소비자가 종합적인 노후설계를 목표로 변액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후취수수료 상품 개발이나 공시제도 강화 등 공급 측면에서 변액연금 시장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수요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함.

kiri



손해보험의 보험위험액 산출방법에 관한 소고

조재린 연구위원 / 김유미 인턴연구원

요약

- 2011년 4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가 도입됨. 현행 우리나라의 RBC제도는 보험회사의 손실 가능성을 발생 원천에 따라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위험으로 구분함. 그런데 보험위험의 경우 현행 손해보험의 RBC는 보험위험을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 위험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위험 산출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각 회사의 손해를 및 준비금 변동성의 분포가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또한, 보험종목 간 분산효과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반면, EU Solvency II 표준모형이나 Swiss Solvency Test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위험요소를 국내 RBC보다 세분하고 있으며, 보험종목 간 분산효과를 고려하고 있음. 또한, Swiss Solvency Test는 확률적 위험과 모수불확실성 위험을 분리하여 모형에 반영하고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위험추정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위험 산출에 있어서 위험 세분화, 분산효과의 반영, 확률적 위험과 모수불확실성 위험의 분리를 국내 RBC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RBC는 보험가격위험 산출 시 적용하는 회사별 조정률을 5개 연도별 합산비율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으로써 합산비율의 변동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1. 검토배경



- 2011년 4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가 도입됨.
 -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고, 자기자본규제를 은행의 바젤Ⅱ와 같은 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하여 권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국내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위험을 발생 원천에 따라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위험 등 5가지로 구분함.

- 보험위험은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계약 시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실제 지급될 보험금이 커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함.
 - 국내 RBC제도에서는 보험위험액을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보험가격위험액은 미래에 발생할 실제손해액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을 대상으로 하며,
 - 준비금위험액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실제 지급액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을 대상으로 함.

-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RBC 손해보험(non-life)의 보험위험액 측정방법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국내 RBC 손해보험 보험위험액 산출방법의 특징



■ 보험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보험가격위험은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 간의 차이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¹⁾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의미함.
-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을 각각 산출한 후,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보험위험액을 산출함.
 - 그에 반해 Solvency II의 경우, 서로의 상관계수를 0.25로 가정하여 상관관계를 반영
 - 예를 들어 보험가격위험액이 100억 원, 준비금위험액이 200억 원인 경우 국내 RBC의 경우에는 보험위험액이 약 224억 원으로 산출되지만 상관계수 0.25를 반영하는 경우 약 245억 원으로 산출됨.²⁾
 - 현실적으로 보험가격과 준비금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효과를 반영하면 약 21억 원 정도의 요구자본이 더 필요하게 됨.

■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 산출 시 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종목 구분별로 보험위험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함.
- 준비금위험액은 보험종목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함.
- 보험종목 구분별로 구분한 후 종목 간 상관계수를 1로 가정하여 단순 합계함.
- 이는 모든 담보에서 극단적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위험을 산출하는 매우 보수적인 산출 방법임.

1) 지급준비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말하며, 이중 준비금위험액은 사고로 인해 적립한 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함.

2) 부록 「국내 RBC 손해보험 보험위험액 산출방법」 참조.

〈표 1〉 보험종목 구분

구분	보험종목
일반보험	화재·도난보험, 기술·종합보험, 해상보험, 기타일반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용(대인), 비개인용(대인), 기타자동차보험

- 예를 들어 화재보험은 100억 원, 해상보험은 200억 원의 보유보험료가 있는 경우 국내 RBC의 경우 보험가격위험액은 단순 합계인 300억 원으로 산출되지만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상관계수 (0.2로 가정)를 반영한다면 보험가격위험액은 약 241억 원으로 산출됨.
- 즉, 두 종목의 분산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약 59억 원의 요구자본 부담을 덜 수 있음.

■ 보험가격위험액 산출 시 회사별 조정위험계수를 사용함으로써 개별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

- 보험가격위험액 산출 시 개별회사 간 합산비율의 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별 조정위험계수를 사용함.
- 조정위험계수는 산업전체 보험가격 위험계수에 회사별 조정률을 반영하여 구함.
- 그러나, 회사별 조정률 산출 시 5개 회계연도별 합산비율을 단순 평균함으로써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5개년도의 합산비율이 A회사는 110, 110, 110, 110, 110이고 B회사는 100, 120, 110, 100, 120이라면 평균은 110으로 A, B회사가 동일하나 B회사의 경우 변동성이 커 위험요인이 더 크므로 조정률 계산 시 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합산비율이 높다는 것은 5개 회계연도의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보다는 보험료 대비 손해액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요구자본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준비금을 늘리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각 사의 손해율은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산업전체 보험가격 위험계수를 산출함.

- 각 회사의 정해진 기간 동안의 사고연도 별 손해율³⁾ 중 최대손해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회사별 위험계수를 절사평균하여 산업전체 보험가격 위험계수로 정함.
 - 95% 신뢰수준을 적용하기 위해 정규분포상의 95%에 해당하는 임계치를 이용하여 신뢰수준을 보정함.

3) 사고발생 후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지급보험금과 향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적립된 지급준비금을 합하여 사고연도 별 발생손해액을 계산하고, 발생손해액을 각각의 사고연도에 해당하는 경과보험료로 나누어 사고연도 별 손해율을 산출함.

3. 해외 사례



가. Sovency II 표준모형

■ 손해보험 보험위험은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해약위험, 대재해위험으로 구분하고 각 위험요인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산출함.

- 보험가격위험은 보험사고의 시기, 빈도 및 심도의 변동(fluctuation)으로 인한 위험이며, 준비금위험은 보험금 확정의 시기와 금액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함.
- 해약위험은 계약자의 해약률 등이 기대치와 다름에 따른 손실 혹은 부채 변경에 대한 리스크를 의미함.
- 대재해위험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사건과 관련된 보험료 및 준비금 가정의 심각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손실 혹은 보험부채 가치의 변동을 의미함.

■ 보험가격 및 준비금위험은 대상금액(V)에 변동성 계수($\rho(\sigma)$)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험종목별 상관계수를 고려함.

- 자동차손해배상, 그 외 자동차, 해상·항공·운송, 화재 등 12개 보험종목으로 구분
- 개별 보험종목에서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25)를 반영하여 개별 보험종목의 표준편차를 산출함.
- 총 표준편차 산출 시 종목 간 공분산행렬을 이용함으로써 분산효과를 반영함.
- 변동성계수는 손해액이 로그노말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99.5% VaR(Value at Risk) 공식을 유도한 것임.
 - 대략 3σ 정도임.

$$\text{보험가격 및 준비금위험}(NL_{pr}) = \rho(\sigma) \times V$$

$$\text{(단, } \rho(\sigma) = \frac{\exp(N_{0.995} \cdot \sqrt{\log(\sigma^2 + 1)})}{\sqrt{\sigma^2 + 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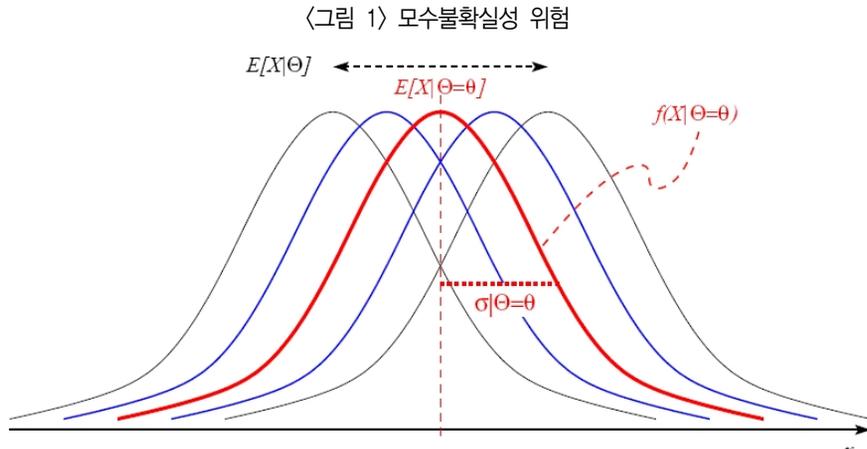
$N_{0.995}$ = 표준정규분포의 99.5% 분위수 (Quantile)

σ : 총 표준편차(개별 보험종목의 표준편차 합산), V: 대상금액

나. Swiss Solvency Test (SST)

■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확률적 위험(stochastic risk)과 모수불확실성 위험(parameter risk)을 반영

- 모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사건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음.
 - 이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확률적 위험과 다르게 사라지지 않는 위험임.
 - 예를 들어, 평년 기온보다 춥거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 사고 건수는 평균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변동을 가져옴.
 - 이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기에 때문에 가입건수를 늘려도 사라지지 않는 위험임.
 - 발생손해액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X)는 모수(θ)에 의해 달라지므로 조건부 확률분포⁴⁾로 나타냄.
- 일반적으로 모수(θ)는 감마 분포나 로그노말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함.



자료: Luder Thomas (2005. 07. 28), 『Swiss Solvency Test in Non-life Insurance』.

■ 보험종목별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분산효과를 반영함.

- Solvency II와 같이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반영

4) $E[X] = E[E(X|\theta = \theta)]$
 $Var[X] = Var[E(X|\theta = \theta)] + E[Var(X|\theta = \theta)]$

4. 시사점



■ 국내 RBC 보험위험액 산출 방법에 위험세분화, 분산효과, 확률적 위험과 모수불확실성 위험의 분리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내 RBC의 경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만 구분하고 있음.
 - Solvency II의 경우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이외에도 해약위험과 대재해위험을 반영하고 있음.
- 국내 RBC의 경우 보험종목 간 상관계수를 1로 반영하여 분산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Solvency II나 Swiss Solvency Test의 경우 보험종목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분산효과를 고려하고 있음.
- 반면,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음.
 - 그에 반해 Solvency II의 경우, 서로의 상관계수를 0.25로 가정하여 상관관계를 반영
- 국내 RBC의 경우 위험계수 산출 시 모수불확실성 위험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음.
 - Swiss Solvency Test의 경우 확률적 위험과 모수불확실성위험을 분리하여 모형에 반영하고 있음.
 - 모수불확실성 위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임.
 - 리스크 속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RBC 위험계수 산출 시 모형을 현실화 하는 방안과 각 사별 조정률에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RBC의 경우 산업전체 위험계수 산출 시 각 사의 손해율은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함.
- 조정률 산출 시 5개 회계연도별 합산비율을 단순 평균함으로써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함. Kiri

〈부록〉 국내 RBC 손해보험 보험위험액 산출방법

가. 보험위험액 산출방법⁵⁾

- 보험위험액은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

$$\text{보험위험액} = \sqrt{\text{보험가격위험액}^2 + \text{준비금위험액}^2}$$

-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을 각각 산출한 후,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보험위험액을 산출함.
-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종목 구분별로 보험위험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

$$\text{보험가격위험액} = \left(\sum_{\text{보험종목구분}} \text{보유보험료} \times \text{조정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

- 단, 보유보험료⁶⁾가 수입보험료의 50% 미만일 때에는 수입보험료의 50%로 적용함.
- 보험종목 구분별로 구분한 후 종목 간 상관계수를 1로 가정하여 단순 합계함.
- 준비금위험액은 보험종목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

5)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개정판(2011. 7), 금융감독원 참조.

6)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 + 수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환입)

보유율 =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 + 수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여기서 보유율은 일반손해보험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함.

$$\text{준비금 위험액} = \left(\sum_{\text{보험종목구분}} \text{보유지급준비금} \times \text{준비금 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7)}$$

- 준비금 위험계수는 보험종목별 위험액 산출을 위한 표준적인 위험계수를 나타냄.
 - 보험가격위험계수와는 달리 별도의 조정과정 없이 그대로 적용

나. 위험계수 산출방법⁸⁾

■ 보험가격 위험계수는 보험상품 가격이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과거의 보험영업 손익을 통해 측정하고, 그 중 최악의 손실을 요구 자본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 각 회사의 정해진 기간 동안의 사고연도 별 손해율⁹⁾ 중 최대손해율을 이용하여 회사별 위험계수¹⁰⁾를 산출
 - 회사별 최대손해율에 회사별 평균손해율, 산업전체 최대손해율, 회사별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회사별 위험계수 산출
- 손해보험사 중 단종보험사 등 규모가 작은 회사를 제외한 원수 10개사를 대상으로 회사별 위험계수를 산출한 후, 최대, 최소값을 각각 1개씩 제외한 절사평균하여 산업전체 보험가격 위험계수로 선택
 - 이는 각 사의 손해율은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한 것임.
- 95% 신뢰수준을 적용하기 위해 정규분포상의 95%에 해당하는 임계치를 이용하여 신뢰수준을 보정
 - 이는 손해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함.

7) 보유지급준비금 = 원수지급준비금 + 수재지급준비금 - 출재지급준비금(재보험자산Ⅱ)

보유율 = 보유지급준비금 ÷ (원수지급준비금 + 수재지급준비금)

여기서 보유율은 일반손해보험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함.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2009. 4), 별첨 1, 금융감독원 참조.

9) 사고발생 후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지급보험금과 향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적립된 지급준비금을 합하여 사고연도 별 발생손해액을 계산하고, 발생손해액을 각각의 사고연도에 해당하는 경과보험료로 나누어 사고연도 별 손해율을 산출함.

10) 위험계수=(회사별 손해율 보정값* + 산업전체 손해율 보정값**)/2 + 회사별 사업비율 - 1

* 회사별 손해율 보정값 = (회사별 최대손해율 + 회사별 최대손해율 × 보정계수***)/2

** 산업전체 손해율 보정값 = (산업전체 최대손해율 + 산업전체 최대손해율 × 보정계수)/2

*** 보정계수=회사별평균손해율/산업전체평균손해율

■ 준비금위험계수는 지급준비금이 미래 지급될 보험금규모를 대비해 충분히 적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요구자본을 산정하기 위함임.

- 사고연도 별 지급준비금변동률을 이용하여 위험계수를 산출함.
 - 사고연도 별 발생손해액은 보험금지급이 완료되어 사고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최종 지급될 보험금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지급준비금은 추정을 통해 산출
 - 따라서 동일 사고 계약군의 특정 시점 간 발생손해액을 비교하면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충실도 평가가 가능하며, 두 시점간의 발생손해액 증감액을 이용하여 경과기간별 지급준비금 변동률¹¹⁾ 파악이 가능함.
- 지급준비금변동률을 이용하여 보험가격위험계수 산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¹²⁾ KIRI

11) 지급준비금 변동률 = 기중 발생손해액 증감액/기초 지급준비금

12) 위험계수=(회사별 변동률 보정값* + 산업전체 변동률 보정값**)/2

* 회사별 변동률 보정값 = (회사별 최악변동률 + 회사별 최악변동률 ×보정계수)/2

** 산업전체 변동률 보정값 = (산업전체 최악변동률 + 산업전체 최악변동률 ×보정계수)/2

*** 보정계수=회사별 평균변동률/산업전체 평균변동률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조영현 연구위원 / 이해은 연구원

요약

-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저금리 환경이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러한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운용수익 제고와 리스크 관리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본고는 미국 생보사와 국내 생보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운용자산 다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성과는 국내 보험사에 비해 위험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았음. 미국 생보사는 국공채 등 무위험 자산의 비중이 낮고 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 특징임. 특히, 미국 생보사는 보유채권 중 BBB/Baa 이하의 채권 비중이 35%에 이르는데, 이러한 비중은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음. 미국 생보사는 채권투자 시 다양한 등급에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조정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생보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국공채와 특수채의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소형사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음. 투자성과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험가중자산비율이 가장 낮은 외국사의 위험조정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보다 긴 기간의 성과를 비교할 경우,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중소형사가 가장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 관찰되었음. 즉, 국내 생보사의 성과를 관찰한 결과, 자산배분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자산의 다변화가 반드시 투자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고 채권시장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낮은 경우에 안정성 위주의 채권투자가 효율적일 수 있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생보사의 투자성과가 그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투자 시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을 지속적으로 부담함으로써 높은 위험조정 투자성과를 달성하는 미국 생보사의 자산배분 전략은 국내 보험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국내 생보사는 경기가 회복기이거나 호황기일 때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배분을 하여 효율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향후 미국 생보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채권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발달과 보험사의 투자 능력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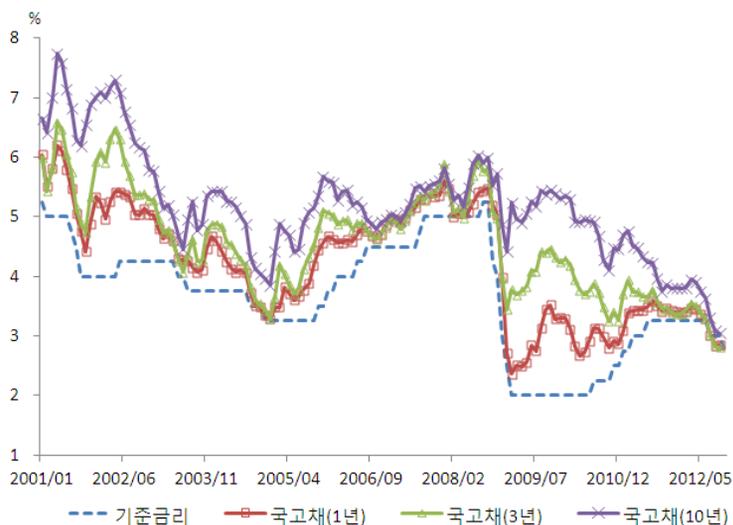
1. 검토배경



■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저금리 환경이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실제로 국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공채의 수익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장단기 금리차가 매우 줄어든 상황
- 2012년 10월 기준금리가 2.75%로 인하되었으며, 10월 24일 현재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01%로써 1년 만기 국고채와의 금리차가 21bp에 불과

(그림 1)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자료: 한국은행.

■ 저금리 환경에서 국내 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의 다변화를 통하여 자산운용성과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생명보험 대형 3사는 구체적으로 해외부동산, 해외채권 투자 및 채권투자 다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

1) 매일경제 (2012. 8. 24), 「저금리시대 고수익·고위험 포트폴리오는 필패」.

- 투자성과를 제고하는 것은 유사 상품을 제공하는 타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필수적
- 위험조정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자산배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성과 제고 이외에도 상품의 조정을 통해 조달비용(funding cost)을 낮추는 것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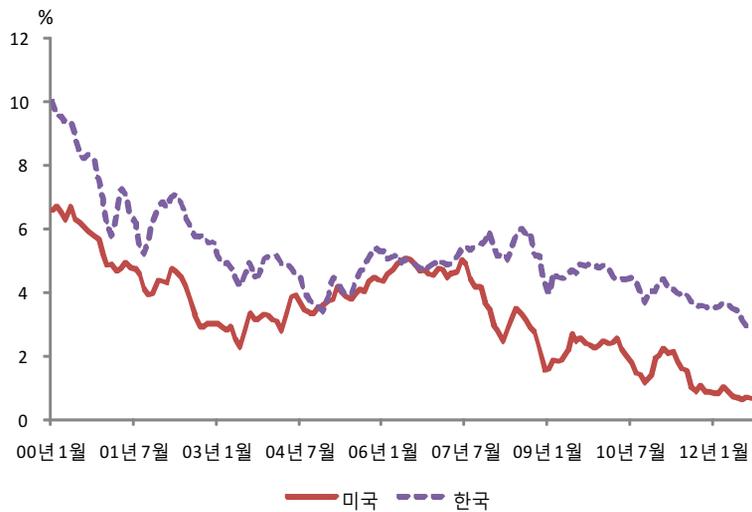
■ 본고는 미국 생보사와 국내 생보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운용자산 다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성과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금리 환경은 국내 생보사와 유사함.

- 최근 10여 년간 미국의 국고채 금리 변동은 우리와 유사하며 금리 수준은 다소 낮음.

〈그림 2〉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자료: 한국은행,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성과는 국내 생보사에 비해 위험대비 초과수익률이 높음.

- 국내 생보사들의 초과수익률은 2000년대 들어서 변동성이 낮아지고 평균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미국에 비해 다소 낮은 샤프비율을 보임.

〈표 1〉 미국과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성과

(단위: %)

구분	운용수익률		국고채 수익률(1년)	초과수익률		샤프 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990~2010	미국	7.08	1.21	4.00	3.07	1.36	2.26
	한국	9.42	2.85	8.76	0.67	2.60	0.26
2000~2010	미국	6.12	0.68	2.77	3.36	1.56	2.15
	한국	6.96	1.35	4.68	2.27	1.17	1.94

주: 초과수익률은 운용수익률-국고채 수익률, 샤프비율은 초과수익률의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
 자료: ACLI, 생명보험협회.

■ 미국 생보사들은 국공채 등 무위험 자산의 비중이 낮고 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 특징

- 이에 비해 국내 생보사는 40% 가량이 국공채로써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산배분
 - 물론 이러한 차이는 채권시장의 발달 정도와도 연관이 있음.
- 미국 생보사의 경우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음.
 - 주식의 경우 국내 생보사는 관계사 주식 보유로 인하여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표 2〉 미국과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구성

(단위: %)

구분	채권			주식	대출	부동산	기타운용 자산	비운용 자산
	국공채	회사채	기타					
미국	10.6	46.6	15.2	2.39	12.83	0.58	7.15	4.64
한국	40.9	6.7	11.3	6.09	20.13	3.66	3.68	7.55

주: 2010년 말 기준, 일반계정, 총자산대비 비중, 미국 국공채에는 해외국채 포함.
 자료: ACLI, 금융감독원.

■ 미국 생보사들의 보유채권 중 BBB/Baa 이하 채권의 비중이 35%에 이르는데 이러한 비중은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관찰됨.

● 국내 생보사들은 대부분 AA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

〈표 3〉 미국 생명보험회사 보유 채권의 등급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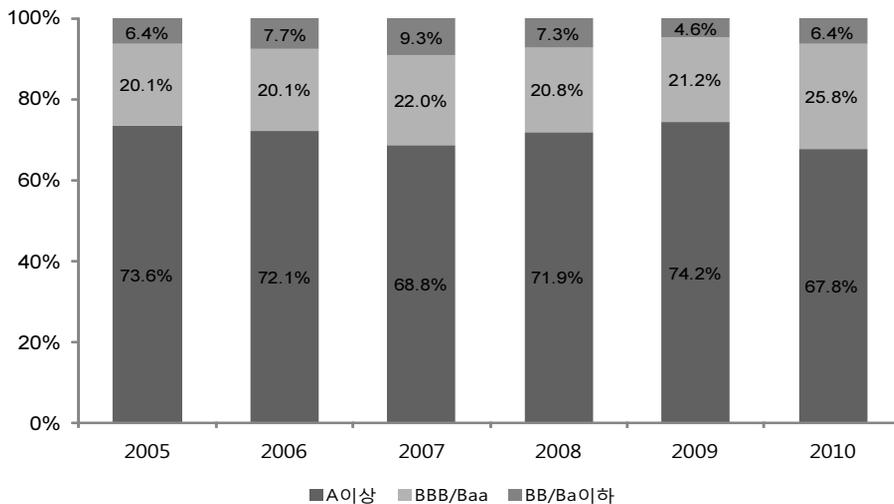
(단위: %)

연도	A이상	BBB/Baa	BB/Ba	B	CCC이하
2000	64.3	28.3	4.0	2.7	0.7
2007	69.3	25.0	3.4	1.7	0.7
2008	67.7	26.0	3.6	1.7	1.0
2009	65.6	26.9	4.3	2.1	1.1
2010	65.8	27.3	4.0	1.9	1.0

주: 일반계정.
자료: ACLI.

● 미국 생보사가 매년 새로 구매하는 채권 중 30% 가량은 BBB/Baa 이하 등급
- 전략적으로 낮은 등급의 채권을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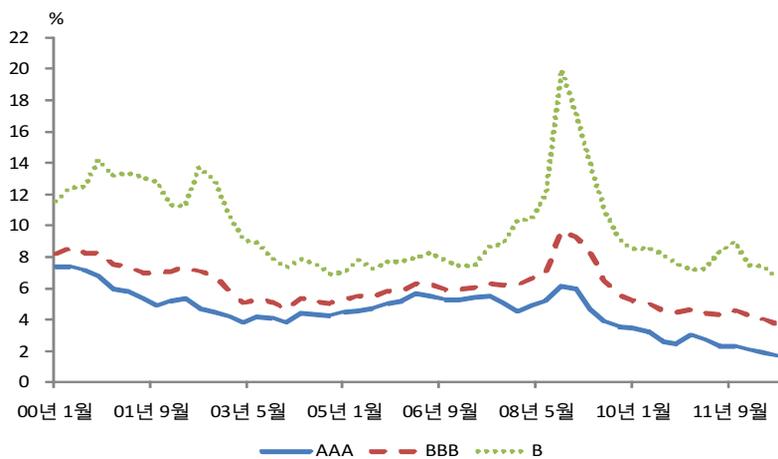
〈그림 3〉 미국 생명보험회사 신규 구매채권의 등급 분포



자료: BlackRock(2011), "Insurance company investing in a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 미국 생보사는 채권투자 시 다양한 등급에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조정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4〉 미국 회사채 수익률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3.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 금융위기 이후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가중자산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 안전자산인 국공채와 특수채의 비중이 증가
 - 대부분의 특수채는 국공채와 마찬가지로 무위험자산으로 분류
- 회사채와 금융채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외화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

〈표 4〉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 구성비와 위험가중자산비율

(단위: %)

구분	09Q1	10Q1	11Q1	11Q2	11Q3	11Q4	12Q1	12Q2
현금과예치금	4.8	3.5	3.8	4.4	4.1	4.4	4.0	4.2
주식	5.3	6.0	6.5	5.9	5.4	5.9	5.8	5.6
국·공채	23.5	25.0	26.1	25.7	25.6	25.4	23.8	23.5
특수채	14.0	17.0	19.5	20.2	20.8	21.2	22.4	23.0
금융채	3.2	3.0	3.1	3.1	3.1	3.1	4.5	4.2
회사채	4.2	4.1	4.6	4.6	4.8	5.2	5.6	5.4
수익증권	4.8	5.3	4.3	4.3	4.0	3.4	4.7	5.0
외화유가증권	9.0	7.1	6.0	5.8	6.1	5.7	5.2	5.2
대출채권	25.3	23.4	21.4	20.9	21.0	20.8	19.5	19.3
부동산	4.7	4.3	3.9	4.0	3.9	4.0	3.6	3.5
위험가중자산비율	39.3	37.9	35.6	34.8	34.2	34.5	34.8	34.8

자료: 금융감독원.

■ 회사그룹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국공채와 특수채의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소형사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2012년 기준으로 대형사에 비해 중소형사는 국공채와 특수채의 비중이 낮고, 외국사는 국공채와 특수채의 비중이 2/3 이상인 것이 뚜렷한 차이점
- 외국사는 위험가중자산비율이 낮아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사는 위험가중자산비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

〈표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구성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09Q1	12Q2	09Q1	12Q2	09Q1	12Q2
현금과예치금	4.7	3.2	5.6	9.4	4.8	3.3
주식	6.3	8.4	4.1	1.7	1.2	1.6
국·공채	22.9	23.5	7.6	15.9	45.7	44.3
특수채	12.6	20.0	14.5	22.1	21.0	24.5
금융채	2.2	1.7	5.9	5.4	5.2	4.1
회사채	3.6	4.0	7.6	7.8	3.8	8.2
수익증권	3.9	3.6	11.9	9.2	1.3	0.8
외화유가증권	10.9	7.4	5.5	3.0	2.9	1.6
대출채권	27.0	22.7	28.8	19.4	11.5	10.3
부동산	5.3	4.9	4.7	2.8	1.6	0.8
위험가중자산비율	37.0	34.9	45.6	34.5	19.4	19.4

주: 1) 대형사는 삼성, 교보, 한화.
 2) 위험가중자산비율은 각 회사의 위험가중자산비율을 단순평균.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험가중자산비율이 가장 낮은 외국사의 위험조정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공채와 특수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외국계 생보사의 운용수익률 변동성이 가장 안정적
- 중소형사는 자산배분을 빠르게 변화시킴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며 초과수익을 확보하여 샤프비율이 대형사에 비해 다소 높음.

〈표 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성과 1

(단위: %)

구분	운용수익률		국고채(1년) 수익률 평균	초과수익률		샤프 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형사	5.62	0.35	3.14	2.49	0.56	4.45
중소형사	5.48	0.32		2.34	0.48	4.92
외국사	5.22	0.26		2.09	0.41	5.08

주: 1) 초과수익률은 운용수익률-국고채 수익률, 샤프비율은 초과수익률의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
 2) 2009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의 성과.
 자료: 한국은행, 업무보고서.

■ 보다 긴 기간의 성과를 비교할 경우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중소형사가 가장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을 달성함.

- 2005년 이후 중소기업의 자산배분은 평균적으로 대형사나 외국사에 비해 국공채와 특수채의 비중이 낮으며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외국사는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이 가장 낮았음.
- <표 7>의 결과는 시기에 따라서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줌.
 -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위험가중자산비중과 반비례하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

(표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성과 2

(단위: %)

구분	운용수익률		국고채(1년) 수익률 평균	초과수익률		샤프 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형사	5.80	0.33	3.99	1.81	0.86	2.11
중소형사	5.88	0.49		1.89	0.67	2.81
외국사	5.03	0.46		1.04	1.15	0.91

주: 1) 초과수익률은 운용수익률-국고채 수익률, 샤프비율은 초과수익률의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

2) 2005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의 성과.

자료: 한국은행, 업무보고서.

- 국내 생보사의 성과를 관찰한 결과, 자산배분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위험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자산의 다변화가 반드시 투자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은 아님.

- 자산시장의 발달정도와 투자시기에 따라 실현된 위험조정수익률은 달라짐.

-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고 채권시장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안정성 위주의 채권투자가 효율적일 수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생보사의 투자 성과도 이와 일치

■ 그룹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 시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을 지속적으로 부담함으로써 높은 위험조정 투자성적을 달성하는 미국 생보사의 자산배분 전략은 국내 보험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미국 생보사의 경우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1/3정도의 채권을 BBB 이하의 등급으로 보유
 - 단, 5년 누적 부도율로 볼 때 미국의 BBB등급 채권은 국내의 A등급 채권과 유사하며, 미국의 BB등급이 국내의 BBB등급과 유사함은 주의해야 할 점임.²⁾
- 국내 생보사는 경기가 회복기이거나 호황기일 때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배분을 하여 효율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향후 미국 생보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채권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발달과 보험사의 투자 능력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BBB등급 이하의 채권 발행이 미미한 수준³⁾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 보험사나 연기금과 같은 장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회피하기에 비우량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도 있음.
- A등급 이하의 채권에 대한 위험계수가 4~6%에 이르는 것도 보험회사가 투자하기에 부담이 되는 요소
 - A등급과 BBB등급의 위험계수를 차별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A등급 이하의 채권에 대한 선별 능력을 키우는 것도 선결과제 KIRI

2) 금융투자협회 (2012. 3), 「부도율 및 회수율 분석 보고서」, <표 11, 12> 참조.

3) 2009. 3~2011. 2 기간에 BBB등급 이하의 회사채 발행액은 15조 원 정도로서 전체 회사채 발행규모의 12% 가량. 임형준(2011), 「비우량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참조.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과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 이해은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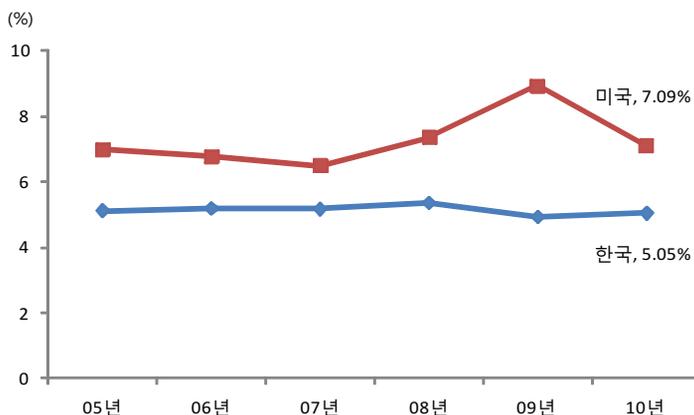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일부 상품에서 역마진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와 대체 투자처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가계연체율 증가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주택시장과는 달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대체투자처로서 기관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본고는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 부동산 투자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함.
-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운용자산 대비 3.60% 수준으로 보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 부동산 투자 이익률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수익률보다 낮은 3.5%에 불과한데, 이는 오피스 시장 평균 수익률 6.97%에 비해 낮은 수준임. 보험사별로는 그룹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보험회사와는 달리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 이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 생명보험회사가 시장평균을 밑도는 낮은 부동산 투자 이익률을 기록한데는 투자용 부동산과 영업용 부동산이 혼재되어 투자이익률의 개념이 희석되고 시가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자본수익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됨. 또한 부동산의 특성상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치의 변동성이 커 자본위험 분류 시 채권보다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전략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효과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음. 다만, 보험회사 특유의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더불어 요구됨. 따라서 위험·수익군별로 핵심(Core), 가치성장(Value-added), 기회(Opportunistic) 자산 등으로 부동산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선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부동산 투자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의 탈규제라는 국제화 추세와 맞물려 해외 투자의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자회사 설립의 승인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저금리 시대에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경우 대체 투자 수익원 발굴에 주력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Portfolio Diversification)와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의 장점을 앞세워 대체 투자시장으로서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과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 양상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의 투자동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자본환원율(Cap Rate)로 해석되는 소득수익률 추세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오피스 시장은 5~7% 전후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림 1〉 한국과 미국 오피스 시장 소득수익률 추이



주: 1) 소득수익률 = 순영업소득(임대료 등 수입 - 영업경비)/기초자산가격

2) 미국은 매년 12월 monthly closed cap rate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Real Capital Analytics.

- 보험회사를 비롯해 대체 투자처 발굴에 나선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화생명 (구 대한생명)은 지난 8월 영국 런던 금융업무지구인 씨티의 우드스트리트에 있는 국제법률회사 에버쉐즈의 본사건물을 2,500억 원에 매입

- 삼성생명은 삼성물산과 협력하여 중국 베이징 중심상업지역 건축부지에 57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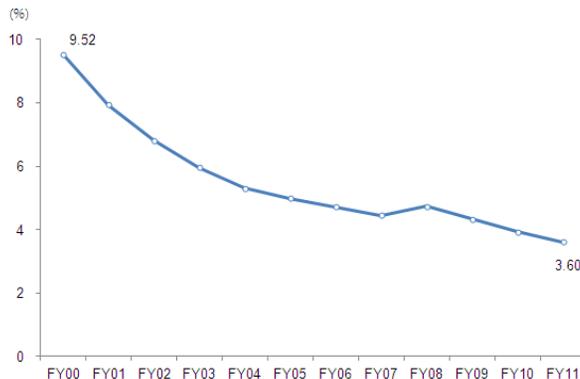
- 본고는 저금리 시대에 대체투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현황을 분석·점검하고 부동산 투자 및 향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2.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현황

-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경제발전 및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000년대 이후 대폭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 전체 운용자산 대비 투자비중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운용자산규모는 최근 10년 새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 투자액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비중이 축소
 - 국내 생명보험 운용자산 규모는 FY2000 100조 원에서 FY2011 383조 원으로 3배 이상 급성장
 - 운용자산 가운데 부동산 투자는 동기간 9조 5,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운용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0 9.52%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FY2011 3.60%까지 떨어졌음.

〈그림 2〉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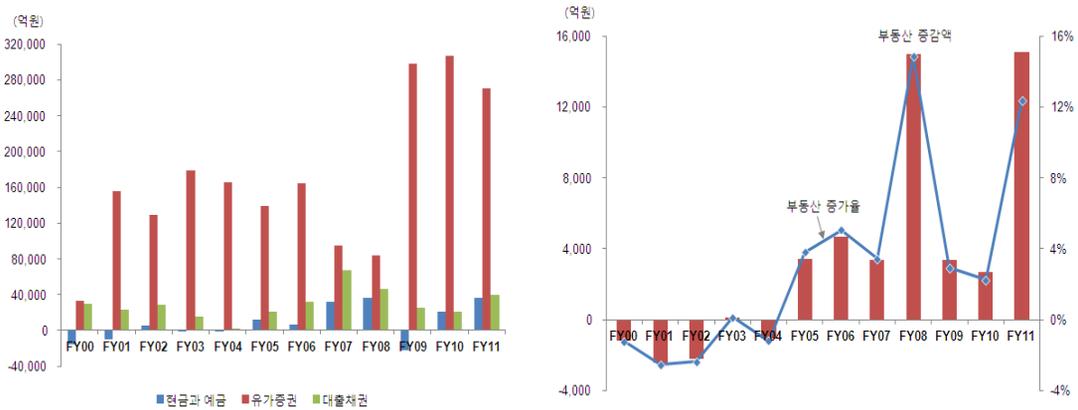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규모는 최근 들어 대출채권과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카드대란을 겪었던 2004년까지 부동산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FY2008 1조 5,000억 원 가량 늘어남.
 -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FY2011 1조 5,000억 원 규모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

〈그림 3〉 운용자산별 증감액과 부동산 자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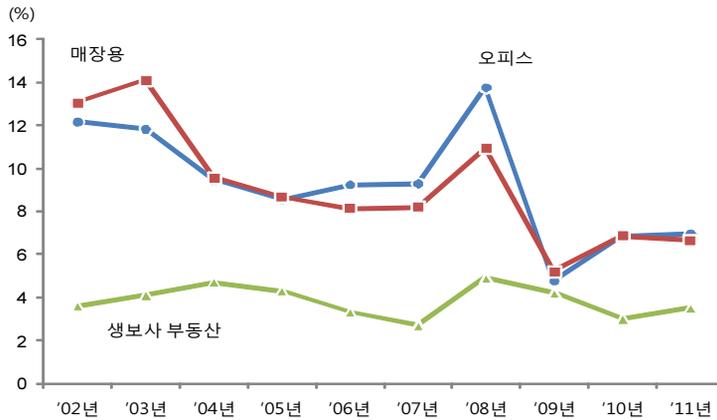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는 부동산을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해 최소한의 투자수익을 방어하는 보수적인 수단으로 운영하는 성향을 보임.

■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부동산 투자 이익률은 오피스시장 평균 수익률과 괴리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6.97%, 매장용 투자수익률은 6.66%를 기록한데 반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이익률은 3.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생보사 부동산 투자와 오피스·매장용 부동산 시장평균 수익률 비교



주: 1) 오피스·매장용 투자 수익률 = 소득수익률 + 자본수익률
 소득수익률 = 순영업소득(임대료 등 수입 - 영업경비)/기초자산가격
 자본수익률 = 자산가격변동액/기초자산액
 2) 생보사 부동산 투자 이익률 = 투자이익 ÷ (연초자산 + 연말자산 - 투자이익) × 1/2 × 100
 자료: 국토해양부, 생명보험협회.

■ 생해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가 오피스시장 평균 수익률을 밑도는 이유는 자산분류상 투자용 부동산과 업무용 부동산이 혼재되어 수익률의 공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재무제표 상 부동산은 현재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업무시설용은 자가사용분이 임대수익에서 누락되면서 전체 부동산 자산의 소득수익률이 낮게 나타남.
- 부동산의 상당수가 장부가 평가방식에 머무르고 시가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자산의 자본수익률 부분이 제대로 계상되지 않은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 그룹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 이익률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데 반해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룹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은 3~5% 전후의 완만한 부동산 투자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FY2011 각각 4.08%와 2.79%를 기록함.
- 반면에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은 계열사를 보유한 대형 보험회사보다는 이익률 변동폭이 큼.
 - FY2011 교보생명은 3.45%, 미래에셋생명은 2.24% 그리고 알리안츠생명은 2.79%를 기록함.
 - 미래에셋(FY2009)과 알리안츠(FY2002)의 경우 투자용 토지의 지가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자이익률을 기록했음.

〈표 1〉 주요 생명보험회사별 부동산 투자 이익률 추이

구분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평균 수익률
삼성	3.42	3.62	5.73	3.68	4.08	2.89	5.61	5.37	3.77	4.08	4.23 (0.99)
한화	2.31	2.32	2.88	2.29	1.35	0.65	2.06	3.14	3.26	2.79	2.31 (0.81)
교보	2.89	6.19	3.6	6.77	1.81	3.52	1.49	1.81	1.16	3.45	3.27 (1.92)
미래에셋	0.12	3.83	7.26	3.62	2.71	1.96	1.99	21.16	2.40	2.24	4.73 (6.06)
알리안츠	11.74	2.68	3.15	2.88	4.60	2.18	5.04	5.16	2.47	2.79	4.27 (2.84)

주: 1) 생보사 부동산 투자이익률 = 투자이익 ÷ (연초자산 + 연말자산 - 투자이익) × 1/2 × 100
 2)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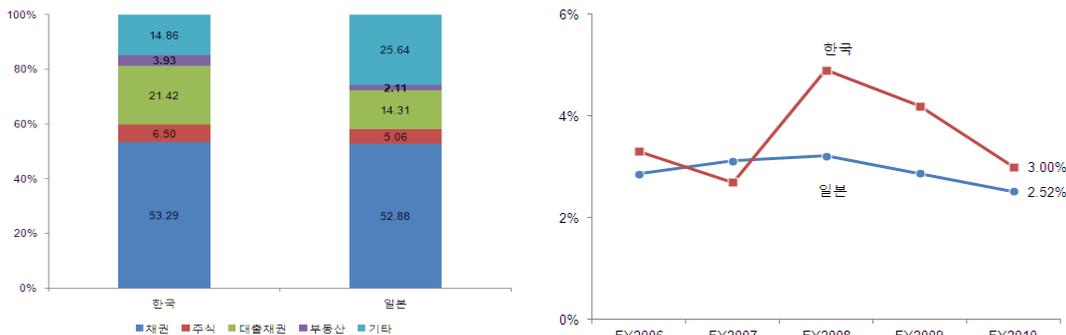
3. 외국사례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비중과 투자이익률 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FY2010 2.11%로 한국(3.93%)에 비해 낮고 부동산 투자이익률 면에서도 일본(2.52%)이 한국(3%)보다 낮게 나타났음.

〈그림 5〉 한국과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구성 현황과 부동산 이익률



자료: 생명보험협회.

■ **일본 금융청은 2010년 10월 보험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일본 금융청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보험회사의 현지법인에 대하여 전액출자를 의무화 해왔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앞으로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전체 자금조달액의 50% 이상만 출자하면 자회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짐.
- 한편, 47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2010년 9월 말 기준 자산운용상황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 투자액은 6조 5,790억 엔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함.
 - 일본 생보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신흥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전문회사 및 합작회사의 설립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가 보험회사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기관투자가 대상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0년 9월 보험회사의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총자산의 10%까지 허용한다고 공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보험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및 보험사업 관련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 반면,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나 주거용 부동산 및 비상장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
- 한편, 중국 보험회사들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전문 관리팀을 구성하고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현재 중국에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2위 생명보험그룹인 프루덴셜 파이낸셜은 2010년 6월에 1억 5,000만 파운드(2억 2,500만 달러)를 유럽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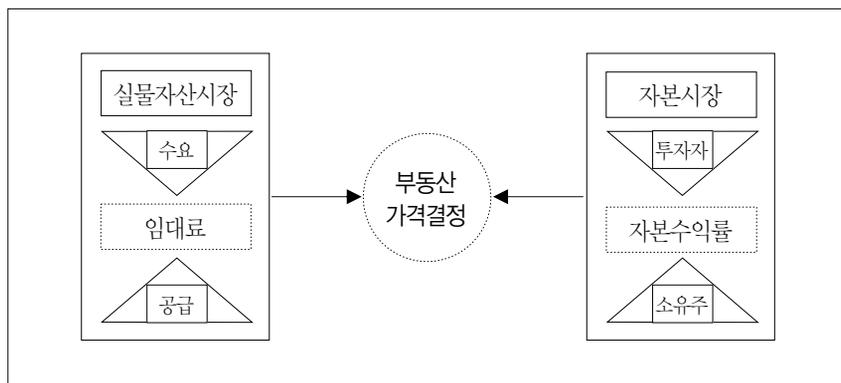
- 다른 금융권이 이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려는 것과 비교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있음.
- 잭 테일러 프루덴셜 부동산 투자 부문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자금 부족 현상으로 인해 투자 자금을 빌리기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창출되고 있다"고 말함.
 - 미국 최대 보험사인 메트라이프 역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최고점에서 부터 40%까지 폭락한 이후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함.

4. 부동산 투자 시 고려사항과 규제 현황



- 부동산 가치는 실물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며 임대료 수익과 자본수익률 두 가지 요인이 투자수익을 결정함.

〈그림 6〉 부동산 가격결정 채널



자료: Galtner and Miller(2007), “Commercial Real Estate Analysis & Investments” 재정리.

- 부동산 투자에 따른 편익과 위험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됨.
 - 편익측면에서 부동산은 주식·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장기 투자 시 실물자산 특유의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해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위험측면에서 부동산은 가치의 변동성이 커 대체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며 현금화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이 상존하며, 특히 실물 부동산(사모형 부동산, private real estate market) 시장은 분산화(segmentation)된 시장으로 소유주와 투자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고 지역성이 강해 부동산 규제와 조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따름.

- 주식, 채권 등 기타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부동산은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portfolio diversification) 차원에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 UBS real estate research(2004)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부동산을 편입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이 0.2%p~0.5%p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보험회사 특유의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차원에서 부동산 자산의 위험요인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 1978년~2004년 미국 시장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개선효과

자산군	부동산 제외	실물부동산 편입	REITs 편입
채권전체	39.7%	22.1%	20%
해외주식	7.5%	5.7%	5%
국내 대형주	45.3%	49.8%	47.6%
국내 소형주	7.5%	7.5%	7.5%
부동산	-	15%	12.4%
REITs	-	-	7.5%
포트폴리오 평균	12.8%	13.0%	13.3%
포트폴리오 표준편차	10.3%	10.3%	10.3%

주: 실물부동산은 NCREIF property index, REITs는 NAREIT Equ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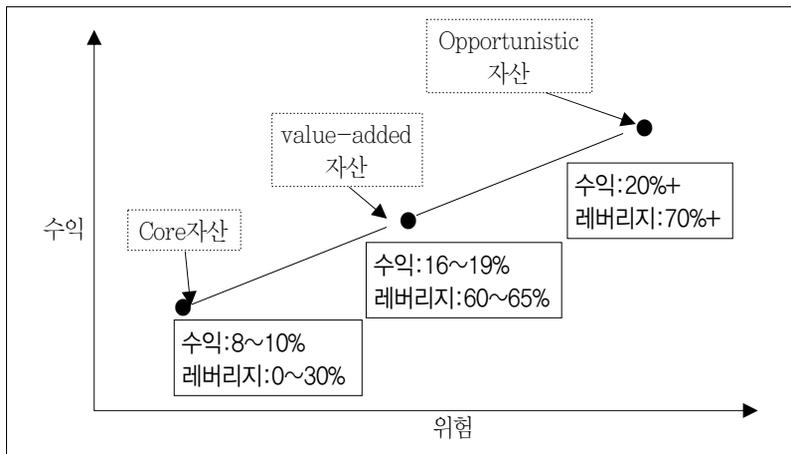
채권 및 주식은 각각 Lehman Aggregate Bond Index, EAFE International Index, S&P500 Stock Index.

자료: UBS real estate research(2004) 재정리.

■ 부동산의 위험·수익 분류에 따르면 핵심(Core), 가치성장(Value-added), 기회(Opportunistic) 자산 등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위험군별로 선별적이고 전문화된 투자 접근법이 요구됨.

- Core 자산은 입지, 시설 용도 및 입주자 수준 등에서 높은 등급의 상업용 부동산으로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과 자산가치의 증대가 기대되는 자산을 의미함.
 - 장기간 동안 건물 재건축가치(replacement cost)의 증대 및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기타 자산군에 비해 우수한 장기적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제공함.
- Value-added 자산은 용도 및 시장성 측면에서 현재 상태로는 가치가 낮으나 신축 재개발 혹은 임차인 갱신을 통해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경우 Core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함.
 - Value-added 자산은 Core 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높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창의성 있는 전문역량의 투입을 통해 투자성과의 극대화가 기대됨.
- Opportunistic 자산은 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보유 부동산이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투자의 핵심은 효과적인 가치평가로 저가 부동산을 인수, 재개발과 창의적 자산관리를 통해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그림 7〉 부동산 위험·수익 유형별 분류



자료: Martin Hoesli & Cloin Lizieri(2007), "Real Estate in the Investment Portfolio".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 모두가 가능하며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상 부동산의 위험계수는 채권과 주식 중간 정도의 위험군으로 분류됨.

- 보험업법 시행령 (2012. 9. 10) 제 49조 1항에 따르면 업무시설용 부동산은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영업장, 연수시설,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속함.
- 투자사업용 부동산은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부대시설을 통칭함.
 - 2007년 개선된 시행령 상에서는 부동산의 소유를 총자산의 15%, 투자 사업용 부동산은 총자산의 10%, 부동산 건당 총자산의 2%로 제한토록 규정함.
- RBC 제도상 부동산의 위험계수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정도인 6%가 적용됨.
 - 기타 자산의 위험계수는 채권과 장외파생금융거래 (신용등급별로 0.8~6%), 주식(유동성 및 분산도 충족 시 8% 또는 미충족 시 12%), 소매대출(3%), 주택담보대출(1.4%) 등으로 요약됨.

5. 결론 및 시사점



- 부동산 자산은 주식, 채권 등 기타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다변화(Portfolio Diversification)와 수익률 개선 차원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저금리 시대에 대체투자처로서 주목해야할 대상임.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이익률은 오피스 시장평균 수익률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재무제표 상 자산분류 시 투자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이 혼재되어 있고 생명보험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인 투자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한다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 핵심(Core), 가치성장(Value-added), 기회(Opportunistic)자산 등 부동산의 위험·수익 유형에 따른 전문화된 위험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발굴과 해외 부동산 전문채널과의 교류 협력 등 다각화된 부동산 투자방식이 요구됨.
- 주요국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시류에 발맞춰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해외부동산 자회사 설립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 kiri



후취형 변액연금상품도입에 따른 추가적 위험과 관리방안

윤상호 연구위원 /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 수익률 관련 보고서 발표 이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선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납입보험료대비 수수료를 선취한 후 적립하는 구조로 계약초기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품구조를 갖고 있음.
- 소비자의 다양한 투자성향 및 유동성 선호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하지만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도입 시 보험사는 각종 최저보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외에도 사업비 조달에 사용되는 부가보험료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불일치 문제라는 추가적 위험에 노출이 됨.

- 납입보험료에서 신계약비 등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선취형 변액연금상품과는 달리 후취형은 투자적립금에서 수취하기에 미래수입의 변동 및 불확실성에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노출됨.
- 미국 Hartford사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급속한 상각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음.

■ 따라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부가보험료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

-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판매에 대한 모집수당의 지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1차적으로 현금불일치 문제의 심도를 최소화할 필요
-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판매로 발생하는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실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회계적 기준을 정비하여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주는 영향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함.
- 또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활동에 따른 위험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위험관리에 활용하는 동시에 이연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위험이전을 시도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국내 변액연금상품은 2002년도 하반기 최초로 출시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지난 4월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상품 수익률 비교 발표 이후 소비자의 요구가 충족되는 상품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었음.¹⁾

- 변액연금상품은 투자를 통한 수익성과 보증옵션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한 금융상품으로서 계약자의 상충된 선호도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금년 초 반까지 급속도의 성장세를 이어왔음.

〈표 1〉 국내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보험료	4,698.8	10,001.4	39,417.7	50,420.6	82,497.5	79,433.3	84,785.8	101,580.4	112,767.3
증가율	-	112.9%	294.1%	27.9%	63.6%	-3.7%	6.7%	19.8%	11.01.8%

- 일반 연금보험 및 타 금융권 투자 상품과 비교해 변액연금상품의 수요결정요인을 살펴보면 (a) 자본시장활용을 통한 투자성과 및 투자의 투명성 확보, (b) 타 금융권 투자 상품에 비교해 유리한 세후수익률, (c) 연금개시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 및 최저보증옵션들을 통한 보장성 확보, 그리고 (d) 은퇴 시 연금수취 옵션 등이 존재함.

〈표 2〉 변액연금상품의 수요결정요인

구분	변액연금보험	전통연금보험	투자펀드
투자유인	○	X	○
투자의 투명성	△	X	○
세계유인	○	○	X
보장성 기능	○	○	X
은퇴 시 연금수취 옵션	○	○	X

1) 변액연금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5월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제시되었음(보험연구원, 2012. 5. 18, 『소비자 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연금상품의 수익률이 타 금융권 투자 상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몇몇 상품들의 경우 투자적립금의 현재가치가 총납입보험료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금융소비자연맹 발표는 변액연금상품이 타 금융권 투자 상품과는 달리 장기투자 목적에 기반을 둔 상품임을 간과하고 있음. 하지만 투자원금으로 인식되는 총납입보험료보다도 투자적립금의 현재가치가 작다는 것은 변액연금의 투자 및 상품가치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²⁾
- 총납입보험료보다 적립금이 적은 것은 선취 수수료(front-end loading commission) 부과방식으로만 변액연금상품이 출시되어 운용되는 국내시장의 특성으로 가입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임.
- 선취수수료 방식이란 납입보험료에서 부과보험료 중 각종 수수료를 선차감한 후 적립 및 투자하는 방식이며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모든 변액연금상품은 이 방식만으로 운용되고 있음.
 - 또한 선취되는 수수료들이 계약초기에 집중되는 사업비 차감구조를 갖고 있어 계약초기 투자적립금의 규모가 총납입보험료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품구조를 갖고 있음.
- 계약초기부터 위험보험료만을 차감하고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계약자의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할 것이라 예측되나,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음.
- 후취 수수료(back-end loading commission) 방식이란 납입보험료를 선적립·투자한 이후 투자적립금 대비 각종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변액연금상품이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으로 출시되어 있음.
 - 하지만 변액연금 특별계정의 투자적립금가치가 금융위기 등의 주식시장 변동으로 예상수준보다 급격히 감소할 경우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보험사의 미래수수료 수입가치 또한 떨어지는 특성을 보임.
 - 이는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적립금의 투자성과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최저보증 위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시에 부과보험료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노출됨을 의미함.
 -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계약자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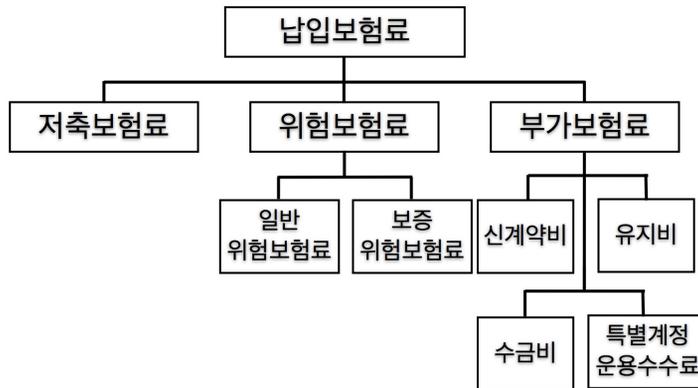
2)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 수익률 비교발표(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 2012. 4. 5)는 2011 2/4분기부터 감소하던 변액연금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KIRI Weekly 제203호, 2012. 10. 15).

- 본고는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영향을 파악하고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도입에 요구되는 선제조건들을 제시하고자 함.

2. 선취형 변액연금의 상품구조

- 선취형 변액연금상품의 납입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보험사는 부가보험료를 통해 신계약비 등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적립하여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이 되며, 위험보험료는 일반 위험보험료와 보증위험보험료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그리고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투자되는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식운용수수료, 채권운용수수료, 그리고 수탁보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선취형 변액연금 납입보험료의 구성



- 선취형 변액연금상품의 수수료는 크게 선취되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후취되는 투자 및 보증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타 금융권의 투자펀드와 비교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음.
 - 변액연금의 수수료 구성은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별계정운용과 관련한 자산운용비용임.

- 보험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전액 보험료 대비 선취되는 반면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후취하고 있음.
-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 보수 및 기타 자산운용 관련 비용이 자산운용비용으로 통합되어 부과되며, 적립금 대비 후취하고 있음.

〈표 3〉 선취형 변액연금과 투자펀드의 수수료 부과 구조

구분	부과형식	사업비내역 (사용용도)	부과율
변액 연금	선취	신계약비 (계약체결비용)	1~7년: 보험료의 6.81% 7~10년: 보험료의 1.5%
		유지 및 관리비 (계약관리비용)	1~15년: 보험료의 5.3% 15~20년: 보험료의 1.5%
		위험보험료 (사망보험금비용)	매월 보험료의 0.5705~3.2020%
	후취	보증비용 (최저보증옵션)	최저연금적립금: 적립금의 연 0.65%,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적립금의 연 0.05%
		자산운용비 (특별계정운용)	적립금의 연 0.715%
해약 시	해지수수료	7년 이내: 미상각 신계약비 공제	
투자 펀드	후취	자산운용비용	적립금의 연 1.88%
	해약 시	해지수수료	2년 미만: 이익금의 20% 2~5년 미만: 이익금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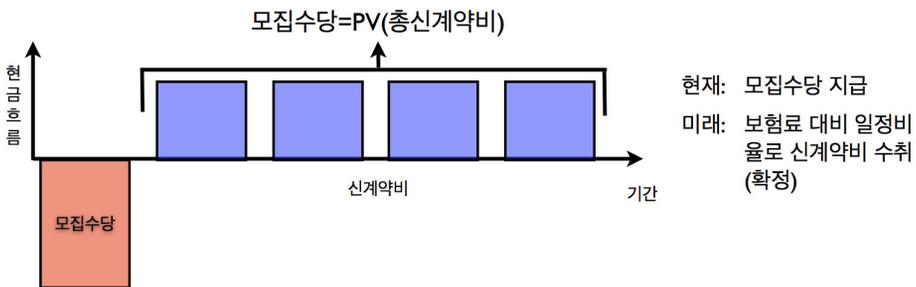
자료: 1) 국내 A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상품.
2) 국내 A자산운용사의 주식혼합 투자펀드.

■ 국내에 출시되어있는 모든 변액연금상품은 선취형으로 일정기간동안 보험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납입 보험료에서 선취하고 나머지 잔액인 저축보험료만이 특별계정 펀드에 투자되어 계약초기의 투자적립금이 납입보험료에 비해 적은 구조임.

- 월납식 선취형 변액연금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10~12%를 신계약비 등의 부과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선차감한 후 88~90%의 저축보험료만으로 적립 및 투자되어지며, 계약자의 투자원금인 총납입보험료와 투자적립금이 같거나 또는 투자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장기적인 유지가 불가피함.
- 보험계약의 유지 및 판매활동 등 계약체결비용은 신계약비를 통해 조달되며 변액연금계약을 유지한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채널에게 모집수당(계약체결비용)이 일시 또는 계약 초년도에 대부분 선지급됨.

- 일시납으로 체결되는 선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신계약비를 일시적으로 선취하여 모집수당으로 판매채널에 선지급이 되며, 계약해지 시 투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하지만 변액연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월납식 선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판매채널에 모집수당을 선지급하고 향후 월납보험료에서 일정기간 신계약비로 차감하여 조달함.

〈그림 2〉 월납식 선취형 변액연금의 신계약비 현금흐름 구조



- 또한 월납식 선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7년 이내 해지 시 투자적립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환급률이 크게 줄어드는 상품구조를 보임.
 - 미상각 신계약비는 선지급된 판매수수료와 예정신계약비의 한도 내에서 이연되어 7년간 일률적으로 상각되며 해약공제액의 결정요인임.
 - 2012년 4월부터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을 70%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해지환급금은 약간 증가하였음.
 - 1차연도 해지 시 환급률이 13.4%p (변경 전 46.0% → 변경 후 59.4%) 높아졌으나 7차연도 이후에야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도달하게 됨.

〈표 4〉 판매수수료 체계 변경 전후 환급률 비교

해약시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변경 전	46.0	74.1	85.0	96.5	104.4	112.3
변경 후	59.4	79.7	88.0	97.4	104.4	112.3

주: 연금보험, 월 50만 원, 10년 납입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 11),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3.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특성: 현금흐름의 불일치



■ 국내외 달리 미국의 대다수 변액연금상품들은 후취형 상품으로 경과기간에 따라 적립금대비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임.

-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수수료 후취방법은 계약자의 투자 및 유동성 선호도에 따라 선택가능토록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표 5〉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수수료 부과 방식

유형	특징	적합한 계약자
B sha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취되는 신계약비는 없는 대신 해약공제기간동안 적립금 가치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10%)이상의 중도인출 시 해약 공제부과 • 해약공제기간은 대부분 6~8년간이며 초기공제율은 적립 금액의 6~8%임 • 해약공제금액은 잔여공제기간별로 감소 	유동성 선호도가 낮으며 장기적 투자를 선호하는 계약자
C sha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취되는 신계약비나 해약공제가 없음 • 높은 유지수수료를 부과 	유동성 선호도가 높은 계약자
L sha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취되는 신계약비는 없으나 중도인출 시 해약공제 부과 • 해약공제기간은 대부분 3~4년간이며, B shares에 비해 높은 C shares보다는 낮은 유지수수료 부과 	B-shares에 적합한 계약자와 C-shares에 적합한 계약자의 중간적 유동성 선호도를 가진 계약자
Bonus sha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금액대비 일정비율의 보너스 제공 • 선취되는 신계약비는 없으나 비슷한 B shares와 대비 긴 해약공제기간과 높은 유지수수료를 부과 	장기적 투자를 선호하는 계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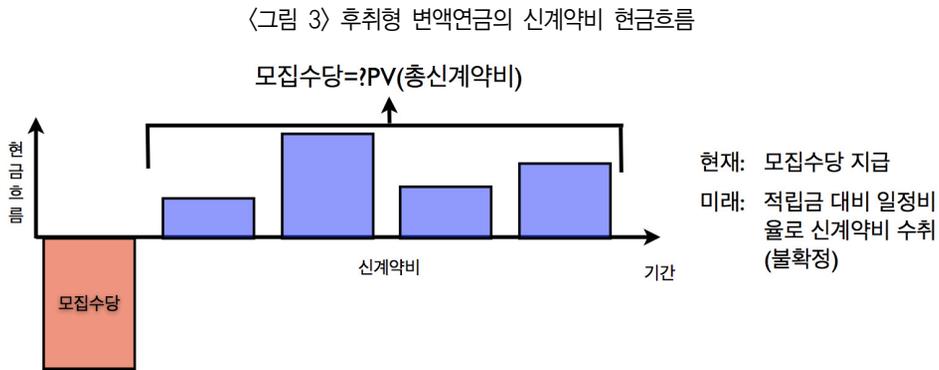
자료: UBS, "Understanding Variable Annuity".

-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사망위험보험료만을 제외한 총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적립되어 투자에 사용됨에 따라 계약초기부터 계약자의 투자선호도를 좀 더 충족할 수 있으며 타 금융권의 투자 상품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최선의 투자선택을 가능하게 함.³⁾

■ 하지만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선취형에서 발생하지 않는 현금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사는 변액연금 최저보증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추가적으로 미래부과보험료 변동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이 됨.

3) 동일한 투자위험을 갖는 각종 선취형 및 후취형 변액연금상품들은 수수료 및 해약공제스케줄을 통해 사전적으로 동일한 투자가치를 계약자에게 부여하도록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후취되는 수수료 규모는 적립금의 투자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며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결정되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음.



- 미래수수료 수입의 현금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선지급된 모집수당 (계약체결비용)을 이연자산으로 상정한 후 미래 수수료 수입의 실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상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적 관리를 하고 있음.
 - 후취되는 신계약비는 미래에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인정되어 추정총이익(Estimated Gross Profit)방식으로 가치가 평가된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추정총이익방식은 시장 변동에 따라 미상각신계약비의 상각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만일 자본시장 변동으로 인해 투자적립금 가치가 감소하면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가치의 평가손실이 발생함으로 보험사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됨.
- 실제로 미국 하트포드사의 경우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추가하락으로 인해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 하였고 추정총이익방식으로 결정된 가치변화에 따라 상각되어 하트포드사의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6〉 미 Hartford Life의 신계약비이연자산 상각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515	1,525	3,716	215

주: Hartford 연차보고서.

- 또한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채널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의 지급방식은 판매채널이 자신의 임금에 대한 시점간선호도(intertemporal preference)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판매채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 보험사는 판매채널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의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판매채널이 선택하는 지급다양화방식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짐.

〈표 7〉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예)

지급방식	설명
선지급	보험사가 판매채널에게 변액연금상품 판매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일정 부분을 일시에 선지급
투자성과지급	보험사가 판매채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보다 적은 액수를 우선 지급하고 판매된 변액연금의 투자적립금의 일정율을 향후 계약만료 또는 해약시까지 지급
혼합지급	보험사가 판매채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보다 적은 액수를 우선 지급하고 판매된 변액연금의 총납입보험료의 일정율을 향후 계약만료 또는 해약시까지 지급.

자료: UBS, "Understanding Variable Annuity".

- 또한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채널에 대한 판매수당지급을 위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변액연금계약자에게 정확히 공시함에 따라 변액연금계약자와 판매자간의 잠재적 유인상충문제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고, 계약자의 투자성향 및 유동성의 선호도에 따라 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4. 현금불일치 문제의 관리방안

-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채널에 대한 모집수당 지급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1차적으로 모집수당의 선지급과 신계약비의 수취에서 발생하는 현금불일치 문제의 최소화가 필요함.
-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노출되어지는 현금불일치위험은 본질적으로 모집수당 지급과 신계약비 수취의 시점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나 판매유인으로 작용하는 계약체결에 따른 모집수당을 일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신계약비 수취시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판매유인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선지급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향후 계약유지기간 동안의 모집수당 후지급이나 계약자의 투자성과에 따라 후지급 수당액이 결정되는 방식에 시점 간 선호도를 갖고 있는 판매채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1차적으로 현금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일괄적 신계약비상각제도가 아닌 신계약비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확립되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투자적립금의 변동에 따라서 보험사의 미래수수료수입이 결정됨에 따라 해약환급금제도만으로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가치에 확실성을 부여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따라서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투자적립금의 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회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함.
 - 이러한 회계기준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주는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여 보험사로서는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소비자, 투자자, 그리고 감독자에게는 보험사의 위험노출도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보험사는 각종 최저보증에 따른 위험을 자본시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내부 동태적 리스크헤지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및 운영하고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도입으로 발생하는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위험관리에도 활용해야 함.
- 현재 변액연금상품의 각종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을 자본시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다수의 보험사는 최저적립금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Naked)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만일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관리를 자본시장을 통해 동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변동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동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또한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유동화 및 증권발행을 추진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이전시키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kiri**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판매전략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경제성장 둔화 및 저금리 현상은 보험수요 감소와 투자수익 저하를 가져와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낮은 금리는 보험료를 상승시키거나 계약자가 얻게 될 혜택을 축소시키게 되어 보험수요를 감소 시킴.
 -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은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을 낮추며, 금리 하락은 보험회사의 자산가치보다 부채가치를 상승시키므로 보험회사 가치를 하락시키게 됨.
- 본고는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판매채널 전략 및 고객접근방법, 상품포트폴리오 재조정 측면에서 살펴 봄.
- 먼저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채널의 도입을 통해 보험료 인상 효과를 완화하고 새로운 채널에 적합한 신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보험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채널 특성에 적합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목표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예측분석(Predictive Analysis)기법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예측분석은 여러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언더라이팅 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세분화된 잠재시장 분석을 통해 효과적 판매를 기대할 수 있음.
-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측면에서는 저축성 상품의 비중을 낮추고 보장성 상품 비중을 높이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전통적 대면채널을 통한 효과적 보장성 상품판매 방안을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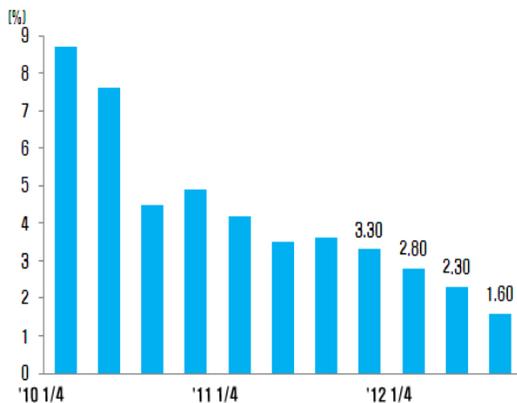
-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판매유인체계 검토와 함께 설계사 채널의 관리와 교육이 필요
- 또한, 비대면채널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와의 양방향 정보교환 채널로 사용하는 다중채널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보험연구원), 국내외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그림 1〉 참고).
- 아울러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에 따라 시장에서는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2〉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자료: 보험연구원(2012), 「2013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경제성장 둔화 및 저금리 현상은 보험수요 감소와 투자수익 저하를 가져와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가계소득도 감소하면서 보험수요가 줄어들.
 - 아울러 저금리와 저성장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높은 투자수익을 얻기 어렵게 됨.
- 본고는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판매채널 전략 및 고객 접근 방법, 상품포트폴리오 재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2. 저성장·저금리 현상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통상적으로 낮은 금리는 보험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계약자가 얻게 될 혜택을 축소시키게 되어 보험수요를 감소시킴.
 - 저금리 환경하에서는 미래 자산의 현재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미래에 같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 보험료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보장 혜택이 줄게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요인이 감소하게 됨.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저금리하에서는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상승하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
- 한편 보험회사는 주로 우량채권에 투자하므로 금리의 추세적 하락은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을 낮추며, 보험회사의 자산가치보다 부채가치를 상승시켜 보험회사 가치를 하락시킴.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 현상으로 인하여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기존에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판매한 상품에서 이차역마진 부담이 발생
- 따라서 저성장·저금리 현상은 보험료 인상, 보험수요 감소, 투자수익 감소, 보험회사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통해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3.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의 판매전략



가. 새로운 채널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

- 보험료 인상효과를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판매채널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채널을 통해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저금리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새로운 채널 도입을 통해 가격에 민감하고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 집단에 새로운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틈새시장(niche market) 발굴을 통한 신계약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목표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자동차보험과 같이 단순한 구조를 갖는 상품의 경우 국내외 모두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점점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간단한 상품을 원하는 추세에 따라 단순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고소득층 시장에서는 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가 여전히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 시장에서는 비대면채널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모바일 채널을 판매 전, 계약기간 중, 보험금 지급 단계에 걸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보험금지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잠재 소비자에게 보험료 견적을 제공하거나 보장내용 확인, 보험료 지급, 보험금지급 과정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함.
 - 초기에는 판매자들이 고객들과의 상담에 이용하도록 하거나 보험금지급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한 보험금지급신청(claim reporting), 사고 관련 서류를 작성 서비스 등 보험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나.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¹⁾과 비대면채널 활용

-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유지 또는 제고하기 위해 시장정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측분석을 고려할 수 있음.
 - 예측분석은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관계를 찾고 이를 통해 미래 사건에 대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함.²⁾
 - 동 분석방법은 판매전략 수립, 언더라이팅, 보험금지급 관리, 판매채널 평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에서의 사례로 볼 때, 예측분석은 언더라이팅 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되고 있음.
 - 동 분석은 자동차보험상품에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생명보험상품에도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특정한 시장을 목표로 할 경우 예측분석을 통해 잠재 소비자의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 판매를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온라인 채널 판매를 통한 틈새시장 확보의 경우에도 예측분석과 같은 접근은 세분화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예측분석을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채널은 예측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정도가 높고, 관련 기술의 지속적 발전이 기대되므로 해당 채널을 이용한 예측분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 아울러 소비자와의 지속적 정보교환을 통해 고객관리도 향상시켜 보험계약의 유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시장에서 수집된 정보 사용과 관련된 규제나 사회, 문화적 입장에 따라 예측분석의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 'analytical and predictive modelling technique' 또는 'predictive modelling'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됨.

2) Deloitte(2010), *Predictive Modeling for Life Insurance*.

다. 상품 포트폴리오 측면: 전통적 대면채널을 통한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

■ 금리 하락의 영향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는데, 보장성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상품에 비해 금리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

-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 하락에 따라 수익성에 큰 변동이 없으나, 저축성 상품의 경우 투자수익률 하락과 보증유선에 따른 부담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급속히 하락할 수 있음.

〈표 1〉 금리 하락의 영향

구분	보장성 상품	저축성 상품
보험수요	보장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 감소	보증유선이 시차를 두고 조정이 되면 수요 증가
계약자 행동	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가격이 높아지고, 계약기간이 지날수록 해약 시 개인의 위험에 비해 위험보험료(risk charges)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실효계약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가 만기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자가 계약 시에 보험료를 증가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가진 경우에 보험료를 높일 수 있음.
수익성	투자가 수익창출의 주요 동인이 아니고, 수요 또한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수익 마진이 하락하므로 수익성 하락 • 투자수익이 보증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수익성이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

자료: Swiss Re(2012), *Sigma*, No. 4/2012.

■ 따라서 저금리 환경에서 안정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성 상품의 비중을 낮추고 보장성 상품 비중을 높이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저축성 상품 판매에 주로 활용되었던 방카슈랑스채널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전통적 대면채널인 설계사 채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

■ 또한, 상품구조가 단순한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판매의 경우 여전히 대면채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 보장내용의 설명,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제공 등에 대해서는 대면채널이 비대면채널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뭄.

- 따라서 보험회사는 전통적 대면채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전통적 대면채널을 통해 보장성 상품의 판매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판매 유인체계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면채널을 주 판매채널로 활용하되 비대면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채널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은 단일채널이 아닌 대면채널, 전화, 인터넷, 소셜미디어, 모바일 등 다중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3. 요약 및 시사점



- 경제성장 둔화 및 저금리 현상은 보험수요의 감소와 투자수익 저하를 가져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는 새로운 채널을 통한 틈새시장 확보 및 비용 절약,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 채널을 통한 시장 정보의 과학적 이용, 상품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상품특성에 맞는 판매채널 활용, 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 상품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ri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윤상호 연구위원 /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는 한미 양국 간 교역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추진배경은 상이해 협정문에 대한 해석이 양국 산업 전문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목표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 진출 확대 및 점유율을 높이는 것임.
 - 반면 한국은 자국 상품의 미국시장 내 경쟁력 제고 및 미국기업의 국내시장진출을 통한 국내시장 효율성 확보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협정에 임하였음.
- 본고는 한미FTA가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며 시사점을 유추해보고자 함.
 - 한미FTA와 같은 양자 간 협의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자국의 입장 및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였으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국내 보험시장에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달리 2년간 유예기간의 종료 이후 고객정보에 대한 공유 및 처리가 자유로워지는 시점부터 미국 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국내보험시장 진출이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음.
 - 미국 보험업계는 금융업종의 규제와 관련해 미국 보험회사의 포괄적 국내 시장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미FTA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만이 제외되는 포괄적 방식이 적용됨.
- 또한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전문가그룹 간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은 만일 한미FTA하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국내시장활동이 규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FTA가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거의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가 적용 대상인 한미 양국 간 교역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타결되었음.
 - 한미FTA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적용하고 있는 열거주의(positive list)방식과는 달리 포괄주의(negative list)방식의 협정이며 한미 양국 간 교역의 자유화 및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적용대상인 산업 및 상품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주의방식으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한미 양국 정부의 추진배경도 상이해 협정문에 대한 해석 또한 양국 산업 및 전문가 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한미FTA를 통해 국내시장 진출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은 반면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시장 내 경쟁력 제고 및 미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통한 우리나라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협정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¹⁾
 - 미국의 경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국의 농수산업, 의약품 및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서비스산업이 한미FTA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들이 향후 국내 시장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우 미국의 보험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Financial firms in general, and the insurance industry in particular, would likely be strong beneficiary of the proposed new investment rules”(USITC, Section 6-5).²⁾

- 한미FTA와 같은 양자 간 협의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자국의 입장 및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협상에 임했는가와 협정문이 그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가 향후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함.

1) William Cooper and Mark Manyli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Looking Ahead - Prospects and Potential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5:2, “A primary objective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to gain access to South Korean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equipment, some other high-technology manufactured goods, and services, particularly financial and professional services.”

2)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Investigation No. TA-2104-24, USITC Publication 3949.

- 양자 간의 협정문은 수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만 한미FTA와 같이 포괄주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여러 산업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동시에 돌출하는 경우 협정문에 대한 양국 간 그리고 산업 간의 해석과 분석이 상이할 수 있음.
- 특히 보험업의 경우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2007년 한미FTA 체결 당시 발표되었던 미국의회연구소,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그리고 미국의 산업별 자문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업이 금융업종 중의 최대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한미FTA하에서 한국정부 및 전문가들이 불가능하거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미국정부가 각 업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함.
 - 향후 한국시장 내에서 미국기업들의 활동을 막는 규제조치가 가해졌을 경우 자신의 입장수렴을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본고는 한미FTA가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미국 정부 및 업계의 예측 및 분석을 소개하여 국내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한미FTA에 대한 미국 보험업계의 시각



- 한미FTA의 보험 분야 협정은 금융업에 대한 13장에 포함되어 서술되어 있는데, 이미 국내 보험업의 개방 및 자유화가 관련법 및 규제완화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국제거래와 관련한 보험서비스상품(cross border trade)과 관련된 조항만이 부속서(Annex 13-A)를 통해 추가 명시되었음.
- 국내 금융시장 및 보험시장은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규제완화를 통해 명시적인 개방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금융산업 및 보험업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통상대표(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의 한미FTA 서비스와 금융산업에 대한 업계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의 성과는 서비스와 금융산업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개척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보험업의 경우 이전에 진행되었던 어떠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확대된 시장개방화를 이룬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An outstanding attribute of the Korea Agreement is that in some sectors, such as insurance, it achieves a level of openness that goes beyond trade agreements that have been previously negotiated.”(ITAC10)³⁾

■ 미국 정부 및 보험업계는 한미FTA로 인해 협정문에서 열거된 국제거래와 관련한 보험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해 제한받고 있었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한미FTA체결 전 한국에서 이미 진행된 금융 및 보험시장의 개방은 명시적인 개방화이었던 것으로 미국 보험업계는 인식하고 있었음.
 - 미국의 전문가 집단은 한미FTA를 통해 미국보험회사들에게 국내보험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룬 미국 협상단의 노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Achieving true market access for the insurance business involves the removal of discriminatory regulatory hurdles, in addition to the ability for insurers to gain market entry. We commend the U.S. negotiating team for the constructive results achieved.”(ITAC10)
- 미국의 자문위원회의 보고서(ITAC10)를 살펴보면 국제거래와 관련한 보험서비스만이 아닌 한미FTA는 모든 보험사들에게 국내시장의 시장개방과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한미FTA는 차별적 규제 장벽으로 인해 그동안 막혀있었던 한국시장의 진출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On the market access, the KORUS FTA permits the full range of establishment rights.....It also does not place any quantitative or geographic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licensed insurers in the market.”(ITAC10)
- 보고서는 또한 한미FTA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했었던 양자자유무역협정들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한국의 보험과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미국보험회사들의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보험회사의 숫자,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지배구조에 제한이 없는 전면적인 국내보험시장의 개방화가 실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금융업종의 규제와 관련해 한미FTA에 포괄적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미국 보험회사의 포괄적 국내 사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Report of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ITAC10),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 1년간의 유예기간 후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혁을 통해 모든 생명보험 상품의 유통이 가능해지며, 그리고 2년간의 유예기간 후 국내 고객정보에 대한 공유가 해외에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또한 양국정부는 보험특별조사위원회(Insurance Working Group)를 새로 구성하여 보험시장 및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고 이를 시기적절하게 한미FTA 후속조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및 의회연구소의 분석 결과



■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는 달리 유예기간 종료 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U.S. insurers would be poised to obtain sizeable gains in a liberalized South Korean services market.”(CRS Report)⁴⁾
- 국내의 금융 및 보험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보험서비스 관련 부분은 국제거래에 관련한 보험서비스상품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의 개방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보험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⁵⁾
-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미국 보험업계가 국제거래관련 보험서비스상품으로 수출한 68억 달러의 1%에 불과한 7천 4백만 달러가 한국에 수출되었으며 이는 멕시코에 수출한 1억 5천 8백만 달러보다도 적은 액수였다고 보고하며, 한미FTA로 인한 새로운 시장 진출로 미국 보험업계가 50억 달러의 장기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The FTA would also be expected to generate a substantial increase in U.S. exports of insurance services to Korea.....potential gains from new market growth from the FTA provisions could be \$5 billion in the long term.”(USITC)⁶⁾

4) William H. Cooper, Mark E. Manyin, Remy Jurenas, and Michaela D. Platzer, “The Proposed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Provisions and Implic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5) 김병덕, 「한미 FTA 금융부분 주요 내용 및 영향」, 금융포커스, 한국금융연구원; 이기형,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험 분야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전략」, KIRI Weekly, 보험연구원.

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Investigation No. TA-2104-24, USITC Publication 3949.

- 하지만 한국보험업계의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보험회사들에 비해 한국보험회사들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미국보험시장에 주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한미FTA로 인한 미국투자자들의 최혜국 대우조치와 보험회사 및 상품의 수적 제한 없는 국내 보험시장접근 허용을 또 다른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보고서에 담긴 미국생명보험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및 화재보험협회(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에 따르면 한미FTA에 담긴 고객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해외공유 및 처리 관련 조항만으로도 5천만 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새로운 상품의 출시 시 불필요한 규제의 귀속을 받지 않으며, 한국보험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는 달리 2년 유예기간의 종료로 인해 고객정보에 대한 해외공유 및 처리가 자유로워지는 시점에 미국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국내보험시장 진출이 시도되는 등 국내보험시장에 주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측됨.
-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고객정보에 대한 해외공유 및 처리를 통한 각종 보험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미국 보험회사들의 국내지점 및 합작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2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유예기간 없이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작된 보험자문 및 계리서비스나 위험평가 서비스 같은 보험부수서비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보험소비자와의 접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됨.

4. 시사점

- 한미FTA는 한미양국의 정부가 밝혔던 것과 같이 양국 간 물류 및 서비스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예상되어 국내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됨.
- 한국정부가 예상한 바와 같이 한미FTA는 미국의 보험 및 의료업 같은 서비스산업의 한국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고용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보험업 분야에서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정부나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이나 예상하는 방향은 미국 측의 견해와 다소 상이함.

-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보험업 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보험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전문가그룹 간의 이해 및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만일 한미FTA하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국내 사업이 규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한미FTA와 같이 양국 전문가그룹의 상이한 해석이 존재할 경우 국내에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해 규제변화를 추진하고, 그에 대해 상대국 투자자들은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조치로 인식하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보험업의 경우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미국 측의 견해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에 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국내보험권역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FTA가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향후 미래변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kiri**

2. 고령화

- | | |
|---------------------------------------|---------|
| 1. 일시납 변액형 즉시연금상품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이경아 |
| 2.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 | 조용운 |
| 3.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 이상우 류건식 |
| 4.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 류건식 |
| 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 류건식 김대환 |
| 6.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 및 노후준비 실태 비교와 시사점 | 이상우 정원석 |
| 7.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류건식 김대환 |





일시납 변액형 즉시연금상품 현황과 시사점

이경희 연구위원 / 이경아 연구원

요약

- 2011년 들어 일시납 즉시연금의 수입보험료가 2조 원을 넘어섰으며, 월지급식편드로의 자금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계기로 일시납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선진시장에서는 부유한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장수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 헤지에 초점을 둔 상품으로 일시납 변액형 즉시연금(SPIVA: Single Premium Immediate Variable Annuity)과 최저종신중도 인출금보증(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이 판매되고 있음.
 - SPIVA는 가입시점부터 종신토록 특별계정으로 운영되어 초과수익을 추구하면서 종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식시장 하락 시 연금급여가 감소하는 하방리스크에 노출되는 단점도 있음.
 - GLWB는 적립금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최저인출금액이 종신토록 보장되는 특약으로 해지 및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이 계약자에게 귀속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형 즉시연금은 종신토록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선진시장 상품과 달리 가입 후 10년 동안만 특별계정으로 운영되고 그 후는 일반계정의 금리연동형으로 운영됨.
 -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초기 10년 동안에는 월지급식편드와 유사하게 일시납보험료의 4~8%를 지급함으로써 금리연동형 즉시연금에 비해 더 높은 연금급여를 지급함.
 - 10년 경과시점에서는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한도의 적립금을 보증하며, 이후에는 금리연동형으로 종신토록 연금급여를 지급함.
- 향후 변액형 즉시연금 분야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보험회사도 선진시장 보험회사와 같이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월지급식편드와 같은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시점까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SPIVA, GLWB도 제공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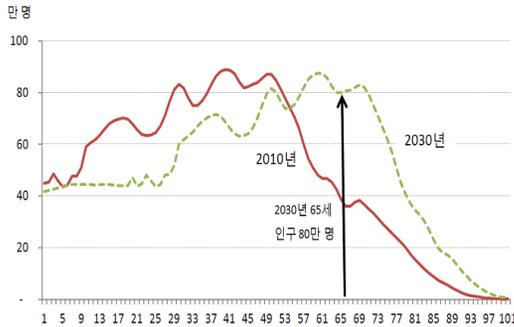
- SPIVA, GLWB 개발 시 초기 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타 금융권 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취방식의 수수료 체계(해지수수료 및 M&E 수수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품의 복잡성과 높은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변액형 즉시연금은 부유층에게 적합하며, 이에 부합하는 자문서비스 기능을 갖춘 채널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함.
- GLWB는 보증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2010년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 상품인 일시납 즉시연금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08년 3,000억 원대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2조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됨.
 - 증권사에서 출시한 월지급식펀드의 설정액 규모도 2008년 700억 원대에서 2011년 1~9월 5,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향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되면 보유자산을 정기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임.
 - 고령화 현상이 급진전되어 2030년경에는 65세 인구가 80만 명을 넘어서고, 65세 이상 인구 규모는 1,300만 명에 달해 보유자산의 소득전환 니즈가 크게 높아질 것임.
 - 한편, 금리 수준이 3%대로 하락함에 따라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그림 1〉 장래 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그림 2〉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이에 보고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은퇴세대들의 일시납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부유층¹⁾이 선호하는 즉시형 변액연금상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선진시장의 변액형 즉시연금상품 현황

가. 상품특성

- 미국 보험회사들은 변액형 즉시연금으로 최저보증 기능이 없는 상품(SPIVA: Single Premium Immediate Variable Annuity)과 동 기능이 부가된 상품(GMWB: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을 판매하고 있음.
 - GMWB와 GLWB는 SPIVA가 진화된 상품으로 변액연금에 최저중도인출금 기능이 부가되어 확정 기간(예: 15년, 20년) 또는 종신토록 최저수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상품임.
- SPIVA는 가입시점에서 사망률과 예정이율(assumed interest rate)을 감안하여 최초연금급여(initial annuity income)를 결정함.

1)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2011년 기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유층 인구는 14만 8,000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429조 원에 달함(대한민국 부유층의 자산관리, 2012. 2).

- 보험회사는 동일 SPIVA에 대해 다수의 예정이율(대체적으로 3~6%)을 설정한 뒤 계약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데, 예정이율 수준과 상관없이 연금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계리적 가치는 동일함.
- 예정이율을 높게 설정할수록 최초연금급여는 높아지지만 장래 연금급여의 상승 가능성은 낮아짐.

■ SPIVA 가입자가 실제 수령하는 연금급여는 연금기준좌수(annuity units)와 연금기준가(annuity unit value)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연금기준좌수는 가입시점에서 고정되나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기준가가 변동됨.

- 만약 최초연금급여가 500달러이고 가입시점의 연금기준가가 5달러라면 연금기준좌수(최초 연금급여/가입시점의 연금기준가)는 연금수령 기간 동안 100좌로 고정됨.
- 연금급여는 연금기준좌수에 연금기준가를 곱해서 결정되는데, 연금기준가가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종국적으로 연금급여도 변동됨(〈표 1〉 참조).

〈표 1〉 투자성과에 따른 SPIVA의 연금급여 예시

경과기간(년)	펀드 투자수익률				
	1%	3%	5%	7%	9%
0	\$1,000	\$1,000	\$1,000	\$1,000	\$1,000
1	961.9	980.9	1,000.0	1,019.0	1,038.1
2	925.2	962.2	1,000.0	1,038.4	1,077.6
3	890.0	943.9	1,000.0	1,058.2	1,118.6
4	856.1	925.9	1,000.0	1,078.4	1,161.3
5	823.4	908.3	1,000.0	1,098.9	1,205.5
6	792.1	891.0	1,000.0	1,119.8	1,251.4
7	761.9	874.0	1,000.0	1,141.2	1,299.1
8	732.9	857.4	1,000.0	1,162.9	1,348.6
9	705.0	841.1	1,000.0	1,185.0	1,400.0

주: 예정이율 5%로 설정함.

자료: Dellinger(2007), The Handbook of Variable Income Annuities.

■ GLWB는 연금급여가 펀드의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SPIVA의 특징이다 투자성과와 관계없이 최저 연금급여(연금지급기준금액×지급률)를 종신까지 보증함으로써 SPIVA가 갖는 하방리스크를 제어함.

- 급여 인출 수준은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급률도 높아짐(대체적으로 4~7% 수준).

■ 보험회사들은 투자성과가 양호할 경우 GLWB 급여의 지급기준인 ‘연금지급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스텝 업(step-up) 기능을 부과함.

- 스텝 업 부과 시 평가시점의 적립금이 이전 연금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기준금액이 평가시점의 적립금 수준으로 높아지므로 보증되는 인출금액도 증가함.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IVA와 GLWB는 종신소득보증, 투자보증, 자산에 대한 통제력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

- 양자 모두 종신소득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지만, 투자리스크에 대한 헤지 기능은 GLWB에만 있음.
- SPIVA는 중도해지가 허용되지 않고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이 보험회사에 귀속되어 자산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데 비해, GLWB는 부분 및 전부인출이 가능하며 사망 시 잔여 적립금도 유족에게 상속되어 자산에 대한 통제력이 유지될 수 있음.

<표 2> SPIVA와 GLWB 비교

구분	종신소득보증	투자보증	주요 특징
SPI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기준좌수는 종신보증되나 연금지급기준은 보증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며, 종신소득 제공 • 자산에 대한 통제력 없음 (중도해지 불가, 사망 시 잔여 적립금 보험회사에 귀속)
GLW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지급기준적립금의 일정수준을 종신토록 보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금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최저인출금액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소득 종신보장 • 자산에 대한 통제력 보유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사망 시 잔여적립금 유족에 귀속)

나. 수수료 부과 및 계약 유형

■ 선진시장의 변액연금 수수료는 계약체결 관련 비용, 계약유지 및 사망률 관련 비용(M&E: Mortality and Expense risk charge), 자산운용 관련 비용 및 최저보증 수수료로 구성됨.

- 계약체결 관련 비용, 계약유지 및 사망률 관련 비용은 전통적인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이며, 자산운용 관련 비용과 최저보증 수수료는 투자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 계약체결 관련 비용에는 모집수수료, 광고비, 기타 신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업비가 포함되며, 전부 또는 부분 해지 시 동 비용을 부과하는 후취방식이 일반적임.

- 계약체결 관련 비용은 적립금 대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데, 1~7차년도까지 선형 체감하는 방식으로 부과하여 기간이 경과될수록 해지 시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낮아짐(예: 1·2차년도 6%, 3·4차년도 5%, . . . , 7차년도 2%, 8차년도 이후 0%).
- 보험회사는 유통채널에 계약 체결 시 일시납보험료 대비 일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립금 대비 유지수수료를 지급함.²⁾

■ 계약유지 및 사망률 관련 비용(M&E 수수료)은 보험회사의 유지비(마케팅·운영관리 비용 등)를 충당하고, 연금수급자의 실제 사망률과 예정 사망률 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함.

- 사망률 관련 수수료는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수급자가 생존하는 한 연금지급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험단체 전체적으로 실제 사망률이 예정 사망률보다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임.
- 미국 보험회사가 평균적으로 부과하는 M&E 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1.25% 수준임.

■ SPIVA는 특별계정 펀드로 운용되기 때문에 자산운용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계약자가 특약으로 GLWB를 선택하면 자산운용 수수료 외에 최저종신인출보증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함.

- 자산운용 관련 수수료는 운용하는 펀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1년 2/4분기 평균 0.96~0.98% 수준임.
- GLWB 선택 시 최저보증 수수료는 연금지급기준금액(또는 적립금) 대비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데, 금융위기 이후 수수료 수준이 크게 높아져 2011년 2/4분기에는 1.12%에 달함.³⁾

■ 보험회사는 변액형 즉시연금 계약자의 니즈(위험용인도, 투자목적, 연령, 투자기간 등)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상품군을 제공하고 있음.

- B share의 경우 해지수수료는 비교적 장기간(예: 5~7년)에 걸쳐 부과하고, M&E 수수료는 낮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기계약자에게 적합함.

2)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가 높으면 유지수수료는 낮고, 판매수수료가 낮으면 유지수수료는 높게 책정됨.

3) 25,000달러 기준 GLWB의 평균 수수료 수준임(Loffredi, K(2011), Carriers Settle in Variable Annuity Product Development Slows in Third Quarter, Morningstar).

- C share는 해지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 대신 높은 M&E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니즈가 높고 지속적으로 높은 유지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계약자에게 적합함.
 - L share는 해지수수료는 짧은 기간(예: 4년) 동안 부과하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높은 유동성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적합함.
- 미국에서 일시납 변액연금의 판매는 주로 독립대리점과 주식브로커 등 비전속채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⁴⁾
- 2010년 기준 전속채널(career agents) 비중은 27%인데 비해 비전속채널 비중은 52%에 달함(독립대리점 25%, 주식브로커 23%, 은행 4%).

3. 우리나라의 즉시연금상품 현황



- 우리나라의 일시납 즉시연금 시장은 2007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⁵⁾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상품은 일반계정에서 운영되는 금리연동형임.
- 2012년 2월 말 기준 전체 23개 생명보험회사 중 16개사가 즉시연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금리연동형을 판매하는 회사는 15개사이며, 변액형을 판매하는 회사는 2개사임.
 - 금리연동형은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⁶⁾에 따라 연금급여가 결정되는데, 외부 지표금리나 보험회사의 투자실적과 무관하게 최저수준의 이율(예: 10년 미만 2.5%, 10년 이상 2.0%)이 보증됨.
- 현재 국내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일시납 변액형 즉시연금은 계약 종료시점까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SPIVA·GLWB와 달리 가입 후 10년 동안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되고, 그 후에는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형태임.

4) LIMRA(2010), U.S. Individual Annuity Yearbook.

5) 일시납 즉시연금의 수입보험료 추이는 2008년 3,306억 원, 2009년 7,197억 원, 2010년 1조 4,918억 원, 2011년 2조 3,798억 원으로 추산됨(서울경제, 2012. 3. 19).

6) 공시기준이율 = $a \times \text{시장금리} + (1-a) \times \text{운용자산이익률}$. 시장금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반영한 것으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 직전 3개월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산출함.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사이에서 결정됨.

- 가입 후 초기 10년 동안에는 월지급식펀드와 유사하게 일시납보험료의 4~8%를 지급함으로써 현행 금리연동형 즉시연금에 비해 더 높은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10년이 경과하면 최저보증된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현행 금리연동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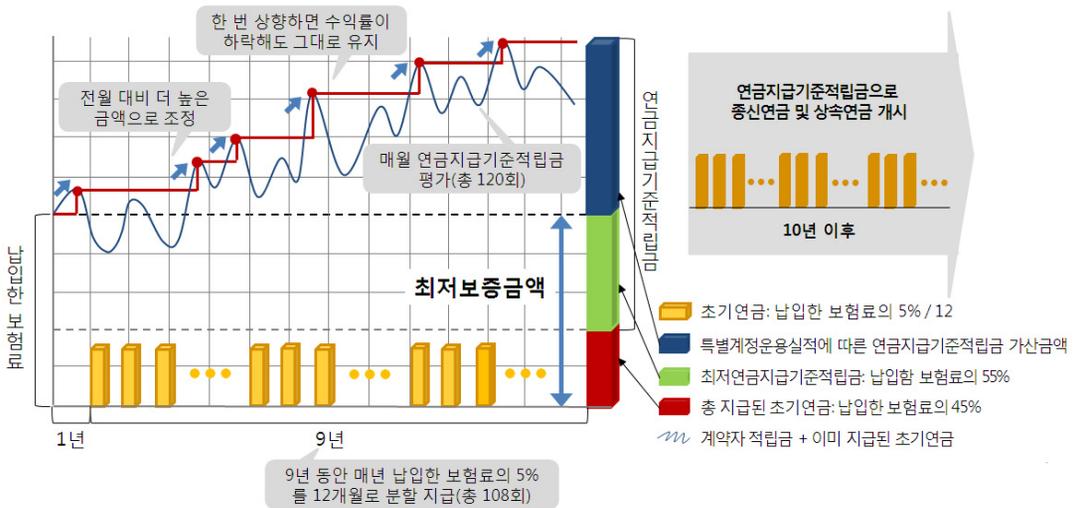
〈표 3〉 국내 보험회사의 일시납 즉시연금상품 현황

구분	금리연동형	변액형
연금 지급 형태	종신행, 상속형, 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후 10년간: 확정형 • 가입 10년 경과 후: 종신행, 상속형
연금급여 결정	일정 주기로 변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일반계정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후 10년간: 펀드 투자에 따른 수익률 적용(특별계정 운용) • 가입 10년 경과 후: 공시이율 적용(일반계정 운용)
기타	최저이율보증 (예: 10년 이하 2.5%, 10년 초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후 10년간: 스텝 업 기능으로 수익률 상승 시 연금지급기준적립금 증대 • 가입 10년 경과 후: 최저이율보증

■ A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 1년 후부터 9년 동안 초기연금으로 매년 납입보험료의 5%를 지급하고, 10년 경과시점에서 연금지급기준적립금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됨(〈그림 3〉 참조).

- 연금지급기준적립금은 10년이 경과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보증되는 최저한도의 연금지급재원으로 일시납보험료의 55%에 연금지급기준적립금 가산금액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시납보험료의 55%를 최저한도로 함.
- 연금지급기준적립금 가산금액은 동 금액 평가일의 특별계정적립금과 이미 지급한 연금급여의 합이 일시납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금액을 말함.
- 초기 9년 동안 지급한 연금급여와 연금지급기준적립금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매년 적립금의 0.1%를 보증수수료로 부과함.

〈그림 3〉 국내 A사의 변액형 즉시연금상품 개요



자료: A사 상품소개서.

■ B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큰 틀에서 A사 상품과 유사한 구조이나, 초기 10년간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10년 후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최저적립금 수준이 달리 설계됨.

- B사 상품은 A사 상품과 달리 1년간 거치없이 가입 후 익월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됨.
- 초기 10년간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기본형과 체증형으로 구분됨.
 - 기본형에서는 매년 일시납보험료의 6%를 연금급여로 지급하며, 체증형에서는 1차년도에 4%를 지급한 후 2년마다 1%p씩 높여 9차년도에는 8%를 지급함.
- 10년 경과 후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한도의 적립금(일시납보험료의 40%)을 보장하며, 스텝 업 기능에 의해 최저보증금액이 증액될 수 있음.
- 초기보증연금 및 최저적립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연 0.9% 수준임.

■ 국내 변액형 즉시연금상품의 사업비는 전통형 상품과 동일하게 초기 선취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지기간 중 연금연액 대비 관리비를 부과함.

- 가입시점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비 목적으로 일시납보험료의 일정 수준(예: 4%)을 선취함.
- 연금수령 기간에는 관리비용으로 연금연액의 일정 수준(예: 0.5%)을 공제함.

4. 시사점



- **중신소득창출 분야의 잠재적인 성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내 보험회사도 선진시장 보험회사와 같이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월지급식펀드와 같은 타 금융권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시점까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SPIVA, GLWB도 추가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저금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상품으로 변액형 즉시연금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내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초기 해지 시 낮은 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타 금융권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후취방식의 수수료 체계(해지수수료 및 M&E 수수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동성 선호와 유지비 부담 등 계약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및 유지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군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품의 복잡성과 높은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변액형 즉시연금은 부유층에게 적합하며, 이에 부합하는 채널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함.
 -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예: 중도 인출, 펀드 변경 시점 등)가 필요하므로 자문서비스 기능을 갖춘 채널이 적합함.
 - 추가변동성이 높은 국내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GLWB는 최저보증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 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펀드의 주식투자 비중 및 최저보증 수준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증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Kiri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

조용운 연구위원

요약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의료비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65세 이상 인구에게 8조 1천 21억 원을 지급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지출한 총의료비의 57.5%를 보장하였음.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중 60세 이상은 60세 이상 인구의 11.8%에 불과함.
 - 65세 이상은 1%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65세 이상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65세 이상 총의료비의 42.5%는 65세 이상이 본인부담하고 있음.
- 개인은 65세 이후에 전체 생애 본인부담 의료비의 64.1%(4,080만 원)를 지출함.

■ 보험산업은 노부모, 1세대 후손, 소득자 본인의 통합위험률을 적용하는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 도입을 통해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가입이므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보험료 할인 등이 가능할 것임.
-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판매 전략 보다는 중장기적인 판매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봄.
-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를 볼 때 연간 보장한도의 설정 등을 통하여 과도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노인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음.
 - 민영정액의료보험도 제한적이거나 노인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65세 이상에게 8조 1,021억 원을 지급하여 65세 이상 총의료비의 57.5%를 보장하였음.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60세 이상이 60세 이상 인구의 11.8%에 불과한 상태임.
 - 65세 이상 가입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1%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 65세 이상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가 현존하고 있는 것임.¹⁾
 - 65세 이상 총의료비의 42.5%는 65세 이상이 본인부담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노인의료비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이 고령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노인의료비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1)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익·유진아·변혜원(201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험연구원.

- 65세 이상은 전체연령보다 2002년 2.55배, 2008년 3.11배에 달하는 1인당 본인부담액을 지출하였음.

■ 생애주기 기준으로 개인의 의료비 지출은 노후에 집중되어 있음.

- 개인은 65세 이후에 전체생애 본인부담의료비의 64.1%(40,800천 원)를 지출함(〈표 1〉 참조).

〈표 1〉 생존자 1인당 생애의료비

(단위: 만 원, %)

구분 연령	1인당 생애 급여비		1인당 생애 본인부담금		1인당 생애 의료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0~100+	8,281.5	100.0	6,360.7	100.0	14,642.2	100.0
20~100+	7,655.1	92.4	5,895.1	92.7	13,550.2	92.5
40~100+	7,146.4	86.3	5,471.9	86.0	12,618.3	86.2
65~100+	5,436.8	65.7	4,080.1	64.1	9,516.9	65.0
85~100+	2,018.2	24.4	1,549.6	24.4	3,567.9	24.4
100+	215.6	2.6	167.5	2.6	383.1	2.6

자료: 조용운(2011), 「생애환자의료비추정을 통한 노인의료비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63호.

■ 국민건강보험은 65세 이상에 대해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자의 약 5%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65세 이상 가입자에게 8조 1,021억 원을 지급하여 65세 이상 총의료비의 57.5%를 보장하였으나 이는 전체 적용인구에 대한 급여율 56.6%보다 불과 0.9%p 상회하는 보장률임.²⁾

■ 2011년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65세 이상 가입자의 의료비를 제도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 민영실손의료비보험의 인구대비 전체 가입률은 46.8%이며 주로 장기손해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있음(〈표 2〉 참조).

2) 정형선(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60세 이상 가입자가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11.8%에 불과한 상태임.

〈표 2〉 민영실손의료보험 가입 현황

(단위: %)

연령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생명 또는 장기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9세	4.4	4.9	4.7	60.5	57.4	59.0	65.0	62.3	63.7
10대	7.7	8.0	7.9	44.3	40.3	42.4	52.0	48.3	50.3
20대	8.0	9.8	8.9	41.0	43.1	42.0	49.0	52.9	50.9
30대	6.6	8.3	7.4	49.3	50.2	49.7	55.9	58.5	57.2
40대	5.4	7.7	6.6	47.6	46.9	47.2	53.1	54.6	53.8
50대	2.5	3.9	3.2	43.9	40.7	42.3	46.4	44.6	45.5
60세~	0.1	0.2	0.2	15.2	8.9	11.6	15.3	9.1	11.8
계	5.1	6.0	5.6	42.9	39.5	41.2	48.1	45.5	46.8

자료: 보험개발원(2011. 12. 29), '전 국민의 약 75%가 생명 또는 장기손해보험에 가입', 보도자료.

- 실손장기간병보험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분을 보장하도록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가능성은 불투명함.
- 이상과 같이 65세 이상의 본인부담의료비가 크고 그리고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함(〈표 3〉 참조).

〈표 3〉 공·사 의료비 보장보험

대상	공보험	민영보험
전체 연령층 대상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 의료비의 57.5% 보장)	실손의료보험 (65세 이상 가입실적 미미)
고령자를 주로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질환자의 5%를 보장)	실손장기간병보험 (상품 개발 실적 없음)

3. 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



가.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 제도 도입

-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3세대를 통합하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제도(이하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통합보험은 개별적으로 위험률을 산출하고 보험료를 책정한 뒤에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한 것임.
 - 기존의 통합보험은 계약자의 선호에 따라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보험임.
-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은 한 가구 내 소득자가 자신과 1세대 후손 그리고 부모의 의료보험료를 통합 납입하여 노부모가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³⁾
 -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은 각 세대에서 적어도 1명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각 세대 당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음.
- 3세대 위험률의 통합은 연령별 위험률을 산출 한 후 각 세대의 해당 연령에 대한 위험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위험률을 통합하는 것이 위험률을 낮추거나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합위험률 산출이 가능함.
- 동 보험은 적어도 3명을 일괄 계약하므로 피보험자 관리의 편의성 제고로 사업비 절감 효과를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가입이므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여 보험료 할인 등이 가능할 것임.

3) 3세대의 위험률을 하나의 위험률로 통합한 해외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싱가포르의 AIA는 3세대를 통합하여 정액으로 보장하는 「AIA GEN3」를 2009년에 출시한 바 있음. 이는 1세대가 보험료를 10년간 지급하면, 2세대가 연도별로 정액보험금을 수령하고, 2세대 사망 시 3세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유산상속의 성격이 강함.

■ 동 보험은 노인의료비 보장이 정액의료보험에 국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후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동 보험은 사적 영역에서 가구 간 소득 재분배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음.

● 한 가구 내 소득자가 1세대 후손과 부모의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가구 간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음.

나. 잠재시장 규모 및 통합위험보험료 추정

■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잠재시장 규모는 표준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10%의 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4조 8,257억 원으로 추정됨(〈표 4〉 참조).

●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잠재시장 규모는 116만 5,000원으로 추정됨.

● 고령화 추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고려할 때 잠재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

〈표 4〉 연간 잠재시장 규모 추정

구분 연령	1인당 생애 본인부담금		적용인구 (명)	연간 잠재시장	
	총액 (만 원)	연간 (만 원)		공제 없을 경우 (조 원)	10% 연간 공제 (조 원)
0~100+	6,360.7	63.6	48,159,718	30.6	27.6
20~100+	5,895.1	73.7	36,807,845	27.1	24.4
40~100+	5,471.9	91.2	21,043,102	19.2	17.3
65~100+	4,080.1	116.6	4,599,562	5.4	4.8
85~100+	1,549.6	103.3	275,462	2.8	2.6

주: 1) 인구는 200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적용함.

2) 고령화 추세와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음.

3) 연간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령구간의 평균값임.

4) 1인당 생애 본인부담금은 '조용운(2011), 「생애환자의료비추정을 통한 노인의료비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63호' 참조.

■ 1세대 (0~19세), 2세대 (40~64세), 3세대 (65~84세)를 각각 1명씩 통합한 위험보험료는 10%의 공제 후 연간 184.9만 원으로 추정됨(〈표 5〉 참조).

- 1세대에 2명이 가입하는 경우 1세대 보험료를 추가하면 4인 가족 통합위험률이 산출됨.
- 부모세대가 2명일 경우 연령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추가하면 통합위험률이 산출되게 됨.
- 부모세대가 85세 이상일 경우 위험보험료는 65~84세의 경우보다 낮아질 것임.

〈표 5〉 3세대 연간 통합보험료 추정

구분 연령	1인당 본인부담금			3세대 통합위험보험료	
	생애 총액 (만 원)	연간 (만 원)	10% 연간 공제 (만 원)	공제 없을 경우 (만 원)	10% 연간 공제 (만 원)
1세대 (0~19)	465.6	23.3	21.0	205.5	184.9
20~39	423.2	21.2	19.0		
2세대 (40~64)	1,391.8	55.7	50.1		
3세대 (65~84)	2,530.4	126.5	113.9		
85~	1,382.1	92.1	82.9		

주: 보험료는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보험료 기준임.

■ 3세대 통합보험료 월 15만 4,000원은 시장형성이 가능한 가격일 것으로 판단됨.

- 연간 보장한도를 설정하였을 경우 통합 보험료는 더욱 낮아져 가입자 수의 측면에서 시장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4. 맺음말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비 보장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 함.

■ 보험산업은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 제도를 검토하는 등 노인의료비 보장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화 를 유도하고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보장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은 고령사회에 대한 역할 확대를 위해 동 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판매 과정에서 중복가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판매 전략 보다는 중장기적인 판매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봄.
-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보장한도의 설정 등을 통하여 과도한 보험료의 인상요인을 제거하고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역선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계약적부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존의 고지의무제도, 건강검진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동일한 위험집단이 구성되도록 노력하여 과도한 보험금 지급의 요인을 줄이고,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책결정자는 고령사회에서 보험산업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의 도입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kipi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우 수석연구원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특수지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간의 기여와 급여 등의 격차에 따른 세대 간·세대 내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음.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오랜 동안 지속되어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고, 공제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최근 일본 정부는 지지부진한 공적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여 2012년 4월 국회에 상정하였음.

동 법안에 의하면 2015년 10월까지 공제연금¹⁾을 후생연금²⁾에 통합시키고, 국가공무원의 연금요율을 후생연금 기준으로 2018년까지 조정하는 등 공제연금의 주요 기준을 후생연금으로 통일시켜야 함. 또한, 공제연금에만 존재하는 직역가산금을 폐지하고, 공제연금의 가입연령 제한, 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 시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유족연금의 승계, 연금지급 개시 연령, 장애연금 지급요건 등을 후생연금의 기준으로 통일시키며, 정부의 비용을 감축해야 함.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추진은 재정부담 가중과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첫째,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간의 급여격차를 줄여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지역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공적연금 개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문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구조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임.

- 1) 공제연금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과 유사하게 일본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등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을 말함.
- 2) 우리나라는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전자 부분을 기초연금(또는 국민연금), 후자 부분을 후생연금보험으로 명칭하고 있음 (이하 '후생연금' 이라 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은 미흡한 실정임.
 - 재정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격차는 세대 내·세대 간 갈 등요인임.

- 일본에서도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 연금 개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진전되며 공적연금의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공 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출도 확대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한계에 도달함.
 - 공적연금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3%로 세계 2위 수준이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220%를 상회함.
 - 복잡한 연금체계³⁾와 연금제도 간의 격차로 세대 간·세대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에 대한 저기여·고보장 특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고자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 통합 관련 법률안⁴⁾을 2012년 4월 13일 국회에 상정하였 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연금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법안에 따르면 공제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적용대상)과 후생연금(민간 근로자 적용 대상)을 2015년 10월까지 통합해야 함.
 - 1984년 자민당 정권이 추진하였던 공적연금 통합 정책을 현 민주당 정권이 계승·발전시킨 것 으로 국회통과가 유력시됨.

-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고려할 때,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추진의 의미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함.

3)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무원공제연금, 지방공무원공제연금, 사립학교교직원공제연금, 농림어업공 제연금 등 기능과 직업에 따라 6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4) “피용자연금제도 일원화 등을 위한 후생연금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

2. 일본 공적연금 체계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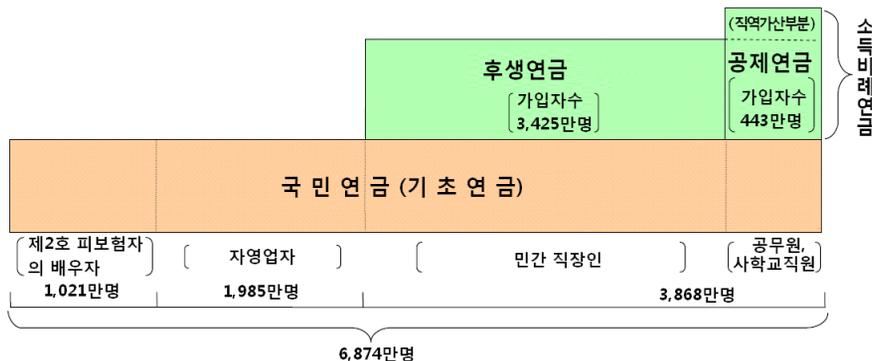


가. 공적연금 체계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기초연금(국민연금, 1층)⁵⁾과 부가적인 소득비례연금(2층)으로 분류됨.

- 1층의 기초연금은 일본 거주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정액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로 현재 6,874만 명이 가입함.
-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기초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연금제도이며, 민간 근로자 대상의 후생연금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대상의 공제연금으로 구분됨(3,868만 명이 가입).
 - 후생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70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분담하며, 직장인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가입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적으로 가입됨.

(그림 1) 일본 공적연금 체계와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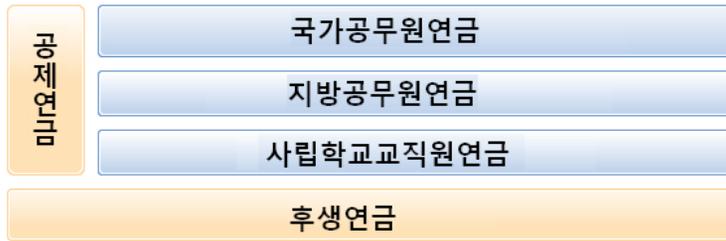
주: 2010년 3월 말 기준.
 자료: 일본 2011년 후생노동백서(2012. 3).

■ 공제연금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 443만 명이 가입함.

- 현재 국가공무원 공제연금, 지방공무원 공제연금, 사립학교 교직원공제연금 등이 운영되며 국가공무원 104만 명, 지방공무원 291만 명, 사립학교교직원 48만 명이 가입함.

5) 일본에서는 자영업자 및 주부 등이 가입할 경우 기초연금, 피용자가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구분하여 호칭함.

〈그림 2〉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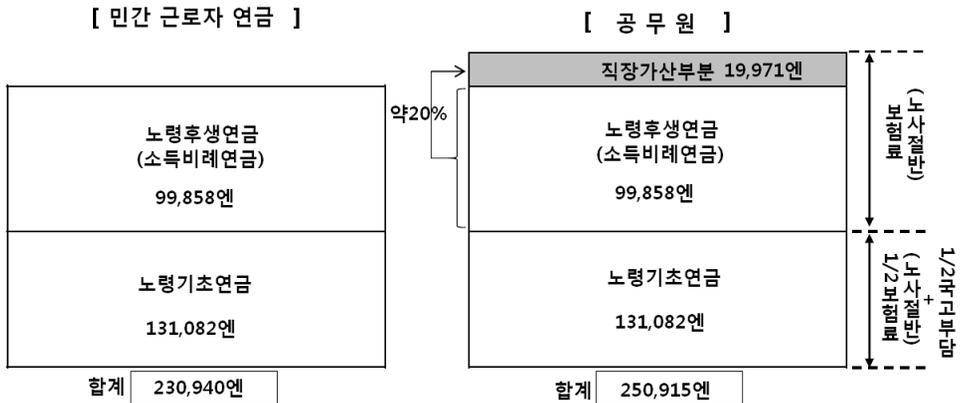


- 일본의 공무원은 공제연금(2층,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기초연금(1층)에 자동 가입되며, 추가로 직장가산금(3층)의 특혜가 지급되는 특징이 있음.
 - 이와 별개로 공무원은 퇴직금의 성격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함.

나. 공제연금의 문제점

-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형평성 문제가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갈등과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가중시킴.
- 공무원공제연금은 〈그림 3〉과 같이 일률적으로 소득비례부분의 20%를 직역가산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 현재 공무원의 연금액은 국민연금(정액) + 민간 근로자의 후생연금액에 상당 금액(소득비례부분) + 직역가산액(공제연금에만 존재)으로 구성되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지급액이 지급 가능함.

〈그림 3〉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공적연금 표준급여 차이



자료: 후생노동성(2012. 4. 13).

- 동일 조건하에 민간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연금 수령액(2012년 3월 기준)은 근로자가 230,940엔이며, 공무원이 250,915엔으로 공무원공제연금이 약 2만 엔 높은 수준임.

■ 공제연금의 보험요율이 후생연금 보다 약 2% 낮게 설계되어 있음.

-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표준보수월액⁶⁾을 기준으로 16.058%(2010년 9월 기준⁷⁾인 반면 공제연금의 보험요율은 각 공제연금에 따라 12.938%~15.508%로 설계함.
 - 공무원연금(15.508%)의 직역가산부분 1.406%를 제외하여 민간 근로자와 비교한 경우에도 공무원공제연금의 보험요율은 14.102%로 민간 근로자보다 약 2% 낮은 보험료를 부담함.

〈표 1〉 일본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주요 차이

	1인당 부양자수 ²⁾	보험요율	모델세대 표준연금	추가비용
후생연금	2.47	16.058%	230,940엔	없음
국가공무원공제연금	1.53	15.508%	250,915엔	2,300억 엔
지방공무원공제연금	1.60	15.508%	-	8,600억 엔
사학공제연금	4.32	12.938%	-	-

주: 1) 2010년 3월 말 기준(단, 표준연금과 추가비용은 2012년 3월 기준).

2) 연금보험료 납입자 1인당 수급자 수.

자료: 후생노동백서(2012).

■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추가비용 부담에 따른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공무원의 보험료 기여율은 매년 0.0645%씩 자동 인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 부담률도 이와 동일하게 인상함.
 - 정부의 법정 부담금 외에 공무원 공제연금 도입⁸⁾ 이전의 은급제도⁹⁾ 공무원 세대의 급여보장을 정부가 추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 지원 예상액은 총 1조 900억 엔 수준임.

■ 또한, 공제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재혼하는 등 연금수익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배우자의 자녀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특혜가 존재함.

6) 표준보수월액의 상한 및 하한 각각 620천 엔, 98천 엔.

7)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하여 13.934%(2004년) → 16.058%(2010.9) → 2017년 이후 18.30%로 고정.

8) 국가공무원공제연금 1958년, 지방공무원공제연금 1962년에 각각 도입함.

9) 은급제도는 과거 퇴직공무원의 공로보상적인 측면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로 정부가 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3.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주요 추진내용



가. 단일화 추진 경위

■ 일본은 오래전부터 공제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통합 논의를 지속해 왔음.

- 1984년 당시 여·야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봄.
 - 당시 정부·여당(자민당)은 우선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간 급여 격차를 줄이고 2층으로 구조를 개편하며 급여의 종류와 내용도 최대한 일치시켜 1995년 단일화를 목표로 추진
 - 그러나 당시 야당(민주당)은 조세방식에 의한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전 국민 대상의 연금제도 단일화를 주장함에 따라 세부적인 합의 실패
- 1990년대~2000년대 초까지 철도, 통신, 담배, 농림수산업 등의 연금공제조합이 후생연금으로 통합하는 부분적인 성과를 이룸.
- 2007년 자민당 정권은 공무원 직역가산을 폐지하여 2010년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단일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그러나 2009년 중의원 해산과 54년 만의 정권교체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됨.

■ 2009년 민주당 정권은 총선 공약인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단일화를 재추진함.

- 단일화의 가장 큰 배경은 복잡한 연금체제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간의 형평성 문제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었기 때문임.
- 또한,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와 급여, 수급연령의 조정 등 부분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 민주당은 공적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정권 교체된 자민당의 전철¹⁰⁾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 핵심과제로 일원화 정책을 추진함.

10) 지난 자민당 정권의 지지부진한 사회보장 개혁은 54년 만에 일본이 정권교체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

〈표 2〉 공적연금제도 통합 추진 경위

연도	주요 추진내용
1984	1995년 완료 목표로 공적연금제도 단일화 기본방향 각료회의 결정
1997	공공단체(철도, 통신, 담배)의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
2001	공적연금 통합추진에 대한 각료회의 결정
2001	농림어업단체직원의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
2004	연금통합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체계 검토 소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
2005	고이즈미 민주당 정권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단일화 의견 표명
2007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단일화 법률안 국회 제출
2009	정권교체로 이후 폐기
2009	민주당 총선 전략으로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단일화 제안
2012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단일화 국회 제출

■ 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단일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2012년 4월 13일 제180대 정기국회에 상정하였으며 국회통과가 유력시 됨.

- 동 법률안은 1984년의 연금 단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2007년 자민당 정권이 국회에 제출하였던 공적연금 단일화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있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나. 단일화 법률안의 주요내용

■ 단일화 관련 법률안의 핵심은 공제연금인 국가공무원공제연금, 지방공무원공제연금, 사립학교교직원공제연금을 2015년 10월까지 후생연금 기준으로 통합하여 직장인 공적연금을 단일화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과 후생연금법,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을 포함하여 총 31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
 - 현행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

〈표 3〉 일본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차이 개선내용

	공제연금	후생연금	개선내용
연금보험요율	매년 0.35%씩 인상	2017년 18.3%에 고정	후생연금에 통일
가입 연령	없음	70세까지	상동
민간기업 취업 시 연금 지급	일부 또는 전부 지급 정지	지급정지	상동
유족연금 승계 ¹⁾	있음	없음	상동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여성 차등적용 ²⁾	남성과 여성 동일 일정	여성이 5년 단위 늦게 상향조정	상동
장애연금 지급요건 ³⁾	보험료 납입기간 요건 없음	보험료 납입기간 2/3경과 요건	상동
직역가산제도	존재	없음	상동

주: 1) 승계제도란 공제연금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급중인 연금수익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으로 연금수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다른 연금수익자에게 유족연금이 승계 지급되는 제도임.

2) 후생연금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일정에 따라 남성의 경우 2025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여성은 5년씩 늦게 상향조정 될 계획임.

3) 공제연금의 장애연금 지급 시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으나 후생연금의 경우 전 피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간(보험료 납입면제기간 포함, 후생연금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25년임)의 2/3 이상을 요건으로 함.

자료: 후생노동성(2012).

■ 공제연금의 보험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8년까지 후생연금의 목표 보험요율 18.3%로 통일함.

- 2004년 공적연금 개혁 일정에 따라 2017년까지 18.3%(노사 절반)를 목표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후생연금의 기준에 맞추어 2018년까지 공무원공제연금의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 단, 사립학교교직원공제연금은 2027년까지 통일함.

■ 기타 직역가산제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지원 감축, 현행 공제조합 조직 활용 계획

- 공제연금에만 존재하는 직역가산부분(약 2만 엔)은 폐지하고 새로운 공무원 급부제도로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함.
- 은급제도 적용대상의 공무원을 위해 정부가 공제연금에 지원하였던 추가비용을 원칙적으로 27% 이하로 감축함.
- 사무조직은 낭비적 투자를 피하고 효율화를 위해 공제조합과 사학사업단을 활용함.
 - 이들 사무조직이 보험료징수, 적립금의 관리와 운용, 연금급여 등 후생연금의 업무처리를 분담 하며, 향후 정보처리기술 진보에 맞춰 편의성이 높고 더 효율적인 사무처리 방안을 검토함.

4. 시사점



-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우리 현실에서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추진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는 2009년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부분적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노후소득보장 격차가 상존하며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악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간의 급여격차를 줄여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직역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공적연금 개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급여수준 격차를 없애기 위한 보험요율의 조정, 급여 종류 및 내용의 통일화 등이 이루어지되,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공적연금의 통합방안 논의도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통상적인 연금제도는 통일하고 특수직역연금의 특수성 반영이 필요할 경우 별도제도(미국 연방공무원 대상의 TSP¹¹⁾ 제도 등)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문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구조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kiri**

11) 개인의 각출에 비례하여 국가가 매칭하여 적립하는 개인저축계정(Thrift Savings Plan)임.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였음.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역할은 확대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주체가 국가에서 개인 및 기업으로 전환됨.

공적연금 개혁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법정소득비례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여와 급여가 비례하는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의 소득연금과 개인계좌형태의 수익연금(Premium Pension)을 도입하였음. 이를 통해, 급여수준을 인구구조변화에 자동적으로 연동시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음. 둘째, 기초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보증연금(Guaranteed Pension)을 도입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음.

또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제도는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4개 직군별로 다양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공적연금의 확정기여형 도입에 맞추어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개인 책임에 의한 투자상품 선택과 운용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단일의 특수지역연금 형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음.

인구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통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장기능에 입각한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연금의 역할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의 보완조치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최저 보증연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특수지역연금을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은 인구고령화 등에 직면하면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함.
 - 스웨덴은 2000년대 후반 연금개혁을 일단락 지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나머지 북유럽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을 지속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인구구조변화 등에 자동적으로 연동하여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함.

-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을 개혁함.
 - 기존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연금, 수익연금 중심으로 운영하되, 저소득 계층을 위해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생산직 근로자 등 4대 직군별로 DC형 중심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적연금을 개혁함.
 - 이러한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들과 달리 큰 갈등 없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을 위한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어떠한 기초하에서 연금제도의 운용 틀을 구축하고 시행하느냐 여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과제임.
 -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전면적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이에 본고는 스웨덴의 연금개혁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금개혁의 배경 및 과정



- 고령사회에서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노동시장을 떠난 후 15~20년간 연금소득에 주로 의존하므로 연금수급연령을 조정하여 연금수급기간이 일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됨.
- 인구고령화를 미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함.
- 특히 잦은 경제위기로 인한 미래 경제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부담 수준을 낮추고 개인의 소득보장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
- 법정 소득비례 연금이 기여에 비해 급부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계되어 재정적 유지가 어렵고 또한 보험료납부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근로자 규모가 점점 많아져 정액연금화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함.
 -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1991년부터 개혁을 추진함.
 - 1992년 연금개혁실무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994년 5개 정당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94년 연금개혁법안이 마련됨.
- 1998년 공적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맞추어 퇴직연금중심의 사적연금 개혁은 2007년까지 이루어짐.

3. 연금개혁의 내용



-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구조이며 공적연금은 최저보증연금, 소득연금, 수익연금으로, 퇴직연금은 사무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4가지 직군별로 구성됨.

〈표 1〉 연금개혁 이전 및 이후의 연금제도

구분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사적연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DB형 중심의 퇴직연금	DC형 중심의 퇴직연금
공적연금		법정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제도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 수익연금, 최저보증연금

- 공적연금 개혁은 명목기여방식의 소득연금과 개인계정형태의 수익연금을 도입하는 형태로, 사적연금 개혁은 직군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확정기여방식으로서의 전환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되어 급여수준이 인상됨.
 - 공적 소득비례연금이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

가. 공적연금 부문

- 공적연금은 최저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Income Pension), 그리고 수익연금(Premium Pension) 중심으로 개혁됨.

〈표 2〉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

구분	유형	세부 내용
공적부문	보증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국민을 대상 • 최저보장수준과 실제 연금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
	소득연금 (명목확정기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비례연금으로 공적연금 총 보험료 18.5% 중 16%를 NDC에 적립 • NDC 급여수준은 GDP 성장률에 따라 조정되며 퇴직 시 경제적 인구요인에 의해 변동
	수익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연금개혁 시 등장한 공적연금 중 사적연금시장을 활용한 연금제도 • NDC에 적립하고 남은 2.5%를 적립하여 개인이 본인 책임하에 투자

- 공적연금체계에서 저축기능은 수익연금이, 보험기능은 소득연금이,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완화기능은 보증연금이 담당함.
 - 소득연금, 수익연금, 그리고 보증연금 등의 공적연금 적용대상은 스웨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 모든 국민.
 -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은 급여의 18.5%이며 피용자들은 고용주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
 - 급여의 16%는 소득연금에 할당되어 연금수급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2.5%는 수익연금의 개인계정에 적립하도록 규정함.

■ 소득연금(Income Pension)

- DB형 소득비례연금을 대체하여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의 소득연금(Income Pension)을 도입함.
- 명목확정기여란 확정기여방식과 동일하게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각각의 개인계정에 적립하고 개인계정에 축적된 보험료와 수익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납입된 보험료는 실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계정의 장부에 기록되고 투자수익은 실제 투자수익이 아닌 사전에 결정된 이자율로 계산되므로 확정기여방식과 차이가 존재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은 기존제도에 의한 연금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가입자의 보험료기여와 급여를 강하게 연계시키는 보험수리 원칙에 기초한 제도임.¹⁾

1) 명목확정기여방식은 급여를 기여에 비례시키고 기대여명을 반영하는 등 민간의 확정기여연금의 운영을 따르면서도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방식의 장점은 현행기여율수준으로도 재정안정화가 가능하여 보험료 인상 등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급여가 보험수리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 소득연금은 가입자들이 61세부터 연금수급연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부분연금을 수급 할 수 있음.
 - 전체 수급자의 2/3정도가 65세에 소득연금을 수급함.

■ 수익연금 (Premium pension)

- 공적연금 부분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개인의 책임하에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수익연금의 급여형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모두 가능하며 연금 형태인 경우에도 종신연금이나 잔여기여여명기간의 연금이나에 따라 수익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연금방식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각각 종신연금은 보험료가 급여의 2.2%, 잔여기여대수명기간의 연금은 급여의 3.9%를 적용하고 있으며, 급여의 0.1%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있음.

■ 보증연금 (Guaranteed Pension)

-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보증연금(Guaranteed Pension)제도가 도입됨.
- 기존의 연금제도하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수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노인계층의 빈곤방지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새로운 연금체제에서는 연금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는 보증연금으로 대체됨.
 - 보증연금은 개인의 자산이나 사적연금의 급여액을 고려하지 않고 공적연금의 급여액만을 고려하며, 재원은 중앙정부의 조세재원으로 충당됨.
 - 보증연금의 급여는 소득연금과 수익연금의 급여합계액이 독신은 기준소득의 3.07배, 부부는 2.72배 이하인 경우에 지급함.
 - 보증연금 급여지급의 기준은 독신의 경우 월 10,950 크로네(SEK: Svensk Krona), 부부의 경우 월 9,701 크로네²⁾이며, 연금수급액이 기준소득의 1.26배인 월 4,494 크로네 이하인 경우 최저보장급여기준인 월 7,597 크로네에 부족한 금액(3,103크로네)을 보증연금으로 지급함.
 - 연금액이 월 4,494~10,950 크로네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보충급여액을 계산함.

2) 2012년 7월 4일 현재 1크로네는 163.63원임.

나. 사적연금 부문³⁾

■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인 퇴직연금은 개별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별 또는 직역별 단체협약에 의해서 설계됨.

- 퇴직연금은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PA03,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KAP-KL, 스웨덴 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SAF-LO, 기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ITPK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표 3〉 퇴직연금(직역연금) 유형 및 보험료율

구분	민간부문		공공부문	
	ITPK	SAF-LO	PA03	KAP-KL
시행시기	2007	1996	2003	1998
적용연령	1979년 이후 출생자	1968년 이후 출생자	1973년 이후 출생자	1971년 이후 출생자
적립개시연령	25세	21세	23세	21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연금으로 2007년 운영방식을 DC형으로 변경 • 연금자산의 5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연금으로 1996년 DB형에서 DC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공무원을 위한 연금으로 DC형 연금제도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연금으로 DC형 연금제도를 도입

주: ITPK(Industries Tillggspension Kompletterande), SAF(Svenska Arbetsgivareforeningen).
 자료: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 1979년 이전 출생자는 확정급여방식을 적용하고 1979년 이후 출생자는 확정기여방식의 연금제도를 적용함.
- 2007년의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확정기여방식의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보험료율은 기준소득 7.5배 이하는 급여의 4.5%, 7.5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임.⁴⁾

3)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부문의 내용은 개혁의 대상이 된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4) 스웨덴에서는 보험료산정을 위해 매년 기준소득(소득기준액)을 발표하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그 금액을 base amounts 또는 income base amounts라고 하는데 2009년 기준 50,900크로네(약 677만 원)이다.

- 완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재직자가 65세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때 기준소득 7.5배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10%, 기준소득 7.5배~ 20배의 급여에 대해서는 65%, 그리고 기준소득 20배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32.5%의 급여율을 적용하여 급여액을 산정함.

■ ■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은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스웨덴 고용주연맹과 노동조합연맹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사적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적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표 4〉 스웨덴 생산직 근로자 퇴직연금 보험료율

년도	기준소득 7.5배 이하의 급여(%)	기준소득 7.5배 초과 급여(%)
2007	3.5	3.5
2008	3.9	6.0
2009	4.0	12.0
2010	4.1	18.0
2011	4.3	24.0
2012	4.5	30.0

-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은 원래 확정급여방식이었으나 1996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 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 기준소득 7.5배 이하의 급여에 대해 기존보험료를 급여의 3.5%에서 2012년까지 4.5%로 인상하는 반면 7.5배 이상의 급여에 대해 보험료율을 3.5%에서 2012년까지 30%로 인상함.
 -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급연령은 65세이나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함.

■ ■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퇴직연금

- 중앙정부 공무원을 위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하여 확정기여방식의 보충제도가 존재함.
 -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0년의 재직이 필요하며,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퇴직직전 5년 급여를 평균한 값임.

-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방식이며, 보험료율은 급여의 3.4~4.5% 범위에서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4. 연금개혁의 특징



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 확정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함.
 - 고령화로 인한 노인세대 부양비용의 증가는 각 개인의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은퇴 이전에 개인저축을 늘림으로써 대응함.
- 노후소득보장에서 직접적 보장주체인 국가의 역할은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보험료 인상과 운용방식의 변화, 수익연금 도입으로 개인과 기업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은 확대됨.
 -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확대되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사적연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수익연금은 공적연금의 일부이나 투자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유사함.
 - 공적연금의 기여율이 18.5%로 고정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 2005년 최종임금대비 53%였던 평균임금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10년 50%, 2030년 43%, 2050년 40%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나. 기초보장 강화 및 직군별 퇴직연금 적용

-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 보증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에서 분리하여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도입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확정급여방식의 연금제도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의 유형이 민간부문, 공공부문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퇴직연금제도를 직군별로 다양화함.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이루어짐.
 - 즉, 민간부문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부합하도록 공공부문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함.

다. 연기금 운용에서 개인의 역할 강화

- 소득비례연금 및 수익연금 모두 확정기여형(DC형) 형태로 운용됨으로써 개인의 운용능력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 운용방식이 변화함.
- 개인 운용능력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또한 퇴직연금 운용방식이 DB형 중심에서 DC형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과 연금기금 운영에서 집단성이 약화되고 개별성은 강화됨.
- 생산직 근로자 퇴직연금은 1996년, 지방공무원 퇴직연금은 1998년, 사무직 근로자 퇴직연금은 2007년부터 확정기여형으로 운용됨.

5. 시사점

-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전면적인 연금개혁은 대략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기능에 입각한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부분이 확정형으로 이루어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스웨덴의 공적연금처럼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 수익연금 등의 형태로 소득비례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역할 축소와 사적연금 강화의 보완조치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 보증 연금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최저보증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적부문 역시 단일의 특수직역연금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 소득보장 틀에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특수직역연금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김대환 연구위원

요약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근퇴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어 7월 26일부터 시행됨. 특히 이번 개정된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음.

첫째,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받은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되도록 규정된 반면, 법정퇴직금제도 하의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연금재원이 조기소진될 수 있음.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바로 중도해지 할 수 있음.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어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구조임. 넷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전세자금 필요 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허용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근로자의 자산규모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섯째,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상환조건,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담보대출이 활용되기 어려움. 여섯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으로 너무 짧아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과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함.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 하의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미국처럼 해지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의 자동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간정산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서 담보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연금수령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규정을 축소하는 반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7월 26일부터 시행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¹⁾으로 통산·이전하여 은퇴시기까지 퇴직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함.
 -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조기에 소진하지 않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총 은퇴자산 16조 달러 중 개인퇴직계좌가 4.1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²⁾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한 결과임.

- 그럼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직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허용 조건 등은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함.

- 이에 본고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연속성 강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1) 본래 해외 주요국처럼 개인퇴직계좌였으나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함.

2) ICI(2010. 5), "Research Fundamentals", Vol. 19, No. 3.

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관련 규정



가.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간 연속성을 강화함.

〈표 1〉 근퇴법 및 근퇴법 시행령상의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조항

근퇴법 개정안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
<p>제17조(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p> <p>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u>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u>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p> <p>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p>	<p>제10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예외사유)</p> <p>법 제17조 제4항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는 경우
<p>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p> <p>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급여를 갈음하여 그 <u>운용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u></p>	
<p>제38조(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시의 처리)</p> <p>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u>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u>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2012.7에서 발췌하여 정리.

-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자금수요의 긴급성, 이전 시 연금제도의 연속성 보장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는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②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③ 퇴직 시 일시적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³⁾로 제한하고 있음.

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 시,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시에는 퇴직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함.
- 또한 퇴직급여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사유⁴⁾를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규정함과 더불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구체적인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금액(150만 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

4) 담보대출은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 모두에 허용되지만 중도인출은 DC형 퇴직연금에만 허용됨. 담보대출은 재원자체의 소진가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금본래의 기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의 누진효과 상실로 노후생활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을 저해함.

- 즉 근로자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을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되, 횡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퇴직급여가 불합리하게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함.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소정근로시간단축형, 57세 이상 정년 및 재고용형을 중간정산사유로 규정

〈표 2〉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담보대출(중도인출) 사유

근퇴법 개정안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
<p>제7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 및 담보대출)</p> <p>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u>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등)</p> <p>① 법제7조제2항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시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3.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시 <p>② 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말한다</p>
<p>제8조(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등)</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p> <p>① 법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다만, 해당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함)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p>제22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p> <p>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u>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u>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p>	<p>제15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사유)</p> <p>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u>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를 말한다</p>
<p>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수급조건 및 중도인출)</p> <p>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p> <p>② 가입자가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p>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2012.7에서 발췌하여 정리.

3.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관련 문제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대상 측면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으로 퇴직적립금을 받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정퇴직금제도 가입자는 법상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가능한 임의제도 형태(Opt-In)를 띠고 있음.
 - 퇴직일시금의 80% 이상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전할 경우 퇴직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퇴직급여 지급 시까지 이연시켜 주고 있음.
 - * 퇴직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퇴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즉,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없어 법정퇴직금제도의 연속성은 매우 취약함.

■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 시 제재 측면

-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후 자율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함.
-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의 제재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중도해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간 또는 퇴직급여제도간의 상호 연속성이 미흡함.
 - 중도해지(조기인출)나 일시금 수령 시에 저율의 퇴직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연금수령의 유인 효과가 매우 낮음.

■ 개인형 퇴직연금 자동가입 연령 측면

- 현재 기업의 평균 정년이 대체로 55세 수준이며 또한 근퇴법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수급연령도 55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연령을 55세로 설정함.

- 따라서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55세 이후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은 미흡함.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어 55세 이후 퇴직자의 일시금 수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정년연장 추이, 기대수명 증대에 따른 장수리스크에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 장치 측면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즉 언제까지 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담보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선 규정 등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중간정산 요건 범위 측면

-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규정된 중간정산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근로자의 자산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전세자금 필요 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간정산 방지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퇴직연금 수급 요건 측면

- 현행 근퇴법의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보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매우 장기인 반면, 연금지급은 5년 이상으로 매우 단기임.
- 이에 따라 연금수령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연금수령에 따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함.

4.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자금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 그 이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금 중 불과 21%만이 저축 등에 사용되고 대부분 연금재원은 조기소진되어 노후의 소득불안정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⁵⁾

- 둘째, 퇴직금의 연금수령이라는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의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임의적인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의 세율을 높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외적인 조항(예: 저소득 근로자 등)을 두어 60세 이전에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고용노동부(2010. 12),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방안』에서 재인용.

■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임.

- 담보권의 설정, 담보대출의 금리 수준과 관련된 규정 마련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일본, 호주, 홍콩 등 선진국은 담보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연금 본래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담보대출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담보대출 시 퇴직연금가입자의 자산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산정산의 요건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요건은 대폭 완화하되 연금수령 기간을 더욱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퇴직, 장애, 사망, 무주택자⁶⁾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일본 또한 DC형 퇴직연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 요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축소하되,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kiri**

6) <http://taxes.about.com/od/retirementtaxes>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도 최근 2년 이내의 무주택자에게는 조기인출을 허용하지만 10만 불 이상의 조기인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출 시에는 10%의 페널티세를 부과함.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무주택자 조기인출조건과 비교 시 매우 엄격한 수준임.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 및 노후준비 실태 비교와 시사점

이상우 수석연구원 /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보험가입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생명보험 가입률(87.3%)이 다른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고, 주로 질병보험(83.7%), 사망보험(28.6%), 연금·저축성보험(25.3%)에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26.9%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를 위해 공·사연금의 가입이 가장 적합한(66%)것으로 응답한 반면, 자녀의 지원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0.8%)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노후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가 평가함. 이들의 노후대비 월 평균 저축액은 32.1만 원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노후비용의 45.2%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공·사연금 가입률은 90.2%, 공·사연금 납입보험료 수준은 월 평균 27.5만 원으로 높음.
-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61~63세)까지 국민연금 미 수급 상태에 놓이게 됨. 이에 다양한 은퇴교육 확대를 통해 은퇴 준비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보험가입이 대부분 보장자산에 집중하고 있어 은퇴자산으로 분산하여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식 전환과 함께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제적격 납입기간 단축 및 세제체계 개선 등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아울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연금화하여 퇴직금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영업 등 창·폐업에 따른 자산소진에 대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용을 조기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들 상당수가 향후 퇴직연금 가입 시 10년의 가입기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연금 수급요건의 한시적 조정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최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건강 및 노후복지 대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퇴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이들의 은퇴는 경제활동인구의 31%가 생산·근로현장을 떠나 재취업 또는 은퇴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회보장 수요 증가와 은퇴 및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고도 성장기의 산업화에 기여했고 교육의식과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이 높은 마지막 세대이자, 노후생활을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의 샌드위치 세대임.¹⁾
 - 특히, 우려되는 점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이들이 경제활동기간보다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첫 세대로서 건강관리와 노후생활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장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자신의 노후생활을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공적 보장과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베이비붐 세대의 보험가입과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실태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고는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²⁾ 결과를 기초로 연령그룹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그 이전에 출생한 세대(이하 이전 세대), 그 이후에 출생한 세대(이하 이후 세대)로 구분하여 비교함.
 -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2년 3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200명(유효표본)을 개별면접 방식으로 가구와 개인 응답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표본 수는 <표 1>과 같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자식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며(응답자의 93.2%), 노후 수발을 자식에 의존하고 싶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응답자가 96.2%)을 차지함.

2) 전체 보험소비자의 세부적인 가입실태 분석은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2)를 참조함.

〈표 1〉 표본의 구분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세대주 연령별	베이비붐 이후 세대	(513)	42.8
	베이비붐 세대	(343)	28.6
	베이비붐 이전 세대	(344)	28.7
응답자 연령별	베이비붐 이후 세대	(689)	57.4
	베이비붐 세대	(245)	20.4
	베이비붐 이전 세대	(266)	22.2

2. 보험가입 실태



■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7.4%로 이후 세대(81.3%)보다 6.5%p 높고*3), 이후 세대(66.5%)보다 21.3%p 높은 것으로 나타남**4).

-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건강 및 신체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는 인식이 높고 경제활동기간이 가장 긴 현역세대로서 보험가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반면, 이후 세대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이 짧고 이전 세대는 보험가입 기간의 종료, 고령자 가입을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성 부족, 상대적으로 긴 계약해지 노출기간 등이 낮은 가입률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

〈표 2〉 생명보험 가입률 비교

(단위: %)

구분	이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	전체
가입률	81.3	87.8	66.5	79.3

■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83.7%), 사망보장보험(28.6%), 연금·저축성 보험(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는 신뢰구간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하 동일).

4) **는 신뢰구간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하 동일).

- 특히, 질병보장보험**과 연금·저축성보험* 가입률은 이후 세대 가입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각각 14.6%p, 7.4%p).
- 전자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경제활동기의 현역 세대로서 건강 및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후자의 경우 연금 등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 비교(복수응답 포함)

(단위: %)

구분	질병 보장보험	사망 보장보험	연금·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이후 세대	69.1	25.4	17.9	7.1	12.3
베이비붐 세대	83.7	28.6	25.3	6.1	15.5
이전 세대	60.9	15.0	10.9	0.0	8.6
전체	70.3	23.8	17.8	5.3	12.2

주: 비 가입률은 제외.

■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1년 이내 생명보험 가입 의향은 26.9%로 이전 세대(15.8%)보다 높은 반면, 이후 세대(46.6%)보다 낮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이 이후 세대보다 현저하게 낮아 1년 이내의 생명보험 구매력은 크지 않지만 향후 1년 이내로 한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생존기간 동안의 가입 니즈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베이비붐 세대와 이후 세대의 경우 연금·저축성보험의 가입 의향이 각각 14.3%와 24.1%로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반면, 이전 세대의 경우 질병보장보험의 가입 의향이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이러한 보험가입 니즈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설계와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통해 신규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4〉 향후 1년 이내 생명보험 가입 의향 비교(복수응답 포함)

(단위: %)

구분	질병 보장보험	사망 보장보험	연금·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전체
이후 세대	18.3	11.9	24.1	7.1	46.6
베이비붐 세대	9.8	4.1	14.3	2.0	26.9
이전 세대	12.0	1.1	2.6	0.4	15.8
전체	15.2	7.9	17.3	4.6	35.7

주: 기타 보험종목 제외.

3. 노후생활준비 실태



■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에 적합한 생활자금으로 국민연금(38.4%), 개인연금(19.0%), 은행예금(13.1%), 퇴직연금(10.6%), 부동산 수입(10.2%)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거의(0.8%) 기대하지 않음.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개인연금의 응답률이 이전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고, 이후 세대의 경우 퇴직연금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통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이전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노후대비로 가장 적합한 생활자금에 대한 인식 비교(1순위 응답)

(단위: %)

구분	국민연금 등	퇴직연금	은행예금	개인연금	부동산 수입	노후 근로소득	저축성보험	자녀의 경제적 지원
이후 세대	42.7	13.4	8.6	19.2	9.0	4.4	2.6	0.1
베이비붐 세대	38.4	10.6	13.1	16.7	10.2	8.2	2.0	0.8
이전 세대	40.6	12.0	13.5	10.6	11.3	7.1	1.5	3.4
전체	41.3	12.5	10.6	16.7	9.8	5.8	2.3	1.0

■ 전체적으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이 7.0%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45.8%)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이(64.9%)로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전술한 질병보장보험, 저축성보험과 후술하는 개인연금 등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6〉 노후준비 수준 평가 비교

(단위: %)

구분	잘하고 있음	보통	잘 못하고 있음
이후 세대	6.2	44.4	49.3
베이비붐 세대	9.4	55.5	35.1
이전 세대	6.8	46.6	46.6
전체	7.0	47.2	45.8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 저축액과 향후 노후비용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노후대비 월 평균 저축금액은 베이비붐 세대가 32.1만 원으로 다른 세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 이는 이후 세대의 저 연령층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이전 세대에서는 상당수가 이미 은퇴하여 노후자금을 소진하고 있는 세대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현재의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45.2%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조달능력을 나타냄**.

〈표 7〉 노후대책 실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현재 노후대비 저축금액(월)	은퇴 후 필요소득 대비 조달가능한 금액 비율
이후 세대	22.1	43.8
베이비붐 세대	32.1	45.2
이전 세대	19.3	40.9
전체	23.5	43.5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개인연금(31.0%) 가입률은 다른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고*, 퇴직연금 가입률(14.7%)은 이전 세대(4.9%)보다 9.8%p 높은 수준임**.

- 이들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은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 확대와 함께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후비용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이전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비 가입률(39.8%)이 가장 높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는데 특히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은 이전 세대의 상당수가 퇴직일시금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8〉 공·사연금 가입률 비교(복수응답 포함)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비가입
이후 세대	77.9	3.6	15.1	22.6	13.5
베이비붐 세대	84.1	4.9	14.7	31.0	9.8
이전 세대	52.3	2.6	4.9	9.4	39.8
전체	73.5	3.7	12.8	21.4	18.6

주: 세대주 기준.

■ 가구당 공·사연금 보험료는 베이비붐 세대가 월 평균 27.5만 원으로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이전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8만 원 높음.

-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당수가 은퇴한 이후 세대는 공·사연금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9〉 가구당 월 평균 공·사연금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만 원)

구분	이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	전체(n=977)
월 납입보험료	22.2	27.5	19.5	23.3

주: 세대주 기준.

■ 향후 새로운 개인연금제도 도입 시 세제혜택 제공 방식에 대해 현행 세제혜택 방식의 지지율이 낮아 개인연금의 세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들은 현행과 동일한 세제방식, 저소득·다자녀 중심, 저소득 중심의 세제혜택 방식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이후 세대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중심의 세제혜택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활동과 출산이 가능한 점이 반영된 결과임.

〈표 10〉 새로운 개인연금제도 도입 시 세제혜택 제공 방식 비교(복수응답)

(단위: %)

구분	현행과 동일한 세제혜택 방식	저소득·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제공되는 방식	저소득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제공되는 방식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제공되는 방식
이후 세대	28.9	36.6	25.0	9.6
베이비붐 세대	31.4	31.8	28.6	8.2
이전 세대	24.4	32.3	35.7	7.5
전체	28.4	34.7	28.1	8.8

4. 시사점



■ 조사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보험가입 및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나타남.

- 특히, 조기퇴직 또는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연령(61~63세)까지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수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은퇴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질병보험 및 사망보험 등 보장자산에 베이비붐 세대의 가입이 집중되어 있어 보장자산과 은퇴자산의 적절한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개인의 의식전환과 함께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베이비붐 세대 미가입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가입 유인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에게 개인연금 신규 가입 시 세제적격 납입기간(10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부족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결과 현행 개인연금 세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70% 이상이 응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대비가 미흡한 계층을 중심으로 노후준비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됨.
-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권 확보와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수급권이 보장되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단일화하고 연금화를 유도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이후 수령한 퇴직금이 생활자금 및 자녀지원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 확대⁵⁾와 폐업에 따른 자산 소진으로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 소득원 확보를 위해 2017년 적용 예정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조기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들이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상당수가 10년 이상 가입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연금 수급권 확보 차원에서 가입기간과 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kiri

5) 중소기업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수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최근 자영업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함. 또한, 자영업의 경우 전형적인 회전문(revolving door) 업종으로 창업-폐업-재창업의 악순환 속에 보유 자산을 소진하게 되어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이동주 외(2012, 8),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창업 급증』.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김대환 연구위원

요약

-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매우 높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최근 황혼이혼의 증가로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분할연금제도는 1998년에 도입되어 2007년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음.
- 첫째, 이혼 즉시 연금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이 지급될 때에만 연금분할이 가능하여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변화(장애, 사망)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 둘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만 분할을 허용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은 분할하지 못하므로 개인의 독립적인 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셋째,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 비율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아 분할연금의 재산권 성격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넷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분할연금의 수급을 허용하여 5년 미만으로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 부부는 분할연금의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섯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이나 사망 시 해당 분할연금을 노령연금 수급자가 재수령할 수 없어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후빈곤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여섯째, 국민연금이외에 특수직역연금 및 사적연금의 경우 분할연금제도가 없어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소득분할형태의 분할제도가 도입되고, 이혼 즉시 연금의 분할을 실시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 중인 부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분할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2분의 1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연금분할 비율이 예외적으로 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혼이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저 혼인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제도의 형평성차원에서 특수직역연금에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도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매우 높아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더욱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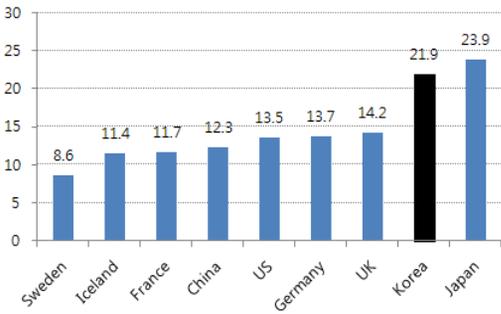
● 과거 50년 동안(1960~2009년) OECD 국가의 기대수명은 평균 11.2세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7.9세 증가하였으며,¹⁾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은 84.1세로 남성의 기대수명 77.2세보다도 7세 정도 높음.²⁾

■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인해 노후준비 또한 남성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980년대 22,980건에서 2010년에는 116,85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이혼하는 황혼이혼 비중이 2000년 14.2%에서 2010년 22.8%로 급증함.³⁾

● 하지만 남성중심의 노동시장 참여가 남성 중심의 노후준비로까지 연계되면서 이혼 이후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여성의 의존도가 증가함.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율 차이



자료: 통계청(2010), 『사회조사』.

〈그림 2〉 이혼자 중 황혼이혼 비중



자료: 통계청(2012. 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 OECD(2011), "Health at a Glance".
 2) 통계청, 2010년 생명표.
 3) 2010년에는 서울시에서 황혼이혼(동거기간 20년 이상)비중이 27.3%, 신혼이혼(동거기간 0~4년) 비중이 25.0%인 것으로 나타나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추월하였음.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분할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분할연금제도의 현황 및 내용

- 연금분할제도는 혼인기간 중 획득한 연금의 청구권을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러한 연금분할제도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배우자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부터 도입됨.
 - 또한, 연금분할제도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하여 공적연금제도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연금의 분할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의 청구권이 될 수 있음.

〈표 1〉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

분할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p>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p> <p>①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p>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③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p>	<p>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 제1항(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자료: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2012. 7)에서 재정리.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연금분할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던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짐.
 - 연금의 분할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③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에 이루어짐.
 - 따라서 연금분할의 대상은 상대방의 노령연금이며 실제적인 연금의 분할은 부부 모두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된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됨.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노령연금의 50%)이며 연금급여분할방식에 의해 분할됨.
 - 노령연금의 분할만을 허용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이전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을 분할하는 소득분할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음.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분할의무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계속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이 생기면 합산하여 받게 됨.
 - 또한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첫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도중 다른 이와 재혼하여 살다가 또 다시 이혼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2개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의 효력은 이혼이후 당사자와 배우자인 가입자가 모두 60세가 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이혼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재혼을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 분할연금의 청구권은 상실됨.
 - 그 이유는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분할의 대상을 노령연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사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없음.

〈표 2〉 특수직역연금 및 사적연금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 및 판례

구분	규정	판례
특수직역연금	미존재 (법안상정 검토)	존재 • 공무원연금도 상대방 기여도가 있어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 필요
퇴직금	미존재	존재 •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필요 • 이혼 당시 아직 회사에 근무 중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
퇴직연금		미존재
개인연금	미존재	존재 •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예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 존재

자료: 황신정(2012),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누어 받나?」, 『월간생명보험』, PP. 26~28 및 법원 판례집.

- 공무원연금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개인연금은 해약환급금예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존재함.

3. 분할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분할은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자가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이 지급될 때에만 가능하므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변화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점임.
- 이혼 즉시 연금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분할연금 수급자 역시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가 된 이후에 분할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후분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분할연금 의무자가 사망, 장애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둘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분할을 허용하고,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이전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임.
 -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자신의 기록소득을 각각 분할하여 재합산 함으로써 향후 자신 명의의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연금수급권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 그 이유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서는 분할연금에 본인의 연금이력을 추가하여 개인의 독립적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임.
- 셋째,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서는 이혼 시 작성한 분할연금의 포기각서는 무효로 간주하고 있으며 연금의 분할비율 조정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임.
 - 따라서 분할연금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⁴⁾
- 넷째,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분할연금의 수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임.
 - 따라서 5년 미만으로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 부부는 분할연금의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 분할연금의 수급조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문제가 존재함.
- 다섯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이나 사망 시, 해당 분할연금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재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임.
 - 2010년 현재 분할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의 평균지급액은 45만 원으로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노령연금 급여액에서 분할연금을 공제하면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후빈곤문제가 발생함.
 - 현재 분할연금을 수급하다 분할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를 다시 분할연금 의무자에게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됨.

4) 현재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재산권이라기보다 사회보장권의 성격을 보다 강조한 결과, 이혼 시 작성한 분할연금의 포기각서는 무효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할연금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효선(2010), 『분할연금 관련 급여체계 개선방안 검토』, p. 21 참조.

■ 또한, 공적연금 중에서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며 특수직역연금 및 사적연금에서는 분할연금의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는 점임.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이루어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연금을 분할하여 공무원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가입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즉, 연금분할 청구권이 이혼한 배우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함.

4. 각국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실태

■ 연금의 분할 사유 및 시기

-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는 분할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이혼한 즉시 연금을 분할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표 3〉 연금의 분할 사유 및 시기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분할 사유	이혼, 별거	이혼, 혼인의 해소, 사실혼의 해소	이혼, 사실혼 해소	이혼, 별거, 사실혼의 해소
분할 시기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자료: 각국 홈페이지(www.nenkin.go.jp, www.servicecanada.gc.kr,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유호선(2010); 권문일(2003); 이정우(2003); 堀 勝洋(2008) 등에 의거 작성.

- 또한, 이혼 이외에 혼인관계는 지속하지만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연금분할을 인정하여 주고 있음.

■ 연금의 분할 형태

-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이혼시점에서 혼인기간동안의 배우자별 소득 또는 기여 기록을 분할하여 각자의 계정에 기록하는 소득분할형태의 방식도 함께 채택하고 있음.

- 스위스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획득한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내지 기여금 등을 분할하고 있음.

〈표 4〉 연금의 분할형태 비교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분할형태	소득분할	소득분할	연금분할	소득분할, 연금분할

자료: 각국 홈페이지(www.nenkin.go.jp, www.servicecanada.gc.kr,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유호선(2010); 권문일(2003); 이정우(2003); 堀 勝洋(2008) 등에 의거 작성.

〈표 5〉 스위스의 소득분할 방법

혼인관계	여성	남성
혼인 이전	자신의 소득 100%	자신의 소득 100%
혼인기간	자신의 소득 50% 남편의 소득 50% 자녀양육/간병크레딧 50%	자신의 소득 50% 아내의 소득 50% 자녀양육/간병크레딧 50%
이혼 또는 사별 이후 기간	자신의 소득 100% 자녀양육/간병크레딧 100%	자신의 소득 100% 자녀양육/간병크레딧 100%

자료: 권문일(2003),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금포럼 제9호 봄호, p. 16.

- 캐나다는 1978년부터 이혼했을 때는 과거 배우자간 각자의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을 분할하도록 하고, 1987년부터는 혼인 내지 1년 이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음.⁵⁾

■ 연금 분할 비율 및 비율조정

-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는 연금분할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2분의 1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비율조정이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 연금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음.
 - 스위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소득분할이 가능하며, 소득분할로 인해 양 배우자에게 급여가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소득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음.

5) 캐나다의 공적연금체계는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과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의 이른바 이중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노령보장연금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연금제도이어서 연금분할을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캐나다 연금은 기여원칙의 사회보험방식에 의거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퇴직전소득의 25%를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서의 연금분할이 적용됨. 캐나다연금은 연금급여분할과 소득분할제도 모두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는 연금의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6〉 연금의 분할 비율 및 비율조정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분할비율 (비율조정)	2분의 1 (당사자합의 인정)	2분의 1 (당사자합의 및 재판절차에 의해 인정된 연금분할 비율 인정)	2분의 1 (당사자합의, 예외적으로 분할면제 가능)	2분의 1 (당사자합의 가능)

자료: 각국 홈페이지(www.nenkin.go.jp, www.servicecanada.gc.kr,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유호선(2010); 권문일(2003); 이정우(2003); 堀 勝洋(2008) 등에 의거 작성.

- 일본은 이혼여성들의 사회보장권이 보다 강조되어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맞벌이 이혼 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한 분할 비율 조정이 가능함.
 - 캐나다는 연금급여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사전 합의서가 있는 경우 연금 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특수지역연금 및 사적연금의 연금분할

-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모두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스위스는 1983년, 일본은 2007년, 독일은 1977년, 캐나다는 1978년에 공적연금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됨.

〈표 7〉 특수지역연금 및 사적연금 분할연금 규정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외)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사적 연금	판례(제도화 검토)			

자료: 각국 홈페이지(www.nenkin.go.jp, www.servicecanada.gc.kr,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유호선(2010); 권문일(2003); 이정우(2003); 堀 勝洋(2008) 등에 의거 작성.

- 독일, 캐나다는 2층과 3층의 노후소득체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도 제도화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스위스 및 일본은 현재 사적연금 분할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분할은 이혼당시 급여산식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고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등하게 분할함.
- 일본의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사적연금은 확정급부채무로 간주하여 분할이 가능함.

5.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분할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족 내 부부간 역할에 대한 동등한 법적·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혼 후 부부 각자가 독립적인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분할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변화로 인해 분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소득분할형태의 분할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분할은 이혼시점에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별 소득 또는 기여기록을 분할하여 각자의 계정에 기록하는 형태이므로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사망 또는 장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음.

● 이러한 소득분할형태의 분할제도 도입은 이혼 여성의 개별 연금수급권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스위스의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니고 있어 소득분할이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⁶⁾

■ 둘째, 연금의 분할은 이혼 즉시 실시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만약 소득을 단순 균등하는 형태의 소득분할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균등부문)으로 인해 총 연금을 약 50% 증대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을 분할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 또한,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이상 별거중인 부부의 경우 제한적으로 연금분할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부 중 일방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데도 다른 일방은 최저생활수준조차 누리지 못해 재산을 둘러싼 불평등이 심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분할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셋째,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분할연금의 비율이 조정되고, 이혼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저 혼인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분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처럼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 등에 의한 분할비율 조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분할연금이 결혼기간 동안 부부의 소득 및 비소득 활동에 대해 동등한 경제적 가치 인정을 기반으로 있는 점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분할연금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저혼인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차원에서 특수지역연금에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도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kiri](#)

kiri Weekly 이슈 모음집 2012 I

발행일 | 2013년 2월

발행인 | 김 대 식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